

정책연구 04-07

무역원활화 규범화를 위한 개도국 지원방안의 모색

李彰洙 · 林慧俊 · 朴芝賢 · 梁俊哲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무역원활화 규범화를 위한
개도국 지원방안의 모색

定策研究 04-07

무역원활화 규범화를 위한 개도국 지원방안의 모색

李 彰 洙 · 林 慧 俊 · 朴 芝 賢 · 梁 俊 哲

서 언

2004년 8월 1일, 4가지 싱가포르 의제 중 유일하게 무역원활화만을 협상의제로 채택한 DDA 협상 기본골격 최종 합의문이 8월 1일 발표됨으로써 무역원활화 협상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기본골격 합의문 부속서 D는 개도국의 우려사항을 반영하여 무역원활화 협정이 개도국에게 역량에 넘는 투자를 요구할 수 없고, 선진국의 지원이 없으면 투자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며, 무역원활화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역원활화 규범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통관절차 및 이에 관련된 각종 비관세 장벽으로 개도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무역원활화의 전세계적 이익을 강조하면서 규범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반해 개도국은 통관절차 개선 등 무역원활화 증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을 강조하면서, 무역원활화 규범화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도국은 무역원활화의 무역증진효과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개도국이 받는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개도국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전혀 없다면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증진을 위한 투자는 개도국의 재정적 부담만을 가중할 것이고, 따라서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한 투자를 부담한 후 경제적 효과를 향유하라는 것이 개도국의 논리입니다. 이에 반해 선진국은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인적 및 물적 자원 투자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사업을 지원하겠지만, 개도국도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혜택을 향유하기 때문에 자발적 투자가 필요하

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1) 칸쿤회의 결렬의 한 요인이었던 무역원활화 이슈의 쟁점을 개도국 입장에서 파악한 후 어떤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개도국 능력배양을 지원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2) 무역원활화의 효과 및 이익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무역원활화 협상에 반대하고 있는 개도국 주장의 타당성을 실증한 후 설득논리를 개발하며, (3)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개도국 능력배양 정책 및 지원방안을 제시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WTO/DDA에서의 논의상황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하여 개도국이 무역원활화에 부정적인 이유를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부족에서 찾은 후, 중력방정식을 활용한 실증분석으로 무역원활화의 전세계적 무역증진효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뿐 아니라 개도국도 큰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무역원활화의 혜택이 선진국에 집중된다는 개도국의 주장과 이에 근거한 선진국 부담론의 논리적 근거가 미약함을 실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역원활화 규범화에 개도국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지원할 필요성과 이에 관련하여 한국의 지원방향을 제시하며, 또한 분쟁해결절차의 분리, 조항별 협정체결 등 협정조항의 조정을 제안합니다. 한국 및 선진국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개도국의 관점에서 쟁점사항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점과 그리고 WTO/DDA 문서 분석을 넘어 중요쟁점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이 이전의 연구와 다른 점입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DDA 협상 담당자뿐만 아니라 기업,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에게 널리 활용되어 무역원활화 협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무역원활화 협상과정에서 개도국 설득의 자료로 활용되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본원의 이창수 박사, 임혜준 박사, 박지현 전문연구원 등 집필진과 최낙균 무역투자실장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연구단계에서 많은 조언을 주신 산업자원부, 재

정경제부, 외교통상부의 담당자들과 심의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의 추진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경제사회연구회에도 감사의 뜻을 보냅니다.

2004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院長 安 忠 榮

국문요약

1. 개관

2장에서는 WTO를 중심으로 무역원활화 논의사항을 정리하고, 3장에서는 DDA 협상에서 논의하고 있는 무역원활화의 주요쟁점 및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개도국의 입장을 조항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개도국이 무역원활화 협정에 주저하는 이유가 물적 및 인적자원의 부족에 있음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무역원활화에 따른 선진국·개도국에서의 무역증진 효과를 실증한다. 5장에서는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개도국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면서 실현가능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개도국 지원의 내용 및 방향을 제시한다. 제도적 지원 전략으로 (1) 다자간 협정내 복수간 협정 추진, (2) 조항별 개별협정 추진, (3) 조항별 유예기간의 차별적 적용을 제시하며, 직접적 지원전략과 관련해서는 ODA 지원규모의 대폭적 확대와 양자형태의 프로젝트 지원을 제시한다.

2. 무역원활화 규범화의 방향

무역원활화에 대한 WTO에서의 그간의 논의과정과 기본골격 합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진국의 경우 무역원활화의 전세계적 이익을 강조하면서 규범화를 주장한다. 이에 반해 개도국은 무역원활화의 무역증진효과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개도국이 받는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하면서, 무역원활화 의제를 규범화할 경우 통관절차 개선 등 무역원활화 증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선진국이 담당해 주기를 기대한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1)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무역원활화의 10% 개선으로 전세계 교역량이 3.6%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무역자유화의 교역증대 효과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무역원활화 규범화의 경제적 유인이 분명히 존재한다. (2) 무역원활화로 각국이 향유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크기는 타국의 개선에 의해 유발되는 간접효과보다 자체적인 개선의 정도(직접효과)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따라서 현재 무역원활화 수준이 낮은 개도국의 경우 무역원활화로 향유할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의 크기가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선진국보다 훨씬 크다. (3) 모의실험 결과 선진국만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개도국의 주장과 달리 무역원활화에 따른 교역증진효과가 비차별적으로 또는 개도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4) DDA의 포괄적 협상과정에서, 무역원활화 단일의제의 논리를 넘어 개도국의 이해를 제고하는 관점에서, 선진국의 무역원활화 관련 개도국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요구가 제기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무역원활화의 전세계적 무역증진효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뿐 아니라 선진국보다 개도국에게 더 큰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다. 따라서 무역원활화의 혜택이 선진국에 집중된다는 개도국의 주장과 이에 근거한 선진국 부담론의 논리적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사업을 일부 지원하고 개도국도 비용을 자체 부담하면서 무역원활화를 규범화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이 경우 선진국 지원의 초점을 최빈 개도국에 맞추어 필요성이 있으며 무역원활화 협정도 높은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

3. 개도국 지원

가. 개도국 협정참여를 위한 전략적 접근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개도국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실현가능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이 주장하는 물적자원 및 인적자원 부족의 우려사항을 협상에서 충분히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개도국이 협정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

- (1) 다자간 협정내 복수간 협정방식: 분쟁해결절차의 사용과 적용 여부를 각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즉 협정문 협상에 있어서는 다자간협정 방식으로 진행하고, 분쟁해결절차 사용 여부에 있어서는 복수간협정의 성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 (2) 조항별 개별협정 방식: 무역원활화 협정을 하나의 협정으로 취급하지 않고 GATT 5조, 8조, 10조의 내용을 따로 분리하여 3개의 협정을 협상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각 국가들이 자국의 무역원활화 수준에 따라 각 개별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 (3) 조항별 유예기간의 차별적 적용: 무역원활화 협정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단일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보다는 5조, 8조, 10조의 조항별 내용에 따라 유예기간을 차별적으로 정한다.

(1)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참여국만의 무역원활화 개선의 교역증진효과가 상당히 커서 참여국만의 협정체결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회원국이 참여하는 형태에 비해 작지 않다. 또한 참여국의 교역증진효과가 미참여국(인도, 이집트, 베네수엘라, 브라질)의 교역증진효과를 크게 상회하여 무임승차의 문제가 거의 없다. 따라서 (1)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이면서 동시에 다자간 협정으로

발전할 경제적 유인을 내재하고 있어 향후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

(2)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8조(수출입절차 및 수수료)의 10% 개선으로 수출입이 각각 2.02% 증대될 수 있으며, 10조(투명성)의 10% 개선으로는 교역량이 0.88% 증가할 수 있다. 무역원활화 단일지표를 사용한 추정결과를 고려할 때 8조 개선에 의한 교역증진효과가 무역원활화 전체의 개선효과에서 차지하는 기여도가 약 56%에 달할 것이다. 또한 개도국의 반대의사가 강한 8조(수출입절차 및 수수료) 개선의 효과가 개도국이 수급하고 있는 10조(투명성) 개선 효과를 크게 상회한다.

따라서 조항별로 협정문을 분리하는 제안이 현실적 타당성 및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다. 또한 조항별 협정문 분리를 추진하면서 10조 협정문 체결에 있어서는 선진국이 최빈개도국 지원만을 담당하면서, 선진국의 지원을 8조 협정문 체결에 연계하는 전략이 경제학적으로는 바람직하다. 선진국의 입장에서 보면 8조 관련 개선으로 얻는 교역증대효과가 10조의 경우보다 크기 때문이다.

(3)의 제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UR에서의 5~10년의 유예기간 설정을 고려할 때 DDA에서의 유예기간은 최고 10~20년 정도가 될 것이다. 5조, 8조와 10조에 대한 협정을 분리시키는 경우 10조에 대해서는 5~10년의 유예기간, 5조와 8조에 대해서는 10~20년의 유예기간이 적합하다.

나. 한국의 직접지원 내용 및 방향

개도국에 대한 직접지원과 함께 개도국이 비교적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협정조항을 조정하는 전략적 접근방식도 필요하다. 협정체결을 위한 직접지원으로 무역원활화를 위한 각종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자금이나 장비의 지원, 그리고 무역원활화의 충실한 이행에 필수불가결한 개도국 공무원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행해졌던 단순한 단기교육의 형태를 벗어나, 효과적인 무역원활화 지원을 위해서는 이 외에도 물질적 지원, 자금지원, 그리고 중장기적 교육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한국은 개도국 직접지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1) 3장 및 5장의 정책 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한국은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선진국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무역원활화 협상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이익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다.
- (2) 한국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교량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여러 번 반복한 바 있다. 한국이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취하고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을 좁히는 데에 기여할 경우 다자간 통상협상에서 한국의 입지가 제고될 수 있다.
- (3) 한국의 IT 산업이나 무역원활화 관련 산업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개도국 지원은 교육, 자문뿐만이 아니라 금융지원 및 물적지원 형태를 포함해야 한다. 통관절차 자동화와 IT의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살리면서 한국과 지원수혜 개도국이 함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 (1) 과거의 경험과 IT 산업의 강점을 기반으로 개도국에 대하여(통관절차의 전자화와 자동화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물, 컴퓨터, 모니터와 서버 등의 하드웨어, 통관절차관련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의 교육을 종합적,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관절차 자동화 패키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최빈국의 경우에는 파격적인 수준의 유상지원, 또는 무상지원까지의 형태로,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개도국에 대해서는 EDCF를 통한 유상원조로 패키지 형태의 지원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건설 서비스나 장비를 한국업체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
- (2) 한국의 KTNET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다. 향후 KTNET 소프트웨어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도 가능하다.
- (3) KTNET가 KOICA와 함께 공무원 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

개도국 무역원활화 지원을 위해서는 ODA 지원규모의 대폭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ODA 수준을 현재 GNI의 0.06%에서 OECD DAC의 절반수준인 0.11%로 증가할 것과 이 증가분 중 25%를 무역원활화에 할당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다자형태의 기금 구성, 양자형태의 자금지원 방식, 다자형태의 프로젝트 참여, 그리고 양자형태의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원방식 중에서 한국기업에 가장 유리한 양자형태의 프로젝트 지원을 강조할 것을 제안한다.

차 례

제1장 서론	1
제2장 무역원활화의 개념 및 논의현황	4
1. 무역원활화의 개념	4
2. WCO와 APEC에서의 무역원활화	5
가. WCO에서의 무역원활화 논의	5
나. APEC에서의 무역원활화 논의	8
3. WTO/DDA에서의 논의와 기본골격 내용	11
가. WTO/DDA 무역원활화 논의	11
나. 무역원활화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	14
다. DDA 무역원활화 협상의 기본골격: Annex D의 내용	17
제3장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20
1.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쟁점	20
2.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22
가. 무역원활화 데이터	24
나. 추정방정식 및 실증분석 결과	28
3. DDA 협상과 그 구성요소로서의 무역원활화	37
4. 정책적 시사점	40

제4장 무역원활화의 쟁점 및 개도국의 입장 42

1. GATT 10조 42
 - 가. 정보 접근 및 법령과 규제의 투명성 43
 - 나. 사전판정 47
 - 다. 의견수집과 협의절차의 도입 48
 - 라. 검토 및 상소절차의 도입 50
 - 마. 정리 51
2. GATT 8조 54
 - 가. 국경통과 관련 서류의 간소화와 서류 요구사항의 표준화 ... 57
 - 나. 일반적 통관절차와 국경통과절차의 간소화 59
 - 다. 수수료와 요금 63
 - 라. 통관담당 부처간의 협력 제고 64
 - 마. 통관절차의 자동화 65
3. GATT 5조 69
 - 가. 통관절차 및 관련서류의 간소화와 표준화 71
 - 나. 운송수단, 탁송종류, 운송업체 등에 대한 무차별성 보장 72
 - 다. 화물통과에 대한 국제협력의 강화 73
4. 무역원활화 규범제정에 대한 개도국의 반대 이유 및 문제점 75
 - 가. 분쟁해결절차 사용여부 78
 - 나. 지원문제 79
 - 다. 유예기간 문제 80
5. 요약 81

제5장 개도국 협정참여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및 한국의 개도국 지

원 내용 및 방향 84

1. 개도국 지원의 필요성 84

2. 개도국 협정참여를 위한 전략적 접근	87
가. 제도적 지원과 한국의 전략	88
나. 다자간 협정내 복수간 협정: 분쟁해결절차의 사용 분리	89
다. 조항별 협정체결	97
라. 유예기간의 차별적 적용	109
3. 한국의 직접지원의 내용 및 방향	110
가. 직접적 지원의 형태	111
나. ODA 및 무역원활화 지원	115
다. 프로젝트 지원	116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20
1. 무역원활화 규범화의 방향	120
2. 개도국 반대사유	121
3. 개도국 지원	121
가. 제도적 지원	121
나. 직접지원과 한국의 역할	123
4. 연구의 한계성	125
참고문헌	127
〈부록 1〉	133
〈부록 2〉 한국의 ODA 지원현황	139
〈Executive Summary〉	159

표 차례

표 2-1. APEC 무역원활화 실천방안	10
표 3-1. 무역원활화 세부지표(2002)	27
표 3-2. 무역원활화 추정 방정식	31
표 3-3. 무역원활화의 효과: 시나리오 1	34
표 3-4. 무역원활화의 효과: 시나리오 2	34
표 3-5. 무역원활화의 효과: 시나리오 3	35
표 3-6. 무역원활화의 효과: 시나리오 4	35
표 3-7. 무역원활화의 효과: 시나리오 5	36
표 4-1. GATT 10조 관련 제안서 정리	53
표 4-2. GATT 8조 관련 제안서 정리	66
표 4-3. GATT 5조 관련 제안서 정리	75
표 5-1. 분쟁절차 분리의 효과: 시나리오 4-2(EU, APEC 국가의 20% 개선)	96
표 5-2. 분쟁절차 분리의 효과: 시나리오 4-2(EU, APEC 국가의 50% 개선)	97
표 5-3. 협정문 분리의 경제적 효과: 8조(수출입절차 및 수수료)	101
표 5-4. 10조(투명성) 개선의 효과: 시나리오 1	103
표 5-5. 10조(투명성) 개선의 효과: 시나리오 2	104
표 5-6. 10조(투명성) 개선의 효과: 시나리오 3	105
표 5-7.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개선의 효과: 시나리오 1	107
표 5-8.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개선의 효과: 시나리오 2	108
표 5-9.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개선의 효과: 시나리오 3	109
부표 1-1. 무역원활화관련 분쟁사례(2000 ~ 03년)	133
부표 1-2. 무역원활화 지수설명	134

부표 1-3. 주요변수간 상관계수 행렬	138
부표 2-1. ODA의 종류	141
부표 2-2. ODA의 각종 종류와 담당기관 및 소관부처	141
부표 2-3. 한국 ODA 총금액 추세(1987 ~ 2003)	142
부표 2-4. 한국의 종류별 ODA 국제협력 실적추이(1997 ~ 2003년)	142
부표 2-5. OECD/DAC 회원국의 ODA 실적 추이	143
부표 2-6. 한국의 ODA 주요 수요국(2003년)	145
부표 2-7. EDCF의 운영체제	149
부표 2-8. EDCF 지원대상국가 그룹별 지원조건	156
부표 2-9. EDCF 지원조건	157
부표 2-10. EDCF의 산업별 실적(1987 ~ 2003년)	157
부표 2-11. EDCF의 국가별 실적 (1987 ~ 2003년)	158

그림 차례

그림 3-1. 모의실험 분석: 무역원활화 개선의 교역증대 효과	32
--	----

제1장 서론

무역원활화는 1996년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작업과제로 선정된 이후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과 함께 뉴라운드 의 새로운 의제, 또는 싱가포르 의제로 분류되어 협상개시 여부를 두고 논의가 계속되어왔다. 2001년 도하 각료회의에서는 무역원활화를 포함한 싱가포르 의제 논의를, 2003년 칸쿤 멕시코 각료회의(5차)에서 협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후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함으로써 다자규범화 협상 출범이 지연된 바 있다.

2004년 5월 EU는 한 발 물러나 무역원활화만 의제로 채택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개도국들도 동의하였다. 그 후 각국간 협의와 의견조정을 통해 협상 기본골격 최종 합의문(July Package)을 일반이사회에서 채택하고 8월 1일 발표함으로써 무역원활화 협상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결국 4가지 싱가포르 의제 중 무역원활화만을 협상의제로 채택한 것이다. 기본골격 합의문 부속서 D는 개도국의 우려사항을 반영하여 무역원활화 협정이 개도국에게 역량에 넘는 투자를 요구할 수 없고, 선진국의 지원이 없으면 투자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며, 무역원활화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도국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도입으로 분쟁절차 등 그들의 부담은 확실히 증가하지만, 무역원활화의 무역증진효과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이 얻을 수 있는 바는 불확실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무역원활화 의제를 규범화할 경우 통관절차 개선 등 무역원활화 증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선진국이 담당해주시기를 기대한다.

결국 무역원활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개도국들이 무역원활화 협정으로 얻을 수 있는 바를 설명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협정문 초안들을 제시하여, 각 국가들의 의무

와 부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무역원활화 논의를 진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칸쿠회의 결렬의 한 요인이었던 무역원활화 이슈의 쟁점을 개도국 입장에서 파악한 후 어떤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개도국 능력배양을 지원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2) 무역원활화의 효과 및 이익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무역원활화 협상에 반대하고 있는 개도국 주장의 타당성을 실증한 후 설득논리를 개발하며, (3)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개도국 능력배양 정책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력방정식을 활용한 실증분석으로 무역원활화의 전 세계적 무역증진효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뿐 아니라 개도국도 큰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무역원활화의 혜택이 선진국에 집중된다는 개도국의 주장과 이에 근거한 선진국 부담론의 논리적 근거가 미약함을 실증하였다. 또한 WTO/DDA에서의 논의상황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하여 개도국이 무역원활화에 부정적인 이유를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부족에서 찾는다. 그리고 무역원활화 규범화에 개도국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지원할 필요성과 이에 관련하여 한국의 지원방향을 제시하며, 분쟁해결절차의 분리, 조항별 협정체결 등 협정조항의 조정을 제안한다. 한국 및 선진국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개도국의 관점에서 쟁점사항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점과 WTO/DDA 문서 분석을 넘어 중요 쟁점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WTO를 중심으로 무역원활화 논의사항을 정리하고, 3장에서는 무역원활화에 따른 선진국·개도국에서의 무역증진 효과를 실증한다. 무역원활화의 전 세계적 무역증진효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뿐 아니라 선진국, 개도국 모두에게 비차별적인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다면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사업을 일부 지원하고 개도국도 비용을 자체 부담하면서 무역원활화를 규

범화하는 것이 중국적인 지향점이 된다.

3장에서는 DDA 협상에서 논의하고 있는 무역원활화의 주요쟁점 및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개도국의 입장을 무역원활화 관련 조항별로 검토한다. 결국 개도국이 무역원활화 협정에 주저하는 이유가 물적 및 인적 자원의 부족에 있음을 제시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개도국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면서 실현가능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개도국 지원의 내용 및 방향을 제시한다. 제도적 지원전략으로 (1) 다자간 협정내 복수간 협정 추진, (2) 조항별 개별협정 추진, (3) 조항별 유예기간의 차별적 적용을 제시하며, 직접적 지원전략과 관련해서는 ODA 지원규모의 대폭적 확대와 양자형태의 프로젝트 지원을 제시한다.

제2장 무역원활화의 개념 및 논의현황

1. 무역원활화의 개념

무역원활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아직 없으나 WTO에서는 ‘국제무역 절차의 간소화(simplification) 및 조화(harmonization)’로 정의하며, 여기서 국제무역절차는 ‘국제무역에서 상품이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발표, 전달, 처리하는 활동과 관행 그리고 절차’를 의미한다. 그러나 WTO에서는 무역원활화의 범위를 GATT 5조(화물의 통과), 8조(수출입절차와 수수료), 10조(무역규정의 공포 및 시행)의 내용으로 제한하고 있다.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도하 각료선언)에서 무역원활화에 대한 향후 다자간 협상 논의를 이 3가지 조항에 한정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WTO가 이 세 분야를 채택한 배경은 무역원활화 내용의 일부가 이미 기술장벽(TBT) 협정,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협정, 관세평가협정, 선적전 검사협정, 원산지규정협정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서비스 부문 무역원활화는 GATS 협정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중복의 위험이 큰 것에 기인한다. 사실 여타 국제기구에서는 무역원활화를 더욱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WTO에서 무역원활화라고 불리는 분야는 여타 국제기구나 지역기구, 또는 학계에서나 기업체들이 사용하는 무역원활화 개념 중 오직 일부만 포괄하고 있을 뿐이다. 포괄적 무역원활화에 대한 내용은 WCO 및 APEC에서의 무역원활화에 대한 전개를 다루는 2절에서 상술한다.

그간의 WTO 무역원활화 논의를 살펴보면 회원국들은 무역원활화를 통한 통관절차 간소화 및 상품의 원활한 흐름, 교역비용 감소 등의 긍정적인 혜택에 공감하고 있지만, 무역원활화에 대한 새로운 국제협정 제정의 필요성에는 견해차이가 존재한다. 통관, 운송 등 무역인프라가 부족한 개도국들은 새로운 협정제정보다 무역원활화 여건 마련을 위한 선진국의

기술지원을 먼저 요구하고, 선진국들은 다자간 규범 협상을 적극 지지한다.

2. WCO와 APEC에서의 무역원활화

가. WCO에서의 무역원활화 논의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주업무는 세관관련 법령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무역원활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신속한 세관통과로 무역량을 증가하게 하고 높은 수준의 관리와 검사를 수행하며 적은 비용으로 세관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세관활동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WCO는 검사의 질을 향상하고 국제적으로 통일화된 방법으로 불필요한 무역제한 요소를 제거한다. WCO는 무역원활화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5개의 제안서를 WTO에 제출하였는데 3개의 제안서¹⁾는 GATT 3개 조항(5, 8, 10조)에 대한 것이며, 나머지 둘은 세관능력배양에 대한 제안서²⁾이다.

1) WCO의 능력배양활동³⁾

WCO는 세관관련 능력배양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WCO 자체 수요조사에 의하면 정치적인 의지와 노력, 그리고 세관담당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별 특정 수요에 대한 정확한 평가, 능력배양사업에서 수여자(donor)와 수혜정부간의 공감대 형성, 적절한 물적 및 인적 자원, 그리고 다른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도 중요한 사항이었다.

1) G/C/W/392(Review of the GATT Article X), G/C/W/407(Review of the GATT Article VIII), G/C/W/426(Review of the GATT Article V).

2) G/C/W/445(Compendium of WCO Capacity Building Tools), G/C/W/467(Capacity Building in Customs).

3) WCO, 2004, "WCO Work on Trade Facilitation," WTO Negotiating Group Meeting, Nov. 22. 참고.

세관관련 능력배양을 위한 전략으로 WTO 무역원활화 논의의 적극 참여, 충분한 자원 및 정보가 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 그리고 세관능력 배양분석 기본골격(Customs Capacity Building Diagnostic Framework) 제공(2005년 2월경) 등을 채택하였다. 분석 기본골격은 프로젝트의 계획과 실행지침으로 사용가능한 종합적이고 표준화된 분석도구로 세관 당사자와 관계부처가 문제점을 스스로 진단(self assessment)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분석 기본골격은 문제점 진단, 자주 목격되는 약점, 가능한 해결책 및 개선책, 그리고 참고자료 등을 제공한다. 각국이 무역원활화 개선에 앞서 무역원활화 수요와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석 기본골격이 매우 유용할 것이다.

WCO의 또 다른 능력배양사업으로 2004년 말 발간예정 중인 통관시간 연구(Time Release Study)가 있다. 통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상품의 종류 및 형태, 운송수단, 그리고 관련규정과의 적합도 등이 있는데, 이 연구는 상품의 도착에서 배출까지 각 단계별로 소요되는 평균시간을 측정함으로써 문제와 병목현상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세관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WCO는 통관시간연구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세계은행과 공동 개발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WCO의 능력배양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행한다. 우선 능력배양을 위해 각 WCO 회원국은 WCO 및 WCO 소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각 나라의 세관당국을 통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능력배양을 위한 세계 지역별 훈련센터와 지역사무소가 개설되어 있다. 그리고 능력배양을 위한 전자교육이 마련되어 있으며,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능력배양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세계은행, UN 산하기관과 공동으로 정부, 세관, 민간 그룹으로 형성된 무역원활화 포럼(Global Facilitation Partnership⁴⁾)을 운영 중이며, 세계은행과는 세관현대화지침서(Customs Modernization Handbook)를 출간할 예정이다.

4) GFP 홈페이지: www.gfptt.org.

2) 교토협약

세관절차에 대한 교토협약(Kyoto Convention)은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WCO의 대표적 산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토협약의 원명은 ‘세관절차의 간소 및 조화에 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으로 1973년 제정되었다.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부분은 협약 실행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하는 19개 조항으로 이루어지며, 두 번째 부분은 특정 세관절차를 다루는 31개의 부속조항으로 구성되었다. 31개의 부속조항은 각 국의 세관 관련규정 제정시 필요한 원칙을 담고 있어 세관절차의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다.

국제화물량의 급증, 정보기술의 발전, 세계적인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조화의 필요성 등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1999년 WCO는 개정교토협약(Revised Kyoto Convention)을 채택하였다. 효과적으로 세관관리를 달성할 수 있는 간소하고,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관절차의 마련을 위한 통일된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개정협약은 일반부록(General Annex)과 10개의 특별부록(Specific Annexes)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부록은 모두 10개 장(chapter)으로 되어 있고, 각 장은 모든 세관절차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상품통관에 대한 핵심적인 절차와 실행사항 등을 기술하는 기준(Standards)과 임시기준(Transitional Standard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통관절차, 수수료, 보증금(Security), 세관검사, 정보기술의 적용, 세관관련 기관과의 협력, 세관당국의 정보제공, 세관문제의 상고 등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다. 개정교토협약에 가입한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10개 장에 속한 기준과 임시기준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⁵⁾

10개의 특별부록은 총 25개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은 특정 세관절차를

5) 동시에 만족하기 힘든 경우에 대비하여 기준의 경우 최고 3년, 임시기준의 경우에는 최고 5년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다룬다 (A: 세관지역 상품도착, B: 수입, C: 수출, D: 세관 창고와 자유지역, E: 통과, F: 처리, G: 일시반입, H: 위반, J: 특별절차, K: 원산지). 각 나라는 그들 형편에 맞게 특별부록이나 그에 따른 장을 취사선택하여 준수한다. 일반부록에서처럼 선택된 특별부록 내의 기준은 의무사항이 되며 그 의무사항에 대해 같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그러나 특별부록의 권고(Recommended Practices)에 대해서는 거부하거나 유보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국에게 이행에 있어서 융통성을 제공하였다.

WCO는 세관관련 무역원활화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WCO에서의 논의가 WTO에서의 무역원활화 논의 수준을 사실상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WCO가 세관관련 무역원활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WTO는 원칙(high standards)을 세우는 것으로, WCO는 구체적인 세부실천사항을 만드는 것으로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나. APEC에서의 무역원활화 논의

APEC은 1989년 출범 이후 계속해서 무역원활화를 주요의제로 다루었다. APEC 비전을 제시한 보고르 목표(Bogor Goals)⁶⁾에서도 무역원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보고르 목표 실천의 기본 골격을 제시한 오사카 행동의제(Osaka Action Agenda: OAA)도 개별실천방안(Individual Action Plans: IAPs)⁷⁾과 공동실천방안(Collective Action Plans: CAPs)⁸⁾ 제도를 마련

6) 보고르 목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선진국의 경우 2010년까지, 개도국인 경우 2020년까지 이룩하자는 것이다.

7) 각 회원국은 매년 그들의 IAP를 제출한다. IAPs는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 대해 정해진 목표를 위해 취한 각국의 실천사항을 기록한다. 각국은 자신의 시간표와 목표를 각자 세우고, 그것을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으로 수행한다. OAA에서는 각 회원국이 3가지 핵심 무역원활화분야를 포함한 15개 분야를 정하고,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8) CAPs는 OAA에서 정한 15개 분야에 대한 APEC 전체 회원국의 공동실천사항을

하며, 3가지 핵심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1) 세관(Customs)과 관련하여 상품이동, 서류의 투명성, 서류 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 국제무역분류 일체화, 일시반입, 그리고 전문인력 등에서의 개선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2) 표준화(Standards and conformance)와 관련하여 상호인정, 국제기준 일치, 규제부담, 요건의 투명성, 규제자의 전문성 개선을 세부과제로 설정하였으며, (3) APEC 특유로 사업가 이동(Business mobility)을 다루면서 비자규제, 체류기간, 사업 여행자의 신분증 등을 논의했다.

3가지 핵심분야 내용이 시사하듯이 사업가 이동을 예외로 한다면 APEC에서 지향하는 무역원활화 작업은 WTO의 무역원활화 논의와 상당부분 일치한다.

1996년 APEC 회원국 정상들은 OAA에서 제시된 실천사항 중 관세부과 체계의 상호조화 및 통관절차의 회원국간 조화를 합의하였다. 1999년 APEC은 각 회원국의 개별실천방안(IAPs)에 담긴 무역원활화조치를 평가했는데 3가지 핵심분야 중 세관절차부분이 가장 잘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핵심분야에 비해 세관절차분야가 명확한 목표와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고, 세관절차의 공동실천방안(CAPs) 수행을 담당하는 소위원회(Sub-committee of Customs Procedures)의 작업활동도 뛰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APEC 회원국의 3가지 핵심분야에서의 무역원활화 진척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Wilson et al., 2002, "Trade Facilitation: A Development Perspective in the Asia Pacific Region").

2001년 상하이 회의에서 정상들은 2006년까지 APEC 회원국간 무역거래비용을 5% 줄이자는 구체적인 목표에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회원국은 회원국의 다양성과 무역원활화 진행에서의 회원국간 차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무역원활화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또한 개

일컫는다. CAPs는 각 회원국의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모니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위한 실천과 목표를 점검하는 데도 사용된다.

도국 무역원활화 능력배양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중요성도 지적하였다.

상하이 회의 이후 APEC은 상하이 목표를 가시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2002년에는 항구효율성, 세관환경, 규제환경, 전자무역사용 등을 무역원활화의 내용으로 정의하고, 이를 개선할 때 잠재적인 이익이 상당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역내 무역원활화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APEC 무역투자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는 무역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사항과 수단에 대한 ‘메뉴’를 제시하였는데 <표 2-1>은 4가지 종류의 실천방안과 그에 따른 실천사항들을 나열하고 있다. 회원국은 2003년 그들이 실천할 메뉴를 선택하여 APEC에 제출하였다.

〈표 2-1〉 APEC 무역원활화 실천방안

상품이동 (60)	1. 세관과 무역관련 법·규정에 대한 정보의 공개(5) 2. 적절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무역관련 절차(9) 3. HS 코드와 부합하는 관세체계(4) 4. 교토협약에 기초한 간소화와 조화(4) 5. 무역관련 절차의 자동화(17) 6. 표준화된 형식과 조화된 데이터 채택(4) 7. WTO 평가(valuation) 협정원칙 채택(4) 8. 명확한 상소체계 마련(3) 9. 위험관리(3) 10. 급행화물의 통관 지침(3) 11. 일시반입(이스탄불 협약체결)(4)
표준화(20)	1. APEC 회원국의 자국내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맞춤(9) 2. 상호인정(8) 3. 기술인프라개발(1) 4. APEC 회원국의 표준에 대한 투명성과 표준일치 확보(2)
사업가이동 (6)	1. 사업가이동 향상을 위한 절차의 간소 및 표준화(3) 2. 정보통신기술 사용 향상(3)
전자상거래 (11)	1. 전자상거래에 대한 장애 제거(3) 2. 전자상거래 사용의 속도(8)

자료: APEC 무역투자위원회

주: 괄호 안 숫자는 각 실천사항에 해당하는 구체적 실천방안의 수

<표 2-1>에서 알 수 있듯이, 상품이동과 표준화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실천사항을 대부분이 WTO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APEC의 무역원활화 논의사항이 WTO보다 더 광범위하고 심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업

가이동은 APEC에서 독자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사항도 WTO보다 깊이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WCO와 APEC의 무역원활화에 대한 논의는 WTO의 논의와 많은 부분 서로 유사할 뿐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세관 부분에 대한 WCO 논의는 전문적이며 심도있고, APEC의 논의사항은 WTO보다 광범위하고 깊이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WCO와 APEC의 무역원활화 경험은 앞으로 있을 WTO 협상 및 논의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사실 WTO는 2004년 8월 발표된 무역원활화 기본골격에서 WCO와 APEC을 포함한 여러 국제기구의 협력 요청을 이미 피력한 바 있다.

무역원활화에 대한 논의가 중복되어 있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앞으로 진행될 WTO의 논의에서 WTO가 조정자(coordinator)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할 것이다.

3. WTO/DDA에서의 논의와 기본골격 내용

가. WTO/DDA 무역원활화 논의

무역원활화는 1996년 WTO 제1차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이슈 중 하나로, 같은 해 상품교역이사회(Council on Trade Goods: CTG)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⁹⁾

무역원활화 협상 논의경과를 살펴보면, 2002년 3월 상품교역이사회에서 ‘2002 무역원활화 작업프로그램’이 채택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2002년 중 4번의 공식적인 회의를 통하여, 첫째 GATT(1994) 5조, 8조, 10조의 핵심의제, 둘째 회원국들의 무역원활화에 대한 수요 및 우선

9) 2000년 무역원활화 작업은 국별경험, WTO 원칙 및 무역원활화 조치,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등 세 가지 범주에서 이루어졌다.

순위(특히 개도국, 최빈개도국의 우선순위), 셋째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등의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이었다.

2002년 제1차 회의에서는 GATT 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를 중점으로 논의하였으며, 이 조항에 대한 명확화와 개선방법에 대한 제안이 주를 이루었다. 즉, 정보제공창구의 투명성 개선, 사전판정(advanced ruling) 제도¹⁰⁾ 도입, 세관행정과 무역업자간의 체계적인 협의 확대, 효율적인 항소절차 구축 등에 관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제2차 회의에서는 GATT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에 대해 주로 논의하였다. 수출입절차의 단순화 및 표준화, 국제적인 표준 채택, 자료요건 축소, 위험평가 이용, 자동화에 대한 효율성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제안한 조치들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회원국들이 직면하는 문제, 안전성 문제, 인프라 부족, 관세수입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개도국들은 구속적 규범의 도입에 우려를 표명하고 개도국우대(S&D)와 유예기간 부여 등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제3차 회의에서는 5조(화물의 통과)에 대해 주로 논의하였으며, 특히 내륙국가의 경우 통과화물 문제 및 구속력 있는 새로운 규범 도입 문제 등이 거론되었다. 일부 회원국들은 전반적인 경제안정을 향상시키고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안전성 확대, 비특혜 원산지 규정에 대한 통일화 작업의 완료가 무역원활화 조치에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제4차 회의에서는 전술한 3개의 주요 핵심의제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있었다. 또한 2003년 칸쿤 회의까지의 향후 작업 운영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회원국들은 세 가지 핵심의제에 대한 기본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2003년에는 3월, 6월 두 차례의 무역원활화 회의를 개최하였다. 2003년

10) 사전판정이란 통관절차, 특히 물품의 분류기준에 있어서 물품이 실제로 통관하기 전, 통관담당자가 서류상으로 물품을 심사하고, 이에 대한 분류기준을 판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전판정을 이행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에서는 서류상 잘못이 없는 한, 사전판정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관담당자가 임의적으로 사전판정을 무시할 수 없다.

회의에서는 개도국들의 참여가 활발한 가운데 주로 무역원활화의 구속력 있는 규범화 여부, 개도국우대,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정책의 실행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많은 개도국들이 통관 시스템 관련 인프라 구축, 교육 프로그램, 기타 무역원활화 정책 시행을 위한 실질적인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정책을 선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2003년 제1차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무역원활화의 혜택을 강조하고, 새롭고 강화된 무역원활화의 규범은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의 일부분이라고 강조하였다. 일부 회원국들은 나라마다 다른 경제발전단계로 인해 다자규범 도입시 각국의 현황에 맞춘 다양한 정책시행 접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기술지원과 능력배양 지원은 무역원활화 작업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무역원활화의 이익과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에 대해 동의했는데 개도국은 인프라 구축 지원 및 자발적 협력체계를 강조한 반면, 선진국은 구속력 있는 규범체제의 효과를 강조하였다. 제2차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들을 다자무역체제로 통합하고 모든 회원국들이 무역원활화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많은 회원국들은 무역원활화에서 구속력 있는 규범에 기초한 접근방법을 강조하면서도 신축적인 접근방법도 고려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기술지원과 능력배양 역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2001년 도하 각료선언문에 따라 2003년 제5차 WTO 각료회의(칸쿰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 정식의제 채택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였다. 표면적인 결렬이유는 싱가포르 이슈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선진국, 특히 EU와 일본의 입장(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무역원활화 등 싱가포르 이슈를 모두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에 개도국이 반대함으로써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 합의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개도국은 싱가포르 이슈의 규범화를 반대해오고 있는데, 이는 규범화 이후 개도국이 규범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WTO 분쟁해결기

구를 통해 선진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2004년 5월 EU는 한 발 물러나 무역원활화만 의제로 채택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개도국들도 동의하였다. 그 후 각국간 협의와 의견조정을 통해 2004년 7월 16일 WTO 일반이사회 의장의 DDA 협상 기본골격 제1차 초안이 발표되었는데 싱가포르 이슈 중 유일하게 무역원활화만이 포함되었다. 그 이후 오시마(Oshima) 일반이사회 의장의 수정안(7월 30일)에 대한 협상을 거쳐 협상 기본골격 최종 합의문(July Package)을 일반이사회에서 채택하고 8월 1일 발표함으로써 무역원활화 협상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나. 무역원활화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

1) 콜로라도 그룹 및 선진국

3장에서 본 바와 같이 무역원활화 개선이 선진국, 개도국 모두의 교역을 증진시키고 있다. 실증연구 문헌들도 작은 규모의 무역원활화 개선으로도 큰 폭의 관세감축과 마찬가지로 무역증대와 국가 후생증진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Lucenti, 2003; Wilson et al., 2003). 이에 따라 무역원활화가 기본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개도국들도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무역원활화에 대한 새로운 국제협정 제정의 필요성에는 견해 차이가 있다.

주로 선진국으로 구성된 콜로라도 그룹¹¹⁾은 (1) WTO 조항(제5, 8, 10조) 및 WTO 원칙(투명성, 간소화, 효율성, 무차별)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범 제정, (2) 개도국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을 제안하고 있다. 즉, 무역거래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WTO 기본원칙을 무역절차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GATT 제5, 8, 10조를 개선하여

11) Friends 그룹이라고도 하며 무역원활화의 WTO 규범화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 미국, EC,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헝가리, 칠레, 홍콩, 싱가포르, 코스타리카 등으로 구성된다.

규범화하고 이와 병행하여 대(對)개도국 기술지원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선진국들은 무역원활화에 대한 다자규범협상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무역원활화 논의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EU는 WTO 차원에서 분쟁해결기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규범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국의 경우 기존 관련 규정 이행을 주장하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다자규범 의무이행을 위한 개도국 우대조치를 제시하는 등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 WTO 규정에 명시된 무역절차 관련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함으로써 이를 보완 또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통관신속화를 위해 세관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호주도 무역원활화 다자규범협상 개시를 촉구하면서 무역원활화 규범이 무역 절차 및 국내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으며, 여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구속력 있는 규범화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G/C/W/466). 일본은 무역원활화의 정책시행의 세 가지 접근방법으로 실행계획(action plan), 능력배양, 규율제정(rule-setting) 등을 제시하고 이는 무역원활화의 이익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G/C/W/465).

그동안 콜로라도 그룹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규범제정을 반대하는 개도국에게 기술지원과 능력배양을 제안하였다.

- GATT 제5조 관련: 차별적 의무부과, 기술지원을 위한 협조(EC), 자동화시스템 도입 등을 위한 워크숍, 연수프로그램 등을 통해 개도국의 능력배양에 기여(한국)
- GATT 제8조 관련: 차별적 의무부과 및 이행기간 허용, 기술지원을 위한 국제적 메커니즘 설치(EC)
- GATT 제10조 관련: 전자매체 등의 기술지원(캐나다), 개도국의 정보제공창구 지정시한 및 관련정보의 통보시한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우대조치 필요(한국)

2) 개도국

개도국은 무역원활화의 기본적인 원칙에는 공감하나 인프라 부족과 자원의 제약 및 규범화 후 규범위반을 이유로 한 분쟁발생 등을 우려하여 규범화에 반대하고 있다. 새로운 규범의 도입보다는 기존 WTO 협정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기존 협정의 보완·수정만으로도 국제적 규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개도국은 무역원활화에 대한 새로운 규범은 WCO, UNCTAD, 세계은행 등과 같은 여타 기구들의 작업과 중복되거나 상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개도국은 무역원활화 협정이 규범화될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이는 관련 규정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개도국의 경우 이미 상당수준의 무역원활화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즉,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 짐바브웨 등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무역원활화 조치가 강제규범화될 경우 분쟁해결절차를 통해서 선진국들의 새로운 시장개방 압력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무역원활화의 규범화를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개도국을 위한 유예기간과 분쟁해결조항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부표 2-2>는 무역원활화와 관련해서 발생한 최근(2000~03년)의 무역원활화 관련 분쟁사례이다.

통관, 운송 등 무역인프라가 부족한 개도국들은 새로운 협정제정보다 무역원활화의 여건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진국은 상호간 무역원활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후발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은 재정능력, 정보통신기술, 무역관련 제도 및 인프라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분야에서 기본여건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리핀은 인프라 구축지원 및 회원국의 자발적인 협력체계를 강조하였고, 브라질, 인도 등은 선진국 주도의 무역원활화 추진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것을 우려하면서 개도국 기술지원과 능

력배양을 주장하였다.

다. DDA 무역원활화 협상의 기본골격: Annex D의 내용

합의문은 GATT 규정 5조(화물의 통과),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를 명확히 하고 발전시켜 통과화물을 포함하는 상품의 이동·출하·통관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정을 수립하고, 세관당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무역원활화 협상의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기술지원과 능력배양사업의 지원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무역원활화 협상의 기본골격을 규정하고 있는 Annex D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협상의 목적은 GATT 5, 8, 10조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 데에 있다. 또한 무역원활화와 통관절차 준수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국제협력도 다루도록 한다(1조).
- 협상의 최종결과에 대한 선입견은 없다(각주 5).
-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특별대우는 전통적인 집행유예기간 부여의 수준을 넘어야 한다. 특히 각 회원국의 집행여력에 따라 유예기간을 결정해야 하며, 각 회원국의 여력을 능가하는 인프라 투자를 의무화할 수 없다(2조).
-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그들의 여력에 적합한 항목들만 의무화하도록 하며(3조), 협상의 일부로 개도국들과 최빈국들이 필요한 항목, 그리고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제안된 조치들의 비용도 고려하도록 한다(4조).
- 선진국들은 개도국과 최빈개도국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5조), 협상결과에 따른 개별조치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지원을 한다. 일부 회원국이 인프라 투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선진국들

은 투자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집행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진국의 지원은 영구적인 지원이 될 수 없다(6조). 또한 회원국들은 협상결과의 집행능력과 효율성을 검토한다.

- 협상 중 WCO나 세계은행 등 전문성을 가진 국제기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8조), WCO 등 여타 국제기구들의 결과물을 충분히 고려한다(9조).
- 도하 각료선언문의 45-51문단을 협상에 적용한다(10조). 따라서 무역원활화는 다른 도하 라운드 과제와 함께 통합과제(Single Undertaking)의 일부로 간주한다.

Annex D는 무역원활화 협정이 개도국이나 최빈개도국에게 무리한 투자를 요구할 수 있다는 개도국의 우려를 반영하여 개도국에게 역량에 넘는 투자를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선진국의 지원이 없으면 투자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며, 무역원활화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대목까지 포함되어 있다. 무역원활화 협상 시작에 대한 개도국들의 합의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양보가 꼭 필요하였지만 Annex D에 제시된 조건들, 특히 3조와 6조의 내용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위력이나 무역원활화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득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개도국들은 Annex D를 통해서 선진국의 지원 없이는 대규모 무역원활화 조치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즉, 선진국들이 무역원활화 협상을 원하면, 그들이 원하는 만큼 지원하라는 ‘put your money where your mouth is’ 전략을 택하였다. 따라서 DDA에서 도출할 무역원활화 협정의 효력은 선진국들이 제공할 지원과 직결된다. 그러나 국제적 경제침체 상황에서 미국, EU, 일본이 개도국들에게 대규모의 구체적 지원을 마련할지는 의문이다. Finger and Schuler (2000)에 의하면 16개 분야의 통관절차개혁을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미화 250만 달러가 필

요할 것으로 예상된다.¹²⁾ 선진국들이 여기에 필요한 금액을 전액 부담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이 금액의 큰 비중을 부담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정은 의무나 구속성이 약한 협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12) Lucenti(2003) p.43에서 인용.

제3장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1.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쟁점

무역원활화에 대한 WTO에서의 그간의 논의과정과 기본골격 합의안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정리하면 선진국의 경우 무역원활화의 전세계적 이익을 강조하면서 규범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도국은 통관절차 개선 등 무역원활화 증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을 강조하면서 무역원활화 규범화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지원이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외면적으로 볼 때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커다란 입장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내면적으로 볼 때 개도국의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뿌리 깊은 의견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선진국은 무역원활화 의제를 규범화할 경우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서도 커다란 무역증진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OECD, UN/ECE, UN/ESCAP 등 국제기구들도 각종 세미나나 연구자료를 통해 무역원활화가 개도국에게 이득이 된다고 적극적인 교육작업을 실시하였고, 무역원활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은 WTO 물품무역위원회나 WCO를 통하여 자국 경험을 계속 소개하여 무역원활화의 필요성과 이득을 홍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개도국들은 무역원활화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하는 데는 성공하고 있지만, 아직도 WTO 차원에서 무역원활화 협정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진다.

선진국의 이러한 입장과 달리 개도국은 무역원활화의 무역증진효과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개도국이 받는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극단적인 경우 개도국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전혀 없다면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증진을 위한 투자는 개도국의 재정적 부담만 가중된다. 따라서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한 투자를 부담한 후 경제적 효과를 향

유하라는 것이 극단적인 경우의 개도국 논리다. 이에 반해 선진국의 입장은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인적 및 물적 자원 투자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사업을 지원하겠지만, 개도국도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혜택을 향유하기 때문에 자발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본골격의 내용은 양측의 입장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협상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개도국이 극단적 입장으로 나가고 선진국은 개도국 지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면 결국 무역원활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대폭 감소하는 수준에서 무역원활화 협정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4장의 무역원활화 세부쟁점 및 개도국의 입장에 대한 논의에 앞서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의문사항 1: 무역원활화의 증진이 전세계적으로 국제무역을 얼마나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의문사항 2: 무역원활화 정도를 증진시킬 때 선진국과 개도국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선진국의 이익만을 증대시킬 것인가, 아니면 개도국도 무역원활화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 의문사항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라 무역원활화 협상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방향 1: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면 선진국도 큰 비용을 부담하면서 개도국이 소극적인 규범화 협정을 체결할 경제적 유인이 별로 없을 것이고, 협정체결에 이른다

해도 높은 수준의 무역원활화 규범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방향 2: 무역원활화의 전세계적 무역증진효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뿐 아니라 선진국, 개도국 모두에게 비차별적인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다면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사업을 일부 지원하고 개도국도 비용을 자체 부담하면서 무역원활화를 규범화하는 것이 중국적인 지향점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선진국의 지원은 최빈개도국 지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무역원활화 협정도 높은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

방향 3: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만 그 혜택이 선진국에 집중된다면 개도국의 주장과 같이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한 투자를 부담한 후 경제적 효과를 향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이 경우 선진국의 부담능력이 협정체결의 질 및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2.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본 절의 목적은 앞에서 제기한 의문사항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WTO 무역원활화의 큰 방향을 가늠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역원활화가 주는 경제적 효과를 실증분석 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무역원활화는 양국간 교역을 증대시킴으로써 각국의 산출 및 1인당 산출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무역원활화의 진전이 세계교역량을 어느 정도 증가시킬 것인지가 주요 관심사항이다. 무역원활화지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한 수정된 중력방정식을 추정함으로써 그 효과를 계산해보고자 한다.

APEC(2001), Staples(2002), OECD(2001, 2002), Wilson, Mann and Otsuki (2003, 2004), Wilson, Mann, Woo, Assanie and Choi(2002)에서는 무역원활화가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게 이득을 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

고 있으며, Wilson, Mann and Otsuki(2003, 2004)는 각 국가의 무역원활화 수준을 평가하여 세부 무역원활화 지수를 작성하고 기존의 중력방정식을 수정하여, 무역원활화의 무역증진효과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있다. 무역원활화 분야를 항구효율성, 통관환경, 규제환경, 그리고 서비스 섹터 인프라 분야로 세분화한 2004년 연구에 의하면 현재 무역원활화 수준이 국제평균 이하인 국가들이 그들의 수준과 국제평균간의 차이를 반으로 줄일 경우 전세계적으로 무역의 규모가 3,770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은 OECD 시장의 접근이 용이해져 OECD 국가들보다 높은 무역증진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2003년 연구에서는 항만 효율성, 세관환경, 규제환경, e-business 사용도 등 무역원활화의 지표를 사용하여 무역원활화의 효과를 추정하고 있는데 무역원활화가 APEC 국가의 1인당 GDP를 4.3%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기타 관련문헌에 대한 조사는 주 참고).¹³⁾

- 13)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추정에 대한 기존문헌을 방법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대체로 기업설문조사에 의한 효과추정, CGE 분석에 의한 방식, 그리고 중력방정식을 활용한 효과추정 방식으로 대별한다. Maskus, Wilson and Otsuki (2001)는 무역원활화 효과 추정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CANADA(1999)는 세관, 표준 및 규제의 조화, 사업 이동성(business mobility)의 상대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호주 외무부와 중국의 무역 및 경제협력부(Australi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d Chinese Ministry of Foreig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2001)의 연구에 의하면 전자서류화가 1.5~15%의 수입비용을 절감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CGE 모형을 활용하는 연구는 무역원활화의 개선정도를 국제교역에서의 비용 감소 또는 수송부문의 생산성 증진과 동등한 것으로 파악하여 모형화한다. 생산성 증가의 충격(대상국가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이 대상국 GDP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대체적 내용이다. UNCTAD(2001)는 해상 및 항공수송비용의 1% 삭감이 아시아 국가 GDP를 총 33억 달러 증가시키며, 도소매 거래 서비스까지 포함할 경우 추가적으로 36억 달러의 GDP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한다. APEC(1999)은 한국, 대만, 싱가포르의 1% 수입가격 하락과 개도국의 2% 하락이 APEC 제조업부문 역내교역을 3.3% 증가시키며, UR 의무사항을 이행할 경우는 역내교역을 7.9% 증가시킨다고 보고한다. Hertel, Walmsley and Itakura (2001)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 싱가포르간 e-business 및 관세 자동화 부문에서 표준의 조화를 시도할 경우 양국간 교역은 물론 여타 세계와의 교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Wilson, Mann and Otsuki의 경우 무역원활화 세부지표를 작성하여 분야별 무역증진효과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풍부히 하고 있으나, 횡단면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계수 해석상의 통계적 어려움과 함께 다공선성에 따른 식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무역원활화 단일지수를 작성하여 사용함과 동시에 1997~2002년 기간 중 패널분석으로 통계적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무역원활화의 효과를 계측하고자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거의 같은 방식과 아이디어로 중력방정식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등 Wilson, Mann and Otsuki의 접근방법을 답습했음을 따랐다.

가. 무역원활화 데이터

일반적으로 무역원활화는 항만을 통한 재화의 이동 및 국제무역 관련 서류 이동에 있어서의 효율성 증진, 세관 및 규제 환경의 투명성 증가, 표준의 조화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WTO DDA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역원활화 내용은 이를 보다 구체화, 단순화하여 GATT 규정 5조(통과의 자유),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통과화물을 포함하는 상품의 이동·출하·통관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정을 수립하고, 세관당국간 협력을 강화하

다음으로 중력방정식으로 무역원활화의 효과를 추정하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reund and Weinhold(2000)는 e-commerce가 양국간 교역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는데 1998, 1999년 일국의 상대 web host수의 10% 증가가 일본과 양국간의 교역을 1% 증가시키고 있다. Fink, Mattoo and Neagu(mimeo)는 통신비용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 추정에 대한 연구에서 10%의 전화요금 하락이 8%의 교역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한다. 이밖에도 Moenius(2000)는 표준의 조화가 무역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Otsuki, Wilson and Sewadeh(2001a, 2001b)도 식량안전기준(food safety standards)의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즉 EU의 아플라톡신 오염(aflatoxin contamination, 아플라톡신은 쌀 또는 땅콩의 곰팡이가 내는 발암성독소를 말한다) 수준에 대한 규제를 10% 증가시킬 경우 아프리카 곡물수출이 4.3%, 견과류의 수출이 11% 하락한다고 보고하였다.

는 것이 무역원활화 협상의 목적이다. 본 장에서는 세관행정 및 절차의 효율성, 항만 및 세관 비용 절감(규제환경)을 보여주는 관련지표를 사용하여 단일의 무역원활화 지수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여 무역원활화의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능력배양 및 기술지원 사업의 타당성 및 현실적 가능성을 검증해본다.

본 절에서는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의 설문조사 중 무역원활화와 관련되는 항목을 추출하여 단순 평균하여 단일 무역원활화 지표를 생성하였다.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세관 효율성과 관련된 지표로는 비정규적 지불(irregular payments), 암묵적 무역장벽(hidden import barriers), 그리고 관료주의(bureaucracy)를 거론할 수 있으며, 기타지표로 항만의 효율성(port efficiency)과 E-commerce 지표를 채택하였다.

첫째로 비정규적 지불 항목의 설문내용은 수출입 허가와 관련하여 기업의 비정규적인 추가지불의 정도로, 거의 없는 경우가 7점, 상당히 그럴 경우 1점을 부과하고 있다. 암묵적 무역장벽 항목의 내용은 관세 및 쿼터 이외의 숨겨진 무역장벽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에 대한 답변으로, 중요하지 않을 경우 7점,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경우 1점을 부과하고 있다. 세관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지표로 관료주의 항목이 있는데 회사 경영진이 공무원과 협상하고 거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정도로 행정의 투명성을 지표화한다. 다음으로 항만의 효율성은 항만시설 인프라 스트럭처의 발전정도를 묻는 항목으로 세계 최고수준일 경우 7점, 발전정도가 낮아졌을 때 1점이다. 마지막으로 e-commerce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2001~02년을 제외하고는 이 항목이 조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인구 1만명당 인터넷 사용자로 기타 연도 수치를 사용하였다(부표 1-2 참고).

무역원활화 단일지표를 구성할 때 설문 측정치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각국의 평점을 40~50개 국가의 평균치로 나눈 값을 이용하였다. 즉

j국의 각 무역원활화 세부지표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AdjIndex_j = RawIndex_j / (\sum RawIndex_j / n)$$

수정한 각 세부지표의 2002년 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 3-1>이다.

이후 각 세부지표의 단순평균을 구하여 무역단일화지표를 구성하였다. 두 가지 방식으로 단일지표를 구성했는데 첫 번째는 비정규적 지불, 숨겨진 무역장벽, 항만의 효율성, E-commerce 지표의 단순평균(FACI1)이다. FACI1의 경우 E-commerce 지표의 편차가 유독 커서 이에 의한 영향력이 큰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정규적 지불, 숨겨진 무역장벽, 항만 효율성 세 가지 지표만 사용하여 FACI2의 무역원활화 단일지표를 구성하였다. FACI1, FACI2 중 어떠한 지표를 사용하여도 중력방정식 추정결과는 유사하였으나 후자의 경우 더 나은 결과를 얻었다.

〈표 3-1〉 무역원활화 세부지표(2002)

	단일지표	비정규적지불	숨겨진무역장벽	항만효율성	E-commerce
ARGENTINA	0.80083	0.738523	0.826105	0.837862	0.502062
AUSTRALIA	1.291535	1.297405	1.218505	1.358696	1.915008
AUSTRIA	1.123958	1.177645	1.197852	0.996377	1.834768
BANGLADESH	0.580026	0.459082	0.805452	0.475543	0.006724
BRAZIL	0.844747	0.878244	0.908715	0.747283	0.368478
CANADA	1.202992	1.157685	1.115242	1.336051	2.169177
CHINA,P.R.	0.887324	0.998004	0.826105	0.837862	0.206204
CHINA, HONG KONG	1.344171	1.257485	1.280463	1.494565	1.931594
COLOMBIA	0.818061	0.998004	0.86741	0.588768	0.205308
DENMARK	1.384322	1.357285	1.301115	1.494565	2.085351
EGYPT	0.841848	0.878244	0.764147	0.883152	0.102654
FINLAND	1.369918	1.297405	1.363073	1.449275	2.281244
FRANCE	1.215866	1.177645	1.156547	1.313406	1.40667
GERMANY	1.29422	1.237525	1.218505	1.42663	1.899319
GHANA	0.762627	0.778443	0.7848	0.724638	0.008517
GREECE	1.029426	1.017964	1.073936	0.996377	0.693473
GUATEMALA	0.710222	0.798403	0.743494	0.588768	0.149274
HONDURAS	0.717612	0.618762	0.764147	0.769928	0.133584
INDIA	0.790394	0.758483	0.888063	0.724638	0.071275
INDONESIA	0.759756	0.718563	0.722842	0.837862	0.168998
IRELAND	1.033811	1.197605	1.156547	0.747283	1.214363
ITALY	0.995697	0.958084	1.032631	0.996377	1.34974
JAPAN	1.076623	1.197605	0.764147	1.268116	2.01049
KENYA	0.692947	0.678643	0.743494	0.656703	0.071723
KOREA	1.0829	1.077844	0.970673	1.200181	2.474
MEXICO	0.871822	0.918164	0.950021	0.747283	0.205308
MOROCCO	0.773524	0.718563	0.764147	0.837862	0.075758
NETHERLANDS	1.310212	1.217565	1.218505	1.494565	2.377622
NEW ZEALAND	1.318177	1.317365	1.301115	1.336051	2.171418
PERU	0.829837	0.998004	0.970673	0.520833	0.343375
PHILIPPINES	0.615054	0.578842	0.722842	0.543478	0.196342
POLAND	0.87471	0.898204	0.888063	0.837862	0.441097
PORTUGAL	1.111546	1.117764	1.197852	1.019022	1.593599
SINGAPORE	1.379228	1.317365	1.280463	1.539855	2.419311
SPAIN	1.132373	1.217565	1.115242	1.064312	0.865609
SRI LANKA	0.815927	0.738523	0.826105	0.883152	0.047517
SWEDEN	1.319072	1.297405	1.301115	1.358696	2.569034
SWITZERLAND	1.181429	1.257485	1.1772	1.109601	1.462256
THAILAND	0.928674	0.858283	0.908715	1.019022	0.347857
TURKEY	0.807945	0.718563	0.86741	0.837862	0.32634
UNITED KINGDOM	1.210525	1.237525	1.239157	1.154891	1.820871
UNITED STATES	1.196541	1.177645	1.053284	1.358696	2.40945
VENEZUELA, REP.	0.659623	0.698603	0.578273	0.701993	0.225928

주: 50개국 각 지표의 평균값은 1임.

나. 추정방정식¹⁴⁾ 및 실증분석 결과

T_{ij} , $FACI_{ij}$ 가 각각 수출액(또는 수입액) 및 무역원활화 지수이고, GDP_i 및 $PCGDP_i$ 가 i 국의 GDP 및 1인당 GDP이며, $Distance_{ij}$ 는 양국간 거리이며, $Border_{ij}$, $Language_{ij}$, $Block_k$ 은 각각 국경 더미변수, 언어 더미변수 및 FTA 더미 변수(EU, NAFTA, MERCOSUR, ASEAN)라 할 때, 무역원활화의 무역증진효과 계측을 위한 본고의 추정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997~2002 기간 중 40개 국 상호간의 수출입통계(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는데 무역데이터는 IMF의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에서, GDP 데이터는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서 구하였다. 무역원활화 자료에 대한 설명은 전술한 바와 같다.

$$\begin{aligned} \log(T_{ij}) = & \alpha + \beta_1 \log GDP_i + \beta_2 \log GDP_j + \beta_3 \log PCGDP_i \\ & + \beta_4 \log PCGDP_j + \beta_5 \log (DISTANCE_{ij}) + \beta_6 \log FACI_{ij} \\ & + \beta_7 (ADJACENT_{ij}) + \beta_8 (LANGUAGE_{ij}) + \gamma_k \sum_k BLOC_k + \varepsilon_{ijt} \end{aligned}$$

중력방정식 추정에 앞서 수출, 거리변수, GDP, 1인당 GDP, 국경변수, 언어더미, FTA 더미(EU, NAFTA, ASEAN, MERCOSUR)의 상관계수 행렬

14) 고전적 형태의 중력방정식에서는 경제적, 지리적,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여 양국간 교역규모의 표준적 형태(normal pattern)를 설정하고, 양국간의 교역이 이 적정 규모를 넘어설 경우 양국간 교역에 역내무역편중(intra-regional trade bias)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Frankel, 1997). 이러한 고전적 형태의 중력방정식을 확장하여 FTA의 효과 및 무역원활화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Frankel(1997)과 Rose(1999)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내무역편중을 포착할 수 있는 FTA 더미변수를 중력방정식의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양국간 교역규모의 표준적 형태 및 새로이 추가된 설명변수가 교역패턴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중력방정식을 확장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Wilson, Martin and Otsuli(2003, 2004) 등은 이렇게 수정된 중력방정식을 다시 확장하여 무역원활화의 효과를 파악하고 있다. 즉 무역원활화 지수를 다시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양국간 교역규모의 표준적 형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다.

을 구한 결과를 <부표 1-3>에서 정리하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무역원활화 지수가 수출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FACI1, FACI2 각각과 수출의 상관계수는 1997~2002 기간 중 각각 0.235와 0.230).

1997~2002 기간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시도했다. Pooled OLS, Fixed effect 그리고 Random effect 방식 등 세 가지로 추정했는데 Random effect 추정식을 기본 방정식으로 채택했다. 무역원활화 개선의 수출·수입 증대효과를 계산하기 위하여 수출함수와 수입함수를 모두 추정했는데, 먼저 수출함수를 추정하고 모의실험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입함수의 무역원활화 지수의 계수가 수출함수 계수와 같다는 제약하에서 수입함수를 추정하였다.¹⁵⁾

50국의 6개년 패널자료로 모든 국가에 대하여 무역원활화의 효과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 및 선진국으로 G-7 국가(미국,

15) 심의위원 지적 중에 (1) 단일지표 구성항목 중 비정규적 지불, 암묵적 수입장벽(2개년도는 무역장벽) 등은 주로 수입에만 나타나는 항목으로서 수출과 관련한 계수 수정에 있어서는 배제되어야 하고, (2) 수출과 수입방정식 추정시 차별적인 단일지표를 구성해야 하며, (3) 이에 따라 모의실험 결과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동일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타당하지 않는다. (1) i국의 j국으로의 수출이므로 수출함수 추정시 j국의 비정규적 지불 및 암묵적 수입장벽을 단일지표 구성항목에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 (2) 전세계 각국의 무역구조의 패턴 및 무역원활화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중력방정식 속성상 수출함수 및 수입함수 하나만을 추정하면 되지 두 가지를 동시에 추정할 필요가 없다(일국의 세계 각국과의 무역을 다루는 1국분석의 경우는 수출과 수입의 결정요인이 차별적이기 때문에 따로 추정하는 것이 맞다). 여기서 무역원활화 지수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수입함수에서도 동일하다고 가정한 것은 1국분석이 아닌 다국분석에 있어서는 자연스런 가정이다. 1국에서의 수출, 수입의 결정요인은 차별적이지만, 세계(50개 국의 나머지 49개 국가의 양자간 교역을 분석)에서의 수출 및 수입에서의 표준적 패턴을 결정하는 요인은 동일하기 때문이다(수출=수입). 여기서 불필요한 수입함수를 굳이 추정한 것은 단지 모의실험상 수입과 수출이 갖는 항등식의 기계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세계 교역패턴의 결정요인을 찾고자 한 것이 아니다. (3) 따라서 50×50 분석에서 수출과 수입이 유사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이유는 국가간 차별성 및 간접적인 유발효과 때문이다.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를, 무역원활화에 주저하는 개도국으로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브라질, 페루, 베네수엘라, 이집트 등 8국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총 16개국의 결과만을 정리하고 있다.

이 방정식에 의해 추정된(Random effect) 무역원활화 지수의 계수는 0.326(1% 유의수준 아래서 통계적으로 유의)으로, 10% 무역원활화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전세계 교역량이 3.6% 증가함을 의미한다. 무역자유화(관세율)의 계수가 1.2 정도임을 고려할 때(Wilson, Mann and Otsuki, 2003 · 2004; Park and Kim, 2004) 무역원활화가 무역자유화보다 3배 정도 세계 교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어 무역원활화의 규범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3.6이라는 무역원활화 추정계수는 Wilson, Mann and Otsuki는 물론 자체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Park and Kim과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 접근하여 실증결과 및 정책실험의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한다. 정리하면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수익은 대단히 커서 일단 앞에서 설명한 3가지 경우 중 방향 2 선진국의 개도국 무역원활화 지원의 경제적 유인이 낮고 개도국도 자체부담할 유인이 없어 규범화의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전망)의 가능성은 일단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 무역원활화 추정 방정식

	수 출	수 입
Constant	29.632** (25.071)	-29.592** (-32.316)
Log(GDPi)	0.626** (21.739)	0.873** (38.815)
Log(GDPj)	0.798** (25.925)	0.537** (22.206)
Log(Per Capita GDPi)	0.381** (10.099)	0.169** (5.859)
Log(Per Capita GDPj)	0.174** (4.222)	0.361** (12.259)
Log(Distance)	0.871* (-12.135)	-0.787** (-14.364)
Log(무역원활화지수)	0.361** (3.997)	0.361** (0.000)
Border	0.433* (1.280)	0.396 (1.545)
Language	0.842** (6.096)	0.784** (7.479)
EU	-0.155 (-0.675)	-0.227 (-1.293)
NAFTA	0.653 (0.640)	1.026 (1.319)
AFTA(ASEAN)	1.662** (3.016)	1.325** (3.075)
MERCOSUR	0.266 (0.254)	0.305 (0.382)
Adj R2	0.972	0.704922
No. of Observation	11960	12259

주: 1) 무역원활화지수의 계수가 수출함수에서의 계수와 같다는 제약조건하에서 수입 방정식을 추정하였다.

2) () 내는 t 통계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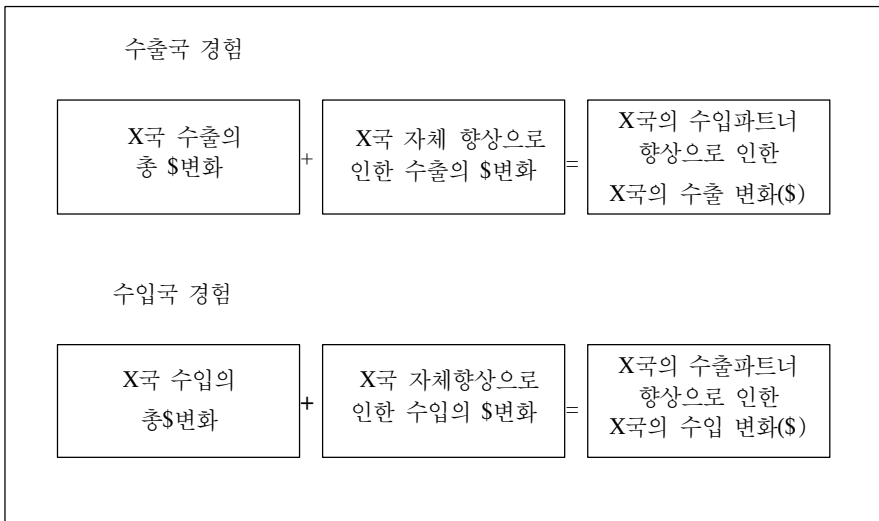
다음 두 번째 쟁점인 무역원활화 효과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비대칭적으로, 즉 선진국에게만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무역원활화에 대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교역량 변화를 16개국에 한하여 정리한다.

- 시나리오 1: 무역원활화 지수가 평균이하인 국가가 평균수준으로 개선
- 시나리오 2: 무역원활화 지수가 평균이하인 국가가 현 수준의 50% 개선

- 시나리오 3: 평균이하 국가는 50% 개선하고 평균이상 국가는 20% 개선
- 시나리오 4: 모든 국가가 20% 개선
- 시나리오 5: 모든 국가가 50% 개선

각 정책실험에 따른 교역증대액은 Wilson, Mann and Otsuki를 따라서 <그림 3-1>과 같이 계산하였다. 즉 A국의 무역원활화 수준이 개선되면 추정방정식에 따라 A국의 수출과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직접효과). A국의 수출(수입) 증가액은 결국 A를 제외한 세계 각국의 수입(수출) 증가액과 동일할 것이다. 따라서 B국의 수출증가액은 B국 무역원활화 수준의 개선에 따른 직접적 증가액에 B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B국에 대한 수입증가액(유발된 수출액)을 더한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B국의 수입증가액은 직접효과에 따른 수입증가액에 세계 각국의 수출증가액에 따라 B국에 유발된 수입증가액의 합계와 같다.

〈그림 3-1〉 모의실험 분석: 무역원활화 개선의 교역증대 효과



시나리오 1(무역원활화 지수가 평균이하인 국가가 평균수준으로 개선)의 정책실험결과를 보면 선진국의 경우 연평균 0.8%의 수출입 증대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반해, 개도국의 경우 수출을 1.9%, 수입을 1.8% 증대시키고 있다. <표 3-3>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개도국의 경우 무역원활화의 수준이 평균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선진국의 경우 평균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당연한 결과이다. 무역원활화 지수가 평균이하인 국가가 현 수준의 50% 개선하는 시나리오 2의 경우는 선진국의 수출 및 수입이 연 1.6% 증가하나 개도국의 수출 및 수입은 각각 4.1%, 4% 증가하고 있다. 무역원활화 수준이 평균이하인 국가는 50% 개선하고 평균이상 국가는 20%를 개선하는 시나리오 3의 경우는 선진국의 수출 및 수입이 각각 8.1%, 8.0% 증가하는, 개도국의 수출 및 수입은 각각 9.6%, 9.3%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국가의 무역원활화 수준을 20% 및 50% 개선하는 시나리오 4, 5의 경우에는 개도국의 교역증대 정도가 선진국의 교역증가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앞의 시나리오와 달리 시나리오 4, 5에서 선진국, 개도국간 교역증가율이 동일한 것은 현 무역원활화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개선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표 3-3〉 무역원활화의 효과: 시나리오 1

	수 출	수출 증가	유발 수출	총수출 증가	증가율	수 입	수입 증가	유발 수입	총수입 증가	증가율
한 국	126,301	1,794	63	1,858	1.5	107,532	1,270	66	1,336	1.2
개도국	48,319	1,203	32	764	1.9	40,961	607	20	628	1.8
선진국	344,013	2,979	122	3,100	0.8	368,049	2,662	128	2,790	0.8
인 도	27,624	4,094	15	348	1.3	33,380	375	12	386	1.2
인도네시아	48,459	923	32	955	2.0	26,491	426	17	443	1.7
이집트	3,221	38	2	40	1.2	12,953	142	6	148	1.1
필리핀	29,706	505	18	523	1.8	27,525	379	22	401	1.5
중 국	208,851	2,466	150	2,616	1.3	152,864	1,743	77	1,819	1.2
페 루	5,944	171	3	174	2.9	7,504	214	3	217	2.9
베네수엘라	17,408	405	13	418	2.4	13,146	305	6	312	2.4
브라질	45,339	1,019	19	1,038	2.3	53,828	1,277	19	1,297	2.4
미 국	636,876	5,083	213	5,296	0.8	965,378	6,649	373	7,022	0.7
캐나다	237,712	268	152	421	0.2	222,065	368	102	470	0.2
영 국	235,289	1,152	66	1,218	0.5	276,929	1,379	90	1,469	0.5
독 일	465,211	3,157	121	3,279	0.7	390,445	2,430	97	2,526	0.6
프랑스	265,910	1,215	86	1,301	0.5	264,842	1,196	82	1,278	0.5
이탈리아	201,143	1,348	57	1,405	0.7	186,372	1,278	50	1,328	0.7
일 본	365,948	8,629	157	8,785	2.4	270,310	5,333	106	5,439	2.0

〈표 3-4〉 무역원활화의 효과: 시나리오 2

	수 출	수출증가	유발 수출	총수출 증가	증가 율	수 입	수입 증가	유발 수입	총수입 증가	증가율
한 국	126,301	4,304	105	4,410	3.5	107,532	3,187	71	3,259	3.0
개도국	48,319	2,681	47	1,835	4.1	40,961	1,494	27	1,521	4.0
선진국	344,013	200,301	251	6,014	1.6	368,049	5,728	227	5,954	1.6
인 도	27,624	7,908	29	792	2.9	33,380	895	21	916	2.7
인도네시아	48,459	2,242	37	2,279	4.7	26,491	1,069	19	1088	4.1
이집트	3,221	108	4	112	3.5	12,953	417	13	430	3.3
필리핀	29,706	1,112	26	1,139	3.8	27,525	913	23	936	3.4
중 국	208,851	6,760	207	6,967	3.3	152,864	4,805	85	4,890	3.2
페 루	5,944	317	6	323	5.4	7,504	406	5	412	5.5
베네수엘라	17,408	737	28	765	4.4	13,146	581	12	593	4.5
브라질	45,339	2,267	37	2,304	5.1	53,828	2,866	37	2,903	5.4
미 국	636,876	11,117	321	11,438	1.8	965,378	14,821	460	15,280	1.6
캐나다	237,712	593	320	914	0.4	222,065	833	204	1037	0.5
영 국	235,289	3,145	145	3,289	1.4	276,929	3,788	178	3,967	1.4
독 일	465,211	8,617	267	8,884	1.9	390,445	6,539	182	6,721	1.7
프랑스	265,910	4,216	197	4,413	1.7	264,842	3,979	185	4,164	1.6
이탈리아	201,143	2,902	130	3,032	1.5	186,372	2,870	118	2,989	1.6
일 본	365,948	137,1517	375	10,126	2.8	270,310	7,265	258	7,523	2.8

〈표 3-5〉 무역원활화의 효과: 시나리오 3

	수 출	수출증가	유발 수출	총수출 증가	증가율	수 입	수입 증가	유발 수입	총수입 증가	증가율
한 국	126,301	11,058	427	11,485	9.1	107,532	9,144	252	9,396	8.7
개도국	48,319	8471	215	4,527	9.6	40,961	3,642	97	3,740	9.3
선진국	344,013	854,506	1,178	27,893	8.1	368,049	28,333	991	29,324	8.0
인 도	27,624	35,596	129	2,449	8.9	33,380	2,785	77	2,862	8.6
인도네시아	48,459	4,579	151	4,730	9.8	26,491	2,414	64	2,478	9.4
이집트	3,221	281	19	300	9.3	12,953	1,120	52	1,172	9.0
필리핀	29,706	2,658	124	2,782	9.4	27,525	2,396	80	2,476	9.0
중 국	208,851	18,083	983	19,066	9.1	152,864	13,154	290	13,444	8.8
페 루	5,944	585	24	609	10.3	7,504	743	18	761	10.1
베네수엘라	17,408	1,606	125	1731	9.9	13,146	1,226	48	1,274	9.7
브라질	45,339	4,380	167	4,547	10.0	53,828	5,299	152	5,451	10.1
미 국	636,876	49,744	1,621	51,365	8.1	965,378	74,249	2,286	76,535	7.9
캐나다	237,712	16,546	1,566	18,112	7.6	222,065	15,615	888	16,503	7.4
영 국	235,289	17,831	681	18,512	7.9	276,929	21,036	748	21,784	7.9
독 일	465,211	36,618	1,235	37,853	8.1	390,445	30,339	807	31,146	8.0
프랑스	265,910	20,527	959	21,486	8.1	264,842	20,320	857	21,177	8.0
이탈리아	201,143	15,364	593	15,957	7.9	186,372	14,339	500	14,839	8.0
일 본	365,948	5,824,911	1,592	31,965	8.7	270,310	22,436	850	23,286	8.6

〈표 3-6〉 무역원활화의 효과: 시나리오 4

	수 출	수출증가	유발 수출	총수출 증가	증가 율	수 입	수입 증가	유발 수입	총수입 증가	증가율
한 국	126,301	8,612	367	8,979	7.1	107,532	7,332	212	7,544	7.0
개도국	48,319	6,947	188	3,483	7.2	40,961	2,793	82	2,875	7.1
선진국	344,013	740,642	1,035	24,492	7.1	368,049	25,095	862	25,957	7.1
인 도	27,624	31,101	113	1,996	7.2	33,380	2,276	65	2,341	7.0
인도네시아	48,459	3,304	130	3,434	7.1	26,491	1,806	53	1,859	7.0
이집트	3,221	220	17	236	7.3	12,953	883	44	927	7.2
필리핀	29,706	2,026	109	2,134	7.2	27,525	1,877	67	1944	7.1
중 국	208,851	14,240	865	15,105	7.2	152,864	10,423	241	10,664	7.0
페 루	5,944	405	21	426	7.2	7,504	512	15	527	7.0
베네수엘라	17,408	1,187	109	1,296	7.4	13,146	896	41	938	7.1
브라질	45,339	3,091	146	3,237	7.1	53,828	3,670	131	3,801	7.1
미 국	636,876	43,425	1,438	44,863	7.0	965,378	65,824	2,025	67,849	7.0
캐나다	237,712	16,208	1,384	17,592	7.4	222,065	15,141	772	15,914	7.2
영 국	235,289	16,043	599	16,642	7.1	276,929	18,882	646	19,529	7.1
독 일	465,211	31,720	1,083	32,803	7.1	390,445	26,622	704	27,326	7.0
프랑스	265,910	18,131	847	18,978	7.1	264,842	18,058	752	18,810	7.1
이탈리아	201,143	13,715	519	14,234	7.1	186,372	12,708	433	13,140	7.1
일 본	365,948	5,045,251	1,379	26,331	7.2	270,310	18,431	703	19,134	7.1

〈표 3-7〉 무역원활화의 효과: 시나리오 5

	수 출	수출 증가	유발 수출 증가	총수출 증가	증가율	수 입	수입 증가	유발 수입 증가	총수입 증가	증가율
한 국	126,301	19,955	1,007	20,962	16.6	107,532	16,989	735	17,724	16.5
개도국	48,319	16,886	529	8,163	16.9	40,961	6,472	251	6,723	16.5
선진국	344,013	54,352	2,547	56,899	16.6	368,049	58,150	2,244	60,394	16.4
인 도	27,624	78,381	284	4,648	16.8	33,380	5,274	171	5,445	16.3
인도네시아	48,459	7,656	437	8,093	16.7	26,491	4,185	187	4,373	16.5
이집트	3,221	509	39	548	17.0	12,953	2,047	110	2,157	16.6
필리핀	29,706	4,693	308	5,002	16.8	27,525	4,349	240	4,588	16.7
중 국	208,851	32,997	2,487	35,485	17.0	152,864	24,152	832	24,984	16.3
페 루	5,944	939	52	991	16.7	7,504	1,186	38	1,224	16.3
베네수엘라	17,408	2,750	255	3,005	17.3	13,146	2,077	101	2,178	16.6
브라질	45,339	7,163	367	7530	16.6	53,828	8,505	327	8,832	16.4
미 국	636,876	100,623	3,994	104,617	16.4	965,378	152,525	5,932	158,456	16.4
캐나다	237,712	37,557	3,286	40,843	17.2	222,065	35,085	1,856	36,941	16.6
영 국	235,289	37,174	1,448	38,623	16.4	276,929	43,753	1,632	45,385	16.4
독 일	465,211	73,501	2,627	76,128	16.4	390,445	61,688	1,804	63,493	16.3
프랑스	265,910	42,012	2,022	44,035	16.6	264,842	41,844	1806	43,650	16.5
이탈리아	201,143	31,780	1,256	33,035	16.4	186,372	29,446	1,049	30,494	16.4
일 본	365,948	57,818	3,195	61,012	16.7	270,310	42,707	1,629	44,336	16.4

이와 같은 정책모의실험 결과는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가 선진국에 집중되기 때문에 선진국이 개도국에서의 무역원활화 투자를 부담한 후 경제적 이득을 향유하라는 방향 2의 논리가 실증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현 무역원활화 수준이 낮은 개도국이 무역원활화 개선의 결과 더 많은 교역증대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도국 또한 무역원활화를 위한 투자를 자체부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며,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은 일반적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을 차별화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우선적으로 최빈개도국에 초점이 맞추어 다자적 차원에서 기금 또는 프로젝트 형태로 기술지원 및 역량배양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일반 개도국에 대해서는 양자적 차원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개도국의 물적, 인적자원을(유상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DDA 협상과 그 구성요소로서의 무역원활화

앞 절에서는 무역원활화 한 가지 쟁점의 관점에서 개도국의 지원에 대한 논리적 방향을 도출했다. 그러나 WTO/DDA 협상은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협상으로 여러 가지 농산물, 비농산물, 규범 등 여러 협상의 제들이 다양한 그룹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호 조정되면서 합의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무역원활화 의제는 DDA의 전반적 쟁점과 연결되어 선진국, 개도국간 이해조정의 의제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아 개도국 지원방향에 대한 무역원활화 의제 자체의 논리를 넘어서게 된다. 사실 개도국은 DDA의 총괄 전략적, 즉 농업협상, 서비스협상 등 도하라운드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든 이슈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전략차원에서 무역원활화에 소극적인 입장을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절은 GATT의 개별 조항에 따르는 문제보다는 개도국의 입장에서 도하라운드를 포괄적으로 고려할 때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한다.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 전후부터 개도국들은 WTO 다자 통상협상에서 대체로 공격적인 입장을 취한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개도국들이 시장자유화로부터 얻은 이득이 예상보다는 낮았고, UR에서 선진국이 개도국들에게 요구한 사항들이 예상보다 실행하기 어려워 개도국들의 경제적 부담 및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컸으므로 개도국들은 뉴라운드에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이며 공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개도국들의 주장에 의하면 UR에서는 선진국들을 위해서 지적재산권을 강화시키는 TRIPS 협정을 설립하고, 개도국을 위해서 섬유 및 의류 등 노동집약적 공산품과 개도국들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다는 대협 의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공산품과 농산품에 대한 선진국의 시장개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농산품에 대한 보조금이 개도국들의 농산품 수출을 막고 있다. 반면 지적재산권은 WTO보다 다른 전문 국제기구들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은 TRIPS 협정을 강요하였

으며, TRIPS 협정을 사용하여 지적재산권의 확산을 제한 개도국들의 개발을 저하시키고, 있고, 개도국들이 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여 AIDS나 결핵병 등 전염병의 치료를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도국들이 UR 협정을 도입할 유예기간을 너무 짧게 잡아 개도국들에게 무리한 변화를 요구한다고 주장하였다.¹⁶⁾

따라서 개도국들은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 전후부터 농산물 시장개방이나 공산품 시장개방 등 기존 WTO 이슈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시장개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개도국들의 수출을 막는 선진국의 반덤핑제나 보조금제도를 약화시키며, UR에서 규정한 유예기간을 늘리면서 개도국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 개도국들의 협상전략을 논의하는 다수의 논문들에는, 뉴라운드에서 개도국들은 그들이 비교우위를 가지지만 선진국이 아직 높은 시장장벽을 유지하고 있는 경공업제품이나 농산물 시장개방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을 반복하고 있다.¹⁷⁾ 선진국이 협상을 원하는 새로운 쟁점들, 즉 노동기준과 환경기준, 싱가포르 이슈(무역원활화,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에 있어서는 협상을 배제하는 소극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 신의

16) 개도국들의 입장은 Panagariya(1999), Rodrik(2002), Srinivasan (1999), Srinivasan (2003) UNCTAD(2003) Krueger(1999) 등을 참고. Rose(2002)에서는 중력모형을 근거로 WTO가 세계교역량 증가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오히려 선진국의 GSP 제도가 더욱 큰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반박하는 Subramanian and Wei(2003)에서는 역시 중력모형을 근거로 WTO가 세계교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단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무역량은 예상치보다 낮고, 농산품이나 경공업제품의 교역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ubramanian and Wei(2003)는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개도국들이 WTO를 통해 이득을 보며, 개도국들은 유예기간으로 시장개방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득이 낮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하였다.

17) 이 외로 개도국들이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GATS 협정의 일환인 노동자의 자유이동 문제가 제기된다. 개도국들은 대체로 유예기간의 연장을 추진하지만, Subramanian and Wei(2003)에서는 개도국들에 대한 유예기간 때문에 개도국들이 시장개방을 지연하고, 이에 따라 시장개방의 이익을 보지 못한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제들의 대부분은 개도국들이 불리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이 포함 되면 뉴라운드에서 개도국들의 협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계산도 여기에 포함된다.

선진국들은 개도국에 대해 비농산물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개도국은 농산물 시장개방 및 개도국 발전을 위한 차별적 적용을 요구해서 결국 DDA 협상은 농산물 및 비농산물의 개방 확대 및 개도국에 대한 S&D 대우를 근간으로 합의에 이를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역원활화 관련 개도국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고 무역원활화 단일의 제의 논리를 넘어 개도국의 이해를 제고하는 관점에서 개도국 지원의 내용이 결정될 것이다. 즉 DDA 협상 전체를 균형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경제논리가 제시하는 수준 이상으로 최빈개도국은 물론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개선사업에 선진국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은 다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 (1) 무역원활화로 선진국이 얻을 수 있는 절대적인 경제적 이득이 개도국 지원 부담액보다 크다면 전체 DDA 협상이 요구하는 바대로 개도국 지원에 나설 것이다.
- (2) 그렇지 않을 경우 무역원활화 협정문의 수준을 낮추는 방향의 규범화를 시도하면서 요구되는 개도국 지원부담을 경감시키는 전략을 채택할 것이다.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수준을 개선하는 DDA 협상과 일관된 특성을 갖는 시나리오 1, 2의 결과, 즉 <표 3-3>, <표 3-4>를 보면 사실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발생하는 선진국의 총 교역증진효과가 연 0.8~1.6% 수준에 머무른다. 이에 상당하는 개도국 지원을 부담할 경제적 유인이 없기 때문에 결국 무역원활화 협정문의 수준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무역원활화 규범화 논의가 진전될 것이다.

4. 정책적 시사점

2절 및 3절의 분석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전회원국이 참여하는 무역원활화의 10% 개선으로 전세계 교역량이 3.6%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무역자유화의 교역증대 효과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무역원활화 규범화의 경제적 유인이 분명히 존재한다. (2) 무역원활화로 각국이 향유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크기는 타국의 개선에 의해 유발되는 간접효과보다 자체적인 개선 정도(직접효과)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따라서 현재 무역원활화 수준이 낮은 개도국의 경우 무역원활화로 향유할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의 크기가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선진국보다 훨씬 크다. (3) 모의실험 결과 선진국만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개도국의 주장과 달리 무역원활화에 따른 교역증진효과가 비차별적으로 또는 개도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4) DDA의 포괄적 협상과정에서, 무역원활화 단일의제의 논리를 넘어 개도국의 이해를 제고하는 관점에서 선진국의 무역원활화 관련 개도국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요구가 제기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무역원활화의 전세계적 무역증진효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뿐 아니라 선진국, 개도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사업을 일부 지원하고 개도국도 비용을 자체 부담하면서 무역원활화를 규범화하는 것이 중국적인 해결책이 된다. 따라서 선진국은 최빈개도국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내용을 결정하려고 하나 DDA 협상이 갖는 포괄적 성격 때문에 개도국 지원이 강조되고 선진국이 이러한 DDA 협상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따라 다음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될 것이다. 첫째, 선진국 지원이 일반 개도국으로 확대되면서 무역원활화 협정도 높은 수준에서 타결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DDA 협상의 타과제에서 개도국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할때 최빈개

도국 지원에 초점을 유지하면서 낮은 수준의 무역원활화 협정을 타결할 것이다.

제4장 무역원활화의 쟁점 및 개도국의 입장

본 장에서는 DD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역원활화의 주요쟁점 및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개도국의 입장을 무역원활화 관련 조항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한다.¹⁸⁾ 편의상 투명성(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을 논의하는 GATT 10조를 논의한 후, 수출입절차 및 수수료를 논의하는 GATT 8조, 화물의 통과를 논의하는 GATT 5조를 논의하기로 한다. 각 절에서는 조항별로 주요 이슈를 언급하고 개도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검토한다.

1. GATT 10조

GATT 10조는 주로 규제 투명성 문제, 즉 무역관련 법령, 규제나 관행의 공표와 행정, 행정적 검토와 이의 해결 및 항소절차를 다루고 있다. WTO(2002a)에 의하면 GATT 10조는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 무역과 관련한 법령, 규제, 판정과 협약을 신속하게 접근이 유의한 방법을 통해 발표한다(1항).
- 법령, 규제, 판정과 협약의 발표 이전에 이를 집행하는 것을 삼가도록 한다(2항).
- 법령, 규제, 판정과 협약을 균등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집행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각 회원국은 관세나 통관절차에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나 재판소, 또는 재정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한다(3항).

18) 이 장의 일부 부분은 양준석(2004)을 인용하였다.

무역원활화 연구과정에서 여러 국가가 제안한 사항들은 이미 제2장에서 정리하였지만, 대체로 정보의 접근, 무역정책과 통관절차 법령 및 규제의 투명성, 사전판정(advanced ruling)의 도입, 법령 및 규정의 설립과정에서 피규제자들의 의사수집절차와 협의절차의 도입, 그리고 통관절차에 행정절차의 검토와 상소절차의 구체화 등으로 구분한다. <표 4-1>에서는 2003년 10월 칸쿤 각료회의 이전, 무역원활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이 제출한 제안서에서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한 정책제안들을 정리하였다. 아래에서는 GATT 10조에 관련한 제안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여기에 대해서 개도국들이 제기한 문제들, 또는 개도국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정보 접근 및 법령과 규제의 투명성

제안서에 포함된 제안사항의 대부분은 정보의 접근성에 관한 제안들이다. GATT 10조에서 요구하는 각종 요건들을 더욱 정확하게 정의하고, 10조에 관하여 분쟁해결절차의 패널과 상소기관이 판정한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협정문에 포함시키려는 제안들이 다수이다.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정보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제안도 많다. 일반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 판결문, 관세청이나 정부기관의 절차나 집행과정에 대한 정보, 통관절차의 형태를 다르게 하는 조건이나 요구사항(예를 들어 관세청과 일부 무역업자들과의 MOU, 인가된 무역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 등), 상소권리, 수수료, 항만이나 공항에서의 국경통과절차, 무역과 통상정책에 영향을 주는 모든 양자협정, 지역협정과 다자협정 등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이 정보를 찾기 쉽게 하는 각종 조치를 의무화한다는 제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일부 제안서는 법령이나 규제를 공표하고 발효하는 데 있어서 의무적으로 일정한 준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준비기

간을 통해 무역업자들은 새로운 법령이나 규제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법의 준수율이 증가하는 동시에 이에 따르는 기업의 비용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법령이나 규제의 투명화 제안에 있어서 개도국들의 이의가 그다지 크지는 않다. 각종 제안서에서 제시한 의무 중 일부는 교도협약(Kyoto Convention)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TBT 협정이나 SPS 협정 등 여타 WTO 협정에서도 비슷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TBT 협정 제2조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기술적 규제를 만들 때, 국제기준과 다르고 교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WTO 사무국을 통해 여타 회원국들에게 통보해야 하고, 여타 회원국들이 이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신속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사항일 경우 규제의 공표와 발효 사이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TBT 협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정부나 NGO가 설립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다소 약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제10조에는 여타 회원국들이 기술적 규제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정보창구의 설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SPS 협정 부록 B에서도 위생 및 보건 관련 규제에 대하여 비슷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통관절차에 대해서 이들과 유사한 규정을 설립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대다수의 개도국도 법령이나 규제의 투명화 조치에 대하여 큰 반발을 보이지 않는다. 개도국이 일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주로 공표해야 할 법령 및 규제의 범위이다. 단 법령만을 적용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규제, 행정명령, 관례까지도 적용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의가 있다. 적용대상이 넓을수록 국가의 부담이 커지고, 일부 국가의 경우 통관절차를 담당하는 부처간의 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 개도국은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출업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또한 GATT 10조에 관련된 분쟁해결절차의 판정문을 보면 공표해야 할 법령이나 규제, 행정명령과 관례 및 사법판결문의 범위가 나타나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판결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규제, 행정명령이나 관례, 사법판결문은 GATT 10조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분쟁해결절차의 판결결과를 성문화하는 것으로 무역원활화 협정이 충분할 것이다.

법령 및 규제의 준비기간 부여 사안도 그다지 큰 반발은 없을 것이다. TBT 협정이나 SPS 협정에서 기술이나 위생관련 규제에 대하여 이미 유사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준비기간의 단축 또는 생략을 허용하고 있다. 무역원활화 협정에서도 유사한 조건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TBT 협정이나 SPS 협정에서는 합리적인 준비기간의 길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합리적인 준비기간, 즉 규제의 공표와 발효사이의 기간을 1~3개월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정보를 알기 쉽게 공표하고, 설명할 의무도 논의하고 있다. 정보의 접근이 쉽고 무차별적인 방법을 통해 공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수수료나 요금은 정보제공 비용에 한정해야 한다. 대다수의 제안서들은 무역업자나 여타 회원국들이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단일정보창구의 설립을 의무화하자는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단일정보창구를 통해 통관절차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장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게 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개도국도 이 제안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지만, 소극적이다. 인적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역업체의 질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경우 관세청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관절차의 의무가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부처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일부국가는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부 선진국은 정보통신을 잘 활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개도국

을 설득하고 있다.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질문을 접수하고 적합한 부처에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통관절차 전반에 대한 포괄적 지식을 가진 인원이 필요하나, 개도국의 경우 이와 같은 인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법령이나 규제를 쉽게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개도국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회원국이 법령이나 규제를 쉽게 쓰면, 수출업체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쉽게’ 쓴다는 데에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각 회원국이 WTO 사무국에 정보발표 매체를 등록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WTO 사무국이 각 국가의 정보발표매체의 목록을 유지하여 홍보·배포하자는 것이다. 복수협정인 정부조달협정(GPA)은 가입국의 정부조달 관련법령 수정사항 발표매체를 WTO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이와 같이 무역원활화와 관련해서도 회원국의 통관절차 및 수수료, 화물 통과절차에 대한 법령, 규제, 관례 등의 변동사항을 발표하는 매체를 선정하고 WTO 사무국에 등록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제공비용 문제도 제시된다. 무역원활화 협정 추진국의 대다수가 정보제공 수수료를 무료 또는 정보제공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으로 한정하자고 주장한다. 원칙적으로 개도국도 이 제안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 특히 아직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공보 및 정기간행물을 통해 법령이나 규제의 변화를 통보하는 국가의 경우 정기간행물 구독비가 상당히 높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개도국은 법령이나 규제, 관례의 투명성에 대해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여타 WTO 협정에서 이미 유사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기존 WTO 협정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 한, 투명성 조치를 반대할 논리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개도국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투명성 의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인적

자원과 물적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이나 정보통신 활용을 의무화할 경우, 인프라 및 인프라 투자자금이 부족한 개도국에 커다란 부담이 된다고 주장한다.¹⁹⁾ 정보통신 하드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 부족도 문제이다. 따라서 2004년 8월 WTO 합의서의 Annex D에서도 무역원활화에 있어서 회원국에게 과도한 투자를 필요로 한 내용은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장에서 언급할 것이지만, 개도국의 이러한 상황이 한국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무역강국인 동시에 IT 강국이고, 통관절차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전자화를 실행하고 있으므로 통관절차의 전자화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국이 개도국들에게 IT 관련 지원을 강화하면 무역원활화 협상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수출 및 IT 위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 사전판정

사전판정(advanced ruling)이란 통관절차나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판정을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제출한 서류에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필요한 판정이란 통관분류항목에 대한 판정, 적용관세율 및 세율, 거쳐야 할 절차 등이다. WTO 원산지 규정에서는 원산지 판정에 있어서 사전판정을 이미 의무화하고 있다. 즉, 회원국의 관세청은 물품이 국경에 도착하기 전, 서류를 통해 미리 제출한 정보를 근거로 원산지 판정을 해야 한다. 무역원활화 제안서에서는 관세항목, 관세나 수수료의 계산, 수입 라이선스 절차에 있어서 사전판정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제출되었다.

사전판정 제도는 무역업체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시켜주고, 판정을 기다리는 데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낭비나 비용을 감소한다. 사전판정 제도

19) 필리핀.

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의 유효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사전판정이 현장에서 반복될 수 없어야 한다. 물론 무역업체가 고의적으로 거짓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전판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사전판정을 위해 제출한 정보와 그 결과에 대한 비밀보장에 대해서는 제출서간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 한 제안서에서는 같은 물품을 다루는 다른 업체들이 이미 결정된 사전판정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사전판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 제안서에서는 사전판정을 위해 제출된 정보는 기업의 비밀이 될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전판정에 대하여 개도국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사전판정을 위해서는 서류를 검토하고 올바른 판정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사전판정을 위해 확고하고 일관적인 법령 및 규제체제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점이 개도국들의 애로사항이 될 것이다.

다. 의견수집과 협의절차의 도입

규제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어서²⁰⁾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는 규제당국과 피규제자들이 서로 견해를 교환하고, 규제의 설계와 도입과정에 있어서 피규제자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수집과 협의절차로 피규제자 또는 이해당사자들은 새로운 규제의 도입 또는 기존 규제의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를 받게 된다. 규제의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피규제자들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탐색할 기회를 준다. 따라서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 동시에 피규제자들의 규제순응비용을 감소시키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통관절차에 관련된 규제에도 역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규제당국과 피규제자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간의 의견교환에 가장 효율적인

20) 규제투명성 보고서 인용.

방법은 공식적인 의견수집절차와 협의절차를 도입하는 것이다. GATT 10조에서는 비록 이러한 의견수집절차나 협의절차를 의무화시키지는 않지만, TBT 협정이나 SPS 협정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여타 회원국이 새로 도입하는 기술적 또는 위생 규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공식적인 의견수집절차와 협의절차를 도입하라는 것은 TBT 협정이나 SPS 협정에서 요구하는 의무보다 한층 더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OECD는 최근 시장개방관련 규제의 투명성에 있어서 의견수집절차와 협의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²¹⁾

GATT 10조 관련 제안서들의 대다수는 이러한 협의절차와 의견수집절차의 도입을 권장하였으나, 절차의 형태는 제안서마다 다소 틀리다. 한 제안서는 WCO 교도협약의 규정을 그대로 WTO 차원에서 도입하자고 제안하였고, 또 한 제안서는 국회나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무역관련 법령의 초안을 관보를 통해 공표하게 하고, 법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외의 수출입업자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를 주자고 주장한다. 이 제안서는 이 의견수집과정에서 법령이나 규제의 영향과 득실을 계산한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의 작성과 공개도 의무화하자고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법령이나 규제에 대한 의견수집절차의 도입과 규제영향분석의 활용은 규제개혁 및 규제투명성 제고조치로 여러 국가들이 활용하고 있다.²²⁾

여타 회원국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개도국이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TBT 협정이나 SPS 협정에 이미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의견수집절차와 협의절차를 도입하라는 의무에 대해서는 다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들이 국내법령이나 규제의 설립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주권침해라고 생각하는 회원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에서 요구할

21) OECD.

22) 김진국, 김태운, 양준석(2002).

수 있는 것은 여타 회원국들이 그들의 의견이나 견해를 제출하는 것이지 이들이 법령이나 규제의 설립이나 변화를 강제로 막거나 법령이나 규제의 내용을 변화시킬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염려는 실제로 근거가 없다.

개도국들에게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제안은 과도하다고 판단한다. 아직 일부 선진국에서도 규제영향분석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 한국도 1999년 이후 규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보다 인적자원이 부족한 개도국들이 규제영향분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 검토 및 상소절차의 도입

GATT 10조는 관세 및 통관절차에 항의가 있는 경우, 절차가 옳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는 행정적, 법적 검토 및 상소절차의 설립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제안서들에는 이러한 검토 및 상소절차를 더욱 구체화하는 제안들이 다수 포함되었는데, 특히 관세나 여타 정부기관의 행정적 결정에 있어서 중립적이고 무차별적인 검토 및 상소절차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해당부처가 일차적 검토나 상소절차를 담당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또는 독립적인 기관이 검토나 상소절차를 담당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일부 제안서들은 강조하였다.

일부 제안서들은 검토나 상소절차가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사소한 문제에 대한 검토나 상소절차에 대해서는 시간적 제한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상소절차에 대한 정보가 널리 홍보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한 제안서는 검토나 상소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의 지불을 미정상태로 두는 대신 수출입업자가 보증금이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물품을 먼저 양도할 수 있는

제도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지연되는 검토나 상소작업 때문에 물품의 수출이나 수입이 지연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KOTRA에 의하면 일부 개도국에서는 상소절차가 1년 이상 거치기 때문에 한국업체들이 관세나 통관절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았어도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²³⁾

행정부와 독립된 상소절차를 도입하는 제안과 상소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인다는 제안은 모두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들간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행정부와 독립된 상소절차를 도입하면 상소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국가의 경우, 사법부가 최종 상소의 의무를 가지게 되면 상소절차 소요기간을 제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개도국 차원에서는 엄격한 검토 및 상소절차가 행정부, 특히 통관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소극적으로 볼 것이다. 또한 WTO 회원국들은 이미 상당히 상이한 상소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행정부 소속기관이, 일부 국가에서는 독립적 기구가, 일부 국가에서는 사법부가 상소절차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원활화 협정에서 단일적인 상소절차를 의무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상소절차가 사법부의 의무가 되는 경우 무역업체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법률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상소절차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상소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축소하는 것이 개도국의 입장에서 더욱 바람직하다.

마. 정리

GATT 10조에 대한 내용에서는 비교적 논쟁이 없다. 투명성 제고는 모든 회원국들이 비교적 동의하는 분야로, 여타 WTO 협정에서도 이를 위

23) KOTRA.

한 각종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 OECD(2002b)가 지적하고 있지만 투명성, 특히 정보의 접근성은 시장참여자들이 시장의 상황, 조건, 이득과 비용을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WTO의 규율과 협정에서 보장하는 각종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령, 규제, 판결 및 판정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여 시장참여자들이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참여자의 관련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탐색 및 이해기간 제공이 필요하며, 항의절차도 마련하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제 투명성(regulatory transparency)의 제고로 시장개방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²⁴⁾

개도국은 GATT 10조의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하지 않지만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부족, 그리고 국내 정부기관들의 협력 부족의 문제를 강조하면서 선진국들의 지원과 충분한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충분한 지원과 유예기간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GATT 10조에 관한 이해의 차이는 쉽게 풀릴 수 있다.

24) 규제투명성에 대해서는 OECD (2000), OECD(2001)과 김진국·김태운·양준석(2001) 참고.

〈표 4-1〉 GATT 10조 관련 제안서 정리

제안분야	한 국	E U	일 본	캐나다	비 고
일반적 법령, 규제, 판정, 행정결정의 발간	O	O	O	O	JA-행정절차 및 지침도 포함. CA-국제협정도 포함.
관세청 및 통관기관 관련 정보 공개				O	
관세청 및 통관절차 기관의 운영기획 공개		X			
통관절차 종류별 기준 및 절차 공개				O	
사전판정제도 도입			O	O	여타 회원국은 VIII조에서 다루고 있음. CA-사전판정에 대한 책임 강조; 관세품목, 관세액, 세금 및 허가요구사항 강조
사전판정 공개	O	X			
정보 발간매체를 WTO 사무국에 신고	O		O	O	
조치 발표와 실행간 기간 의무화	O	O		O	
항의절차	O	O	O	O	EU-이미 GATT 10조에 규정 - 절차의 구체화 요구; 통과화물에 대해서도 항의절차 사용 가능 CA-관세품목 판정 강조
항의절차 중인 물품 선양도 제도		O		O	
단일정보창구	O	O	O		

제안분야	한국	EU	일본	캐나다	비 고
주요법령 및 절차를 WTO 공식어로 WTO 사무국에 통보	O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		O			
법적 정당성이 있는 절차만 실행		O			
법령, 규제(안) 조기 발표				O	
법령, 규제도입 이전 민간기업과 사전협의		O		O	CA-60일 의무화
민공 정기적 협의절차 도입		X			
도입된 법령이나 규제에 대한 정당성 발표		O		O	

주: O) 적극적 찬성 반응, X) 소극적 찬성 반응 KR) 한국제안서(G/C/W/377); EU) EU 제안서(G/C/W/363); JA) 일본제안서(G/C/W/376); CA) 캐나다 제안서(G/C/W/379)(US: 미국제안서(G/C/W/384)에는 구체적 제안사항이 없음.)

2. GATT 8조

무역원활화를 추진하는 일부 국가들에 따르면 무역원활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류의 흐름, 금융의 흐름 그리고 화물의 흐름을 분리하여 서류나 금융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일단 화물의 흐름을 막지 않는 체제를 설립하는 것이다. GATT 8조는 수출입과 관련된 수수료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역에 관련된 행정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조항이다. 따라서 GATT 8조와 관련된 내용은 가장 기술적이고 까다로우며, 무역원활화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WTO(2002)는 GATT 8조와 관련된 법적문제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GATT 8조의 주요 의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⁵⁾

- 8조 1항에 의하면 수출입과 관련되는 비관세 수수료나 요금은 각 회원국이 수출입과 관련되는 규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과 대체로 합치해야 하며,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이나 정부재정 충원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 8조 2항에 의하면 여타 회원국이나 WTO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원국은 8조의 의무와 비추어 국내법과 규제의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
- 8조 3항에 의하면 관세나 통관 규제, 절차에 있어서 사소한 위반의 경우 큰 벌금을 부여할 수 없으며, 특히 위반사항이 쉽게 수정될 수 있고 사기행위나 중과실의 경우가 아니면 큰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
- 또한 회원국들은 수수료와 요금의 종류와 숫자를 줄이고, 수출입 절차의 숫자와 복잡성을 최소화시키며, 수출입관련 서류의 요구사항을 줄이고 간소화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그러나 이를 실행할 의무는 없다.

GATT 8조는 통관절차와 통관관련 수수료를 다루게 되어 있으나, 원문을 구체적으로 보면 수수료에 한정되어 있다. 통관절차나 통관관련 서류에 대해서 GATT 협정은 통관절차의 숫자와 복잡성을 최소화하고, 서류의 요구사항을 줄이고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만 하고,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GATT 협정에서 통관절차와 서류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볼 수도 있다. GATT 8조를 다룬 분쟁해결기구의 패널보고서나 상소보고서에서도 대체로 이러한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²⁵⁾ 분쟁해결기구의 판정문 결정은 대체로 수수료에 관련되어 있으며 통관절차는 찾아보기 어렵다.

WTO 무역원활화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통관절차는 한정되어 있다.

25) WTO, "Article VIII of the GATT 1994 Scope and Application," WTO 문서 G/C/W/391, 9 July 2002, p.6.

26) 양준석(2004)

여타 국제기구들은 원산지 규정, 기술적 규제, 위생규제, 선적전 검사, 관세가격산정(customs valuation)을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의 일부로 보고 있지만, WTO 무역원활화에서는 이 분야들을 제외하고 있다. 이 분야들 GATT 8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여타 WTO 협정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무역원활화에서 이 분야들을 다루는 경우 다른 WTO 협정들과의 관할구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개도국들은 원산지 규정을 무역원활화에서 다루자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도하 각료회의에서 원산지 규정을 협상과제로 선정하지 않았으며, 개도국들은 원산지 규정 협정에 대한 불만을 무역원활화 협상을 통하여 교정하자는 전략인 것 같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원산지 규정을 GATT 8조에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주장을 반대하였다.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통관절차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통관절차에 지방정부가 관여하고 있다. WTO 협정 관례에 따르면 WTO 합의사항을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정부의 WTO 협정 준수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은 강력한 연방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행사할 수 있는 구속력이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무역원활화를 추진하는 일부 국가들은 지방정부가 관여하는 통관절차까지 무역원활화 협상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연방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칸쿤 각료회의 이전 7개의 회원국들이 GATT 8조 관련 무역원활화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중 3개는 구체적인 제안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나머지 4개의 제안서에서 제기한 조치들은 <표 4-2>에 정리하였으며, 대체로 4개의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1) 국경통과 관련 서류의 간소화와 서류의 요구사항의 표준화, 2) 일반적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이의 사용, 3) 관세청과 여타 기관들의 협조 강화, 4) 통관절차의 자동화 등이다.²⁷⁾ 아래에서도 역시 각 분류별로, 제안된 구체적인 조치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개도국의 관점에서 이 조치들을 검토해본다.

가. 국경통과 관련 서류의 간소화와 서류 요구사항의 표준화

서류의 간소화란 정부부처가 무역업자들에게 요구하는 각종 서류에 따르는 부담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서류의 숫자뿐만이 아니라 각종 서류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나 보조자료를 줄이고, 서류를 작성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들을 줄이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무역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도 최소한으로 줄이는 작업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들로 EC는 영사관 송장의 요구를 금지하자고 제안하였고, EC와 한국은 서류의 복사본을 원본같이 인정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캐나다는 여러 정부부처에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무역업자는 이 정보를 한 번만 제출하고 정부부처간 정보를 공유하게 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통관절차 중 무역업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에 대한 국제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였다.

EC, 캐나다와 일본은 무역업자들이 정보를 한 번만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정부부처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한군데에 종합하여 제출하는 단일정보 제출창구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단일정보 제출창고가 설립되는 경우, 각 정부부처들의 공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설립하거나 각 부처들의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국이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 일본, EC 및 캐나다는 정부는 무역업체들에게 과도한 정보를 중복적으로 요청하기보다는 이미 제출한 민간 업무 서류에 나온 정보를 활용하는 제도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외에, 상업적 서류 또는 여타 방법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에 있어서는 정

27) 분류항목은 OECD “Transparency and Simplification Approaches to Border Procedures: Reflec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GATT Article VIII Related Proposals in Selected Countries,” TD/TC/WP(2002)50/FINAL, 4 Dec. 2002와 같으나, 논의내용은 그와 다르다.

부가 굳이 무역업자에게 요구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통관절차와 정보공유에 있어서 해당국의 통관절차 기관들이 상당히 발전된 정보통신 인프라를 이미 운영해야 한다. 개도국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 인프라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각종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발전된 소프트웨어도 필요하다. UN 차원에서는 개도국들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소프트웨어인 ASYCUDA++를 제공하고 있지만,²⁸⁾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하드웨어와 인적자원이 필요하다.

정보통신 인프라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 통관절차를 잘 알고 있는 통관절차 전문가들도 필요하고, 이들이 장기간 동안 협력해야 효율적인 통관절차 정보전달 및 공유 인프라를 설립할 수 있다. 개도국이 이러한 인프라를 세우는 데에 필요한 금융자원, 물적자원, 인적자원이 부족한 것은 널리 알려진 바이며, 이러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가능성에 따르는 부담때문에 개도국은 무역원활화 협상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부속서 D(Annex D)에 의하면 무역원활화 협정에서 요구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우 회원국은 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과 협상과정에서 협정에서 요구할 조치의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여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역업자들의 서류부담을 줄여주는 또 하나의 방법은 각 국가의 서류형태를 국제기준에 최대한 합치시키는 것이다. 일례로, 어떤 국가의 서류라도 수입업체의 이름과 주소는 같은 위치에 쓰도록 서류의 형태를 통일하는 것이다. 통일된 서류형태를 사용하는 경우, 언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큰 부담 없이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UN에서는 서류형태의 기준을 제시하는 ‘UN Layout Key’를 작성하였으며, EC 등 일부 국가들은 UN Layout Key를 기준으로 국내서류의 형태를 이미 통일했고, EC는 UN

28) 손찬현. 윤진나(2001), pp.48-49.

Layout Key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하였다. 이 UN Layout Key는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 요구하지 않는 특별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 정보를 적을 수 있는 공간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WCO에서는 현재 모든 회원국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세관정보모델(Customs Data Model)을 개발하고 있다.²⁹⁾ G7 국가들이 이 작업을 시작하였지만, 2002년부터 연구개발작업이 WCO로 이양되었으며, 빠르면 2005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 G7과 APEC 회원국들은 세관정보모델이 완료되면 이를 실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개도국 입장에서는 UN이나 WCO가 작성한 국제기준을 활용하자는 데에서는 큰 반발이 없는 것 같다. 오히려 국제기준과 표준이 마련되어 선진국들이 요구하는 정보의 기준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국제기준에 의거하는 정보요구사항의 간소화를 받기는 것 같다. 단 무역원활화의 다른 분야와 같이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의 부족으로 정보통신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서류를 사전처리하여 화물이 도착하자마자 물리적 통관절차를 실시하고, 양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여기에도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이므로 개도국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나. 일반적 통관절차와 국경통과절차의 간소화

WTO 무역원활화에서 통관절차가 가장 복잡하고 규정을 정하기가 어려운 분야이다. 통관절차는 서류심사뿐만 아니라 화물 검사까지 포함하며, 국가에 따라 또는 담당공무원에 따라 차별성이 증폭될 수 있다. 일본은 통관절차에 있어서 국제기준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국제기준

29) 손찬현, 윤진나(2001) p.54 참조

을 설립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한국은 기존 국제기준 중 어떠한 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설정할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교토협약은 통관절차에 대한 실용적인 국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규정뿐만이 아니라 그 규정을 실행하는데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EC와 캐나다는 우수한 과거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역업체들이나 특정 자격을 충족하는 인가된 업체들(authorized traders)에 대해서 특별히 통관 절차나 국경통과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인가된 업체들이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적절한 기록을 유지하면서 요구사항을 지키는 경우 물품을 조기에 양도받을 수 있는 제도를 설립하자는 것이다. 또한 EC와 캐나다는 인가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서류나 절차만 요구하고 각종 편의조치를 제공해주는 ‘fast track’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다. 캐나다의 제안서에 의하면 ‘fast track’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물품 양도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함.
- 무역업체의 창고나 다른 국경내 장소에서 통과절차를 실시함.
- 지정된 기간 내에는 하나의 물품신고서로 다수의 거래를 같이 다룰 수 있도록 함.
- 관세나 세금을 자체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허용함.
- 물품 신고서를 민간 상업적 서류의 부기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물론 인가된 업체를 선정할 때는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무차별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관세청과 정부부처는 리스크 운영을 위주로 하는 통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즉 위험성이 적은 물품에 대해서는 관리를 다소 약화시키는 동시에 위험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무역원활화를 추진하는 대다수의 국가들은 인가된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그 무역업체의 과거경력이 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일

부 선진국은 과거 경력이 없는 신설업체라도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무역업체들 모두에게 인가된 무역업체의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인가된 무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외국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불리해지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다.

인가된 업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운영방법의 도입이 필수적이며, 개도국이 이를 도입할 경우 상당수준 통관절차가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개도국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리스크 운영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와 경력과 경험을 갖춘 수준 높은 공무원, 리스크 운영방법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적합한 행정 및 정보 인프라 그리고 법적제도가 필요하나, 개도국에게 이러한 자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개도국들이 리스크 운영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선진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C는 수입절차와 국경통과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서 WCO의 교토협약과 WCO의 통관절차 현대화계획을 따르는 통관절차 행정체제의 현대화가 큰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제안서들에서는 수입절차와 국경통과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여러 가지 조치가 논의되었다. EC는 수입품의 신속한 양도를 위해서 관세청이나 정부부처가 요구하는 정보 중 일부는 향후에 제공하거나 정기적인 시간표에 따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수입품을 조기 양도하는 제도를 제안하였으며, 캐나다, 일본, 한국은 도착전 서류심사와 처리제도 그리고 사후 검사제도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물품의 조기양도를 허용하는 조치를 제안하였다. 캐나다는 보증금제도나 보증인제도 등의 보증제도나 담보조건을 강화하여 수입업자, 수출업자, 창고운영자, 국제운송업체들의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일례로 관세나 세금의 지급을 유예한 상태에서 수입물을 조건부로 조기 양도하는 방안을 제기하였다. 여기서 목적은 서류나 행정적인 이유로 수입품의 양도가 늦어지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것으로 서류의 흐름, 금융의 흐름과 화물의 흐름을 분리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제안에 의하면 각 회원국들은 무역원활화 협상과정에서 각 회원국이 사용해야 할 각종 간소화 조치들의 목록을 협의할 수 있고, 물품양도에서 필요한 시간을 합의한 지침과 목표에 따라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캐나다는 개인편지나 서류 같은 크기가 작거나 가치가 적은 물품,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또는 관세가 낮은 물품이나 선물에 대해서 통관절차 없이 물품을 양도하거나 최소한의 통관절차만을 밟게 하는 제도를 설립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최근 화물무역서 보안과 반테러 문제가 대두 되므로써 통관절차의 간소화가 다소 어렵게 되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 테러사건 이후 미국은 보안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WCO, APEC 등 무역원활화를 논의하는 각종 국제기구들도 통관절차에서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01년 이후 미국은 보안검사를 강화함으로써 통관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GATT 10조에서 논의된 정보투명성의 제고와 정보공유의 강화는 무역을 원활화하는 동시에 화물의 보안도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선진국들이 이 분야를 크게 강조한다. 이에 비해 GATT 8조에서 논의되는 통관절차는 무역원활화와 보안강화간에 다소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보안강화로 수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무역원활화를 통한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부 선진국들은 국내 보안문제를 고려, 보안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캐나다는 국경에서 각 국가가 통관절차를 실시하는 시설을 각각 운영하기보다는 국경에 접한 국가들이 합의하여 두 국가가 동시에 통관절차

를 실시하는 통합된 시설을 설립하자는 다소 과격한 제안을 하였다. 이 경우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은 떠나는 국가의 출국절차와 들어가는 국가의 입국절차 등 두 번의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직 한 군데에서 한 번만의 통관절차를 거친다. 이러한 시설의 통합은 국경에 접한 두 국가의 관세청이나 통관당국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대다수의 개도국을 포함한 WTO 회원국은 이렇게 두 국가의 통관시설을 통합하자는 의견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주권침해나 이해상충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통합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가마다 설립하는 기존시설 중 일부를 철폐하고, 일부 기존시설을 확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큰 물적투자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통합시설을 의무화하는 경우 개도국들의 반발이 클 수 있다. 무역원활화를 지지하는 국가들도 통합시설의 의무화는 시기상조인 조치로 보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는 WTO 차원보다는 인접국가들간의 FTA 차원에서 통합시설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수수료와 요금

수수료나 요금에 대한 제안은 드물었다. 과거에는 국제적으로 허용 가능한 요금과 수수료를 협정을 통해 제한하자는 다소 과격한 제안이 있었다. 즉 각 회원국이 징수할 수 있는 요금의 종류와 최고금액을 무역원활화 협정을 통해 한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큰 지지를 얻지 못하였고, 2001년 제출된 제안서에는 오직 EC가 요금의 규모와 종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비교적 약한 제안을 제출하였다. 수수료와 요금에 대한 내용이 드문 이유는 GATT 협정이나 패널보고서에서 수수료와 요금에 대한 원칙들이 다수가 이미 세워졌기 때문이다.

수수료나 요금 문제에서 고려할 것은 아직도 일부 개도국들은 수수료나 요금이 정부재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GATT 8조에

서는 수수료나 요금을 정부 재정 충원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들에는 무역관련 수수료나 요금이 정부재정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또한 선진국과는 달리 개도국에서는 통관절차에 따르는 업무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을 정부로부터 충분히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개도국들은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줄이자는 제안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라. 통관담당 부처간의 협력 제고

GATT 8조에 대한 제안에는 한 국가 내의 통관담당 부처간 협력에 대한 제안들과 다른 국가들의 부처간 협력에 대한 각종 제안도 포함하였다. 앞에서 소개된 단일정보 제출창구제도, 그리고 모든 국내부처가 하나의 통합된 장소에서 모든 통관절차를 실시하는 제도도 이 분야에 포함할 수 있다.

WTO 회원국들의 국제적 협력에 있어서 EC와 캐나다는 한 국가가 수집한 정보를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자는 제안을 하였는데, 이는 정보수집의 항목과 저장방법, 데이터베이스 형태 및 정보의 전산화와 전송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 개도국의 경우 부처간 협력이 약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 인프라 부족으로 통관담당 부처간 협력이 의외로 어려울 수 있다.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물적 및 인적자원 부족도 역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EC는 통관절차관련 법령의 동일화를 위하여 노력하자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자고 하였고, 캐나다는 두 국가의 통관절차를 하나의 통합통관시설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개도국은 이를 주권침해라고 보기 쉽고, 통합통관시설은 많은 물적 및 인적 자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캐나다는 모든 회원국이 수집하는 정보 데이터세트를 동일화하자고 제안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WCO에서는 국제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데이터세트 형태인 세관데이터모델(Customs Data Model)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빠르면 2005년에 완료될 것이다. 아직 최종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다수의 WCO 회원국들은 중간결과에 만족하고 있고 WCO가 이 모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G8과 APEC 회원국들이 계획대로 이 모델을 사용하며, EC 회원국들도 이 모델을 사용한다면, 여타 국가들도 큰 문제 없이 이 모델을 사용할 것이다.

마. 통관절차의 자동화

EC, 일본, 캐나다와 한국의 제안서들은 자동화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앞에서 언급한 모든 조치들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Arevalo(2002)는 무역원활화와 전산화를 추진하려고 해도 물적자원이나 인적자본이 부족하여 효과적으로 무역원활화를 추진할 수 없는 개도국들의 현황을 기술하고 있다.³⁰⁾

제안서들은 최빈국이나 개도국 회원국들이 자동화나 전산화를 실시할 자원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자동화와 전산화를 통해 개도국들도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OECD(2002)에서는 자동화와 전산화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개도국들의 부담이 생각보다는 적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컴퓨터나 전산장비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며, 앞에서 실시한 국가들의 실수나 오차, 장점과 단점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개도국들의 비용이 의외로 적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³¹⁾ 그러나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개도국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도하 라운드에서 무역원활화의 협상체제와 범위를 정의하는 Annex D에는 국가의 여력을 넘는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 WTO 회원국은 그 조

30) Arevalo, Alexander M., "A Developing Country's View on Trade Facilitation," Paper presented during International Forum on Trade Facilitation UN/ECE(May 29 ~ 30, 2002), pp.5-6.

31) OECD op. cit., 4 Dec. 2002, p.18.

향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과 무역원활화를 추진하는 여타 국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투자가 없이는 무역원활화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수출국이나 수입국이 무역원활화의 이익을 충분히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따라서 무역원활화를 추진하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을 설득시키고 무역을 성공적으로 원활화하기 위해서는 자동화와 전산화에 대해 충분한 물적 및 인적지원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특히 한국은 IT의 선진국이며 통관절차 자동화 및 인터넷을 통한 정보투명화에 가장 앞서 있는 국가 중 하나이며, 최근까지 개도국으로 분류된 국가로서 물적 및 인적 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표 4-2〉 GATT 8조 관련 제안서 정리

제안분야	한국	EU	캐나다	홍콩	일본	비 고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 활용 가능	O	O				
서류 복사본 인정	O					
도착이전 처리	O					
양도 이후 감사	O				O	
리스크 관리 의무화	O	O	O		O	
무차별대우	O					
투명성제고	O	O				
사전예측성 강화	O	O		X		
간소화	O			O		KR - 간소화와 현대화 정의에 대한 합의 없음.

제안분야	한국	EU	캐나다	홍콩	일본	비 고
중립성				X		EU-5조 관련 제안
일관성				X		
합리성 제고	O					
단일서류제출 창구 도입	X	O	O		O	KR - 부처간 협력체제 및 IT 인프라 필요
EDI 체제 도입	X					KR - IT 인프라 필요
국제기준 사용 의무화	X	O		O	O	KR - 국제기준에 대한 합의 없음. EU - WCO, UNCTAD, UN 지역위원회, IMO, ICAO 등 활용
적용대상범위의 구체화		O				EU - 수출입 관련 절차나 요구사항이 있는 모든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지방정부 포함)
수출입 관련, 도입한 절차의 무차별성 보장		O				EU - 리스크 관리에 따르는 차별대우는 허용
절차 자체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 절차만 허용		O		O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절차 또는 왜곡이 불필요하게 많은 절차는 철회		O		O		
요금 부여 가능 조건의 구체화		O				EU - 대상물품관련, 서비스 제공의 비용으로 제한, 종가세 (advalorem) 금지, 대상물품의 수출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행정비용은 제외
요금의 종류와 금액 검토		X				
요금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 절차만 허용				O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요금 또는 왜곡이 불필요하게 많은 절차는 철회				O		
요구하는 서류 최소화		O	O			
요구하는 정보 최소화		O	O			EU-WCO 데이터세트 활용
요구하는 정보의 국제 표준화			O			
국가간 관세법과 절차를 동일화		O				
간소화되고 통일된 수출입절차 도입		O		O		EU-WCO 교토협정 활용

제안분야	한국	EU	캐나다	홍콩	일본	비 고
통관절차의 현대화		O		O		EU-WCO 현대화 프로그램 및 아루샤 협정 활용
관세 브로커 허가의 무차별성		O				
간소화된 양도 및 통관절차		O			O	EU-간소한 정보 미리 제출, 선양도, 후정보 제공 또는 확인하는 제도 도입
인가된 거래업자 제도 도입		O				
국내 부처들의 통관활동 한 장소에 집중		O	O		O	
관세절차 자동화		O			O	
관세절차 관련 국제협조 및 통일화 의무			O			
과거경력 좋은 무역자들에게는 통과절차 추가적 간소화			O			CA-물건양도시 최소정보만 요구, 도착지에서 통관절차, 일정기간간 다수거래를 동시에 처리, 관세 및 요금 자신평가, 상업기록의 부기상 기록만으로 신고가능
양도보증금 제도 도입			O		O	
중간재, 또는 재수출을 위한 품목에 대한 관세나 요금 면제			O			CA-완제품 수출, 재수출 확인 필요
위험성 적은 품목의 신속 양도						CA-우편 및 서류, 저가치 품목, 저관세 품목, 고가품목(제한된 품목도 가능)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품목
민간기업 수출입절차 코멘트 접수 의무화					O	

주: O) 적극적 찬성 반응, X) 소극적 찬성 반응

KR) 한국제안서(G/C/W403); EU) EU 제안서(G/C/W/394); CA, 캐나다 제안서(G/C/W/397); HK, 홍콩 제안서(G/C/W/398); JA) 일본 제안서(G/C/W401) (미국제안서(G/C/W/400)와 콜롬비아 제안서(G/C/W/425)에서는 구체적인 제안사항이 없음.)

3. GATT 5조

GATT 5조는 화물통과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화물통과란 물품이 생산국(수출국)이나 소비국(수입국)이 아닌 제3국을 통과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일례로 대륙 내부에 있는 국가가 제3국의 항구와 육로를 통해 수입품을 받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화물은 제3국에서 입국하고 출국할 때 각각 국경절차 및 통관절차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GATT 5조는 통관절차를 규정하는 GATT 8조와 깊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WTO(2002b)에서는 GATT 5조와 관련된 각종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GATT 5조의 기본적 임무는 다음과 같다.³²⁾

- 선박의 국적이나 출발지, 도착지, 방문지나 최종 목적지 등 물품의 소유, 선박이나 운송방법에 관련된 사항을 근거로 하는 차별적인 대우를 금지한다(2항).
- 통과하는 물품을 신고 있는 운송도구는 규정된 통관시설을 통해 입국해야 하며, 회원국은 여기에 불필요한 지체나 요구사항을 피해야 한다(3항).
- 회원국이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수수료나 규정은 3~5항에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통과화물을 선적하고 있는 선박이나 운송도구는 관세 대상으로부터 제외하며, 운송비나 통과와 관련한 행정적 비용과 유사한 수준의 요금을 제외하고는 모든 통관요금이나 수수료에서 제외한다(3항).
- 따라서 회원국 정부나 부처가 통과화물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요금은 두 종류로 제한한다. 첫째는 운송비용이며, 둘째는 통과나 통과

32) WTO, "Article V of the GATT 1994 Scope and Application," WTO 문서 G/C/W/408, 10 September 2002, pp.7-8.

자체, 또는 관련된 정부 서비스와 관련된 행정적 비용에 대한 수수료이다. 여기에서도 요금은 합리적(4항)이고 무차별적인 방법(5항)으로 징수해야 한다. 통과화물에 대한 요금을 정부의 재정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각 회원국은 통과화물이 여타 회원국을 통과한 경우 그 회원국을 통과하지 않은 화물과 다르게 취급할 수 없다(6항).

이와 같이 5조의 핵심은 통과과정에서 화물이 신속하게 제3국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제3국이 과다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통과와 관련하여 화물은 제3국을 거치지만, 제3국의 생산자나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5조에 대한 각종 제안서에서 통과화물에 대해서는 그다지 엄격한 통관절차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각 회원국이 통과화물에 대해서 요구하는 통관절차는 그 화물이 확실하게 통과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2년에 EC, 한국과 캐나다 등 3개국이 공식 제안서를 WTO 사무국에 제출하였다.³³⁾ 여기서 다루어진 제안들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1) 통과절차 및 관련서류의 간소화와 표준화, 2) 운송수단, 탁송종류, 운송업체 등에 대한 무차별성 보장, 3) 통과관련 국제협력의 강화 등이며, 아래에서는 이를 자세히 살펴본다. <표 4-3>에서는 3개의 제

33) EC 제안서: WTO, "WTO Trade Facilitation - Strengthening WTO Rules on GATT Article V on Freedom of Transit: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WTO 문서 G/C/W/422, 30 September 2002. 본문에 제시한 각종 제안들은 pp.5-7에서 인용.

한국 제안서: WTO, "Trade Facilitation: GATT Article V: Communication from the Republic of Korea," WTO 문서, G/C/W/423, 1 October 2002. 본문에서 제시한 각종 제안들은 pp.2-3에서 인용.

캐나다 제안서: WTO, "Trade Facilitation: Article V of GATT 1994 on Freedom of Transit: Communication from Canada," WTO 문서 G/C/W/424, 1 October 2002. 본문에서 제시한 각종 제안들은 pp.2-3에서 인용.

안서에서 제시한 각종 정책들을 정리하였다. 이 제안서들에서 GATT 5조에 대해서 제시한 일부 제안은 8조에서 이미 제시한 내용들과 유사한 것들이 많은데, 8조에서 충분히 논의한 제안들은 아래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가. 통관절차 및 관련서류의 간소화와 표준화

이 분야 제안들의 대다수는 8조에서 논의한 제안들과 유사하다. 모든 제안서는 통과화물에 대한 절차와 서류의 요구를 최소화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국은 통과화물에 대한 서류나 통관절차는 수출 또는 수입되는 화물보다 낮은 수준으로 의무화해야 하며, 환적을 하지 않고 단순히 회원국을 통과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통관절차나 서류의 부담을 추가적으로 낮추자고 제안하였다. 캐나다의 제안서에서는 회원국을 통과할 때 보증서나 보증금이 요구되는 경우, 통과보증서(surety bond)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다.

캐나다는 통과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서류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통관 절차에 있어서 리스크 운영의 원칙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좋은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무역업체들은 간소화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EC, 캐나다와 한국의 제안서들은 통과화물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요금이나 수수료의 정당성과 적절함에 대한 투명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도국 차원의 문제도 역시 8조에서 제기한 문제들과 유사하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개도국 입장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역시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의 부족, 특히 통신정보 인프라의 부족과 낙후된 시설문제를 들 수 있고,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수수료 수입이 정부의 재정 수입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재정보충 문제를 들 수 있다.

나. 운송수단, 탁송종류, 운송업체 등에 대한 무차별성 보장

통과화물에 있어서 통과허용 다음으로 제3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는 통과수단, 즉 운송수단이다. 제3국은 운송수단에 대한 각종 규제를 사용하여 운송수단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례로 수송보다는 육송 또는 항공운송을 더욱 용이하도록 각종 규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국의 운송업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제를 정할 수 있다. 물론 일부 회원국에서는 지역적 또는 물리적 특징에 따라 화물이 그 회원국을 통과할 때 가장 용이한 운송방법이 있을 수 있다. 즉, 국가의 지형적 특징 때문에 특정한 운송방법을 선호할 수 있다. 또한 중립적, 정책적 이유로 특정한 운송방법을 선호할 수 있다. 환경보호가 이러한 이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제3국이 자국 운송업체를 선호하는 이유도 합리적일 수 있다. 일례로 위험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가된 국내운송업체를 의무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이러한 중립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책적 이유로 특정한 운송방법의 사용, 또는 특정 운송업체의 사용을 장려하거나 의무화할 수 있다. 여기서 정책적인 이유란 국내 고용보호, 국내업체의 독점권 보호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은 보호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EC의 제안서는 운송방법, 탁송종류 또는 운송업체들에 대한 차별대우 문제를 제시하고, WTO 차원에서 특정 운송방법을 장려하거나 억제할 때 그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이유와 사용할 수 없는 정책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EC의 제안서에서는 일부 WTO 회원국들이 특정 물품에 대해서 그 물품이 국내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례로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지정한 운송업체만이 위험한 물품을 국내에서 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대다수의 경우 이러한 제도는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의 보호를 위해서 도입하지만, 일

부 경우는 국내 운송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EC는 WTO 차원에서 정부가 국내 운송업체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경우를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C는 운송업체에 대한 무차별 원칙도 제기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국내에서 외국업체가 통과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국가를 통과하는 화물의 경우, 국경이 바뀔 때마다 운전수를 바꾸거나 화물을 환적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GATT 5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EC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운송서비스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물품의 교역을 다루는 GATT 협정이나 이를 보완하는 무역원활화 협정에서보다는 서비스를 다루는 GATS 협정에서 다루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는 지적이다.

개도국의 입장에서, 특히 규모가 작은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GATT 5조가 중요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최빈개도국 또는 유럽의 중소국가들은 대륙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들은 근접국가들을 통하여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다. 이러한 개도국들은 화물통과에 따른 비용이나 규제가 물품 수출입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화물의 통과에 대한 국제적 규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내륙 개도국들에게는 GATT 5조가 다른 조항보다 더욱 중요할 수 있다.

다. 화물통과에 대한 국제협력의 강화

GATT 5조를 논의할 때 화물통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국제협력 절차를 도입해야 하며, 회원국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여기에 관련된 제안들은 GATT 8조나 10조에 관련해서 제시한 제안들과 유사하므로 여기서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해안에 근접하지 않는 내륙국가에 있어서 화물통과는 지역경제적 성격

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그 지역내 국가들의 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 WTO에서 화물통과에 대한 기준을 조화시키고 강화하면 이는 화물통과에 필요한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EC는 지적하고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아프리카 대륙의 일부 개도국들이나 유럽대륙의 중소 국가들에게는 통과화물 문제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협력체제나 기구를 설립한 경우가 있다. UN 산하 유럽지역 경제개발기구인 UN/ECE가 무역원활화 논의와 연구에 앞장서는 이유도 EC 통합에 따른 화물통과문제, 그리고 유럽의 중소 내륙국가들의 화물통과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내용차원에서 개도국들은 통과화물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에 큰 저항이 없을 것이다.

〈표 4-3〉 GATT 5조 관련 제안서 정리

제안분야	한국	EU	캐나다	비 고
국제협력절차 도입	O	O		
회원국간 정보교환	O			
통과절차 합치화	O			
통과관련 추가적 간소화	O		O	KR - 8조와 비교할 때 추가적 간소화
문서종류 간소화		O		
정보요구 표준화	O			
정보요구 간소화		O	O	EU - 각 회원국은 요구할 수 있는 정보항목의 결정권 유지
요금 통보의무	O			
요금가능항목 규정		O		
요금 간소화			O	
환적절차 추가적 간소화	O			KR - 일반 통관화물과 비교할 때 추가적 간소화
운송수단관련 무차별대우		O		
개별 운송업자 무차별대우		O		
화물품 무차별대우		O		EU - 일부 위험한 품목은 제외
보세 유치금 (surety bonds) 제도 도입			O	
과거경력 좋은 무역자들에게는 통과절차 추가적 간소화			O	
여타 기관의 국제협정 가입 권장, 또는 의무화			O	
통과화물에 대한 내국민대우 의무 부여			O	

주: O) 적극적 찬성 반응, X) 소극적 찬성 반응

KR) 한국제안서(G/C/W/423); EU) EU 제안서(G/C/W/422)

4. 무역원활화 규범제정에 대한 개도국의 반대 이유 및 문제점

아직도 대다수의 개도국들은 무역원활화 협정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도 미미한 개도국들의 통관체제와 자원의 부족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GATT 10조, 8조 및 5조 내용을 설명할 때 계속 강조하였지만, 개도국 차원에서는 아직 무역원활화와 통과절차 개

선을 위한 작업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도국들은 이러한 개선작업을 시작하기 위한 물적자원 및 인적자원이 부족한데, WTO를 통하여 이러한 무역원활화 조치가 구체화되고, 특히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실행의무를 가지게 되면, 선진국들에게 무리한 제도변화 및 투자를 강요받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통관절차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인 WCO가 이미 존재하는데, 여기에 WTO가 참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성이 부족한 면도 있었다. 개도국은 지적재산권을 다루는 국제기구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의 강요로 TRIPS 협정을 UR에서 도입하였는데, TRIPS 협정이 선진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선진국들이 다시 그들에게 유리한 노동기준 규범을 강요하기 위해서 국제노동기구인 ILO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WTO를 통하여 노동기준 협정을 협상하자는 선진국들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무역원활화도 역시 유사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즉, 전문국제기구인 WCO가 존재하고, WCO 산하에서 수정 교토협약(Revised Kyoto Convention)이 존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WTO를 통해 무역원활화 협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적재산권이나 노동기준에 대한 개도국들의 입장과 상반되는 면을 지닌다. 즉 WCO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WTO에서 무역원활화를 논의하게 되면 노동기준에 있어서도 협상을 막는 논리가 약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도국들은 뉴라운드에서 무역원활화를 협상과제로 포함시키는데 있어서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고, 무역원활화를 포함한 새로운 쟁점의 포함여부가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2001년도 도하각료회의에서는 여기에서도 역시 개도국들은 노동과 환경, 싱가포르 이슈 등 새로운 과제의 포함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따라서 도하라운드 시작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노동기준은 협상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고, 환경기준은 WTO 협정과 국제 환경협정간의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협상한다는 기본적인 문제에 한하여만 허락되었다. 또한 무역원활화를 포함한 싱가포르 이슈들에 대해서는 2003년에 개최하는 칸쿤 각료회의에서 협상시작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일단 도하라운드 출범시키고 무역원활화 협상에 대한 마찰을 2년 동안 연기시켰다.

그러나 칸쿤 각료회의에서는 농산물 보조금 문제와 싱가포르 이슈 협상여부 문제로 WTO 회원국들간 합의를 도출시키지 못하여 각료회의가 결렬되고 도하라운드 협상의 실질적 진전이 지연되었다. 시애틀 각료회의나 도하 각료회의에서는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등 4개의 싱가포르 이슈들을 모두 묶어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이후부터는 이 이슈들을 따로 처리하자는 움직임이 강화되었다. 실제로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일부 선진국들은 OECD MAI 협정 결렬 이후 이 이슈에 대한 의욕과 지지가 감소되었고, 일부 개도국들도 투자협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었다. 또 무역과 경쟁정책에 있어서 미국은 경쟁정책 규범이 반덤핑제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협상의 시작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개도국들의 경우 비록 경쟁정책법을 가지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국가들의 숫자는 비교적 적어서 협상의 시작에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4개의 싱가포르 이슈 중 무역과 투자와 무역과 경쟁정책의 협상을 포기하고 무역원활화와 정부조달 투명성 협상만 시작하자는 제안을 소개하였으나, 개도국들은 정부조달 투명성마저도 협상의 시작을 거부하였다.

2004년 8월 1일 WTO 회원국들은 도하라운드 향후 협상의 틀을 마련하는 문서인 WT/L/579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4개의 싱가포르 이슈 중 오직 무역원활화에 대해서만 협상을 시작하자고 합의하였고, 이 문서의 Annex D에서는 무역원활화 협상의 틀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무역원활화는 도하라운드의 공식협상과제가 되었고, 도하라운드 통합과제(Single

Undertaking)의 일부가 되어 도하라운드 여타 분야들과 같이 협상을 진행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는 협상을 시작한다는 것이지, 협정문의 체결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부 관계자들은 원문을 해석하고 있다.

개도국들이 싱가포르 이슈의 협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원활화를 협상과제로 선택한 데에 있어서는 다른 과제들보다는 정치적 부담이 적고,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자국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며, 다른 싱가포르 이슈들보다는 선진국들의 지원을 받기가 용이하다는 계산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무역원활화 협정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는 1) 분쟁해결절차 사용여부 문제, 2) 지원문제, 3) 유예기간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분쟁해결절차 사용여부

무역원활화 협상을 시작하고자 하는 회원국들은 무역원활화 협정에서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 특히 개도국들은 분쟁해결절차의 사용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개도국들이 아직 무역원활화 협정에서 요구할 각종 규정에 합치하는 제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소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염려, 그리고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는 직접적 비용과 부담 때문이다.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이미 높은 수준의 무역원활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도국들이 제소국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피소국이 될 가능성은 크다.

이러한 개도국들의 염려를 반영하여 Annex D 3조에서는 최빈개도국들에 있대하여 각 국가의 역량에 적합한 조치들만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협상의 일환으로 각 조치에 대한 비용을 꼭 검토하도록 규정하였

다. 또한 6조에는 개도국이나 최빈개도국이 무역원활화 협정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투자에 대한 지원이 없거나, 그 국가가 충분한 역량이 없는 경우에는 협정문을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정되는 국가에서는 무역원활화 협정의 실제효력이 상당히 약할 것이다.

따라서 최종협정문에서는 분쟁해결절차의 사용여부와 선진국의 지원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무역원활화 협정에서 개도국들이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받게 하자면, 개도국들의 염려를 덜어줄 수 있는 수준의 선진국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나. 지원문제

개도국들이 무역원활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는 무역원활화가 선진국의 지원을 받기가 용이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Annex D 협상 중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지원을 무역원활화 협상의 연역적(a priori) 조건, 즉 필수조건으로 하자는 제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Annex D 6조에 따르면 선진국의 충분한 지원이 없이는 개도국들은 협정문을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까지 삽입되었다.³⁴⁾ 따라서 개도국들은 구체적이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선진국 지원을 예상한다.

지금까지 개도국들의 무역원활화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을 투입하였다. 특히 EC는 무역원활화에 대한 다수의 활동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원활동은 개별 선진국보다는 세계은행이나 UN(UNCTAD, UN/ECE, UN/ESCAP)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진국들이나 무역원활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이 개도

34) 여기서 선진국들은 이러한 지원은 영구적(open-ended)인 지원이 될 수 없다는 구절을 삽입하였다.

국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제공할지에 대한 논의는 부진한 상태이다. 2004년 7월 현재 아직까지 무역원활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은 협정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각종 조치와 정책들을 제안하는 문서를 많이 제출하였지만, 구체적 협정안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어떠한 수준의 무역원활화 협정을 요구하는지, 또 그 대가로 어떠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아직 모른다. 선진국의 협상전략 차원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미리 알려지면 그들의 협상입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를 발표하지 않은 면도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안들이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도국들도 협상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다.

무역원활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의 제안서를 보면, 모든 제안서에서 개도국들이 무역원활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자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즉, 컴퓨터나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물적지원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전문적 지식을 개도국들에게 전달하고 개도국들에서 전문가들을 육성시킬 수 있는 인적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제안서들에서는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에게 물적지원과 인적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원칙을 포함하지만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정을 성공리에 체결하려면 무역원활화 협정을 추진하는 국가들은 협정문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 유예기간 문제

Lucenti(2003)는 개도국 관점에서 도하라운드에서 무역원활화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개도국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³⁵⁾ 무역원활화는 법이나 규

제를 개정하는 제도적 변화뿐만이 아니라 정보통신 인프라의 설립이나 물리적 시설의 개선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WTO 협정보다는 더욱 오랜 준비기간 및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에 따라 개도국들이 필요한 준비기간이나 유예기간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 GATT 10조의 투명성 제도나 GATT 8I조의 서류관련 제도 중 일부는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적용시킬 수 있지만,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을 필요하는 정책들이나 시설의 신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무역원활화 협정이 체결되면 개도국들은 협정의 내용을 모두 일정한 시간 내에 준수해야 하는 UR식 방식보다는 협정의 내용을 분야별로 차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한 바가 있다.

또한 개도국들은 UR에서 규정한 유예기간들이 너무 짧다고 주장하며 실제로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므로 개도국들은 상당히 긴 유예기간을 요구할 것이다.

5. 요약

무역원활화는 무역에 따르는 비효율성을 삭감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win-win’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수출국, 수입국 모두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과제이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개도국이 무역원활화를 DDA에 협상과제로 포함시키는 데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

근본적으로 개도국들이 지적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인적자원의 부족이 중요한 과제이다. 무역원활화 협상과 국내 통관

절차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새로운 전문인력을 교육할 자원도 부족하다. 통관절차 관련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통관절차와 정보통신 모두에 능숙한 전문가가 필요하나 이 또한 부족한 형편이다.

- (2) 물적자원의 부족, 특히 정보통신 인프라 자원의 부족이 개도국이 주저하는 두 번째 원인이다. 무역원활화 제안서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가 필요하지만 개도국은 인프라를 구축할 재원이 없다. 또한 통관절차, 화물통과절차와 관련한 창고 등 적합한 물리적 시설물이 필요하나 일부 개도국의 경우 시설물이 노후화 되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이 시설의 개선 및 신축재원도 없다.
- (3) 국내정부 부처간 협력의 부족이다. 각 부처간 독립성향이 강해 영향력 약화를 두려워하여 부처간 협력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이 필요하나, 개도국 정치가가 무역원활화에 큰 관심을 보일지 의문이다.
- (4) 개도국의 선진국에 대한 기대이다. 무역원활화 중 일부 정책은 큰 부담없이 시행할 수 있지만, 일부 정책은 물적자원이나 인적자원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각종 단일창구의 활용, 문서형태의 통일, 데이터베이스 설립 등에 있어서 정보통신 인프라가 필수적이며, 대다수 개도국은 인프라에 대한 선진국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일단 Annex D 4조와 6조에서 개도국의 투자 역량을 넘는 조치는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였지만, 개도국 차원에서는 외부지원이 없이 무역원활화에 필요한 투자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UR에서도 선진국이 시장을 개방하면 큰 이득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였지만, 그 이득이 예상보다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에게 구체적인 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 차원에서는 개도국들에 대한 지원이 자국 정부에 부담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Annex D의 4조와 6조는 무역원활화의 효력과 협정의 유효성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실효성과 효과가 있는 무역원활화 협정을 완료하려면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인적자원 지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 물적자원 지원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과거 선진국들은 WTO 차원의 역량제고 지원이나 기술협조 지원을 세계은행이나 OECD, UN 등 기존 국제기구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 예산을 충분히 추가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WTO 차원 역량제고 지원이나 기술협조 지원을 위해 다른 분야의 지원이 줄어들어 드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개도국은 더욱 투명한 선진국들의 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제5장 개도국 협정참여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및 한국의 개도국 지원 내용 및 방향

1. 개도국 지원의 필요성

제3장에서는 무역원활화에 따른 선진국·개도국에서의 무역증진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무역원활화의 전세계적 무역증진효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선진국, 개도국 모두에게 비차별적인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다. 따라서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사업을 일부 지원하고 개도국도 비용을 자체 부담하면서 무역원활화를 규범화하는 것이 중궁적인 지향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WTO의 무역원활화 연구과정과 논의과정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문제점들과 무역원활화를 추진하는 일부 국가들 제안서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WTO 차원에서 무역원활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선진국이거나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부 중진국들이며, 대다수의 개도국은 무역원활화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4개의 싱가포르 이슈들 중 무역원활화만의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은 무역원활화에 대한 개도국의 지지를 반영하였다고 보다는 4개의 싱가포르 이슈들 중 하나라도 협상을 시작하고자 하는 선진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칸쿤 각료회의에서 개도국은 4개의 싱가포르 이슈들 중 무역과 투자, 그리고 무역과 경쟁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미국도 이 분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상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시장개방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정부조달 투명성에 대해서도 협상 시작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선정하지 않았다.

개도국은 무역원활화 협상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4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물적자원 및 인적

자원 등 역량부족이다. 무역원활화 협정의 의무가 과도할 경우, 개도국 무역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선진국의 각종 통상압력과 분쟁해결절차 사용으로 부담만 커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개도국의 우려사항을 협상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개도국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실현가능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개도국의 필요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개도국이 비교적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협정조항을 조정함으로써 협정체결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다. 둘째, 개도국이 협정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물적자원의 지원과 함께 개도국의 인적자본 구축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측면에서 개도국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 (1) 협상에서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실효성이 있고 개도국이 실현 가능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인데, 이 연구에서는 이를 제도적 지원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제도적 지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개도국이 무역원활화 협상에 참여하고 협정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일단 준비기간을 기존 UR 협정보다 길게 규정하는 조건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개도국에게 가장 큰 부담이 분쟁해결절차의 제소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도국이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을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각 조항에서도 개도국이 협정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정하는 배려도 필요하다. 그러나 개도국들에 대한 의무를 너무 가볍게 하면 WTO 차원에서 무역원활화 협정의 의미가 경감되기 때문에 개도국에게 적당한 의무를 부여하도록 유도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 (2) 협정체결을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요구되는 것

이 직접적 지원으로, 개도국에 물적 및 인적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무역원활화를 위한 각종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자금이나 장비의 지원, 그리고 무역원활화의 충실한 이행에 필수불가결한 개도국 공무원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지원이 직접지원의 주내용이다. 여기서도 역시 제3장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도국이 가장 큰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분야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 행해졌던 단순한 단기교육의 형태를 넘어서는 효과적인 무역원활화 지원을 위해서는 이 외에도 물질적 지원, 자금지원, 그리고 중장기적 교육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역원활화 협정이 요구하는 의무가 엄격하고 부담이 클수록 개도국은 더욱 많은 지원을 요구하므로 협상과정에서는 제도적 지원과 직접적 지원간의 적절한 비중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은 제도적 지원과 직접적 지원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은 근래에 개도국 수준에서 졸업한 국가로서(농업부문 예외) 개도국의 문제들을 널리 이해하고 있으며, IT 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무역원활화 조치를 이미 실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도국과 선진국의 교량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여러 번 반복하였지만, 실제 교량역할을 수행한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한국이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취하고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을 좁히는 데에 기여할 경우 다자간 통상협상에서 한국의 입지가 제고될 수 있다.

둘째, 제3장의 정책 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분야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은 선진국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무역원활화 지수가 평균이하인 국가가 평균수준으로 개선되는 시나리오 1의 결과를 보면 수출입이 각각 1.5%, 1.2% 증대되고 있어 선진국의 0.8%의 수출입 증대효과를 크게 상회한다(표 3-3 참고). 무역원활화 지수가 평균이하인 국가가 현 수준의 50% 개선하는 시나리오

2의 경우 한국의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3.5%, 3.0%로 역시 선진국의 수출입 증가율 1.6%를 큰 폭으로 넘어서고 있다(표 4-3 참고).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대외시장 개방으로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무역원활화는 한국의 IT 산업이나 무역원활화 관련 산업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개도국 통관 절차 개선 프로젝트에 우리의 자동화시스템을 수출할 수도, 컴퓨터 등 관련 제품을 수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 가지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무역원활화 협상의 제도적, 그리고 직접지원적 측면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004년 8월 1일 발표된 DDA 향후 협상 합의서의 Annex D에서는 무역원활화 협상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제도적 지원과 직접적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이 두 가지 지원의 적절한 비중에 대한 합의를 강조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한국이 무역원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과 함께 협상에서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고, 어떠한 지원을 마련하여 개도국에게 무역원활화 협정의 각종 정책의 필요성과 용이성을 설득하고, 이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를 판단해보기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2절에서는 제도적 지원 차원에서 무역원활화 협정에 대한 개도국의 우려를 반영하고 무역원활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해본다. 3절에서는 직접적 지원 차원에서 개도국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각종 방안들을 고려해본다. 여기서는 특히 한국이 개도국들에게 제시해줄 수 있는 각종 구체적 지원을 제시한다.

2. 개도국 협정참여를 위한 전략적 접근

이 절에서는 협상과정에서 개도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살펴본다. 한국을 비롯한 무역원활화 추진국들이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하

기 위하여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본다.

가. 제도적 지원과 한국의 전략

개도국은 선진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무역원활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을 통한 물적 투자와 인적자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진국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투자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제공하지 않는 반면, 의무만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의무사항을 근거로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경우 개도국의 부담이 크게 늘고 개도국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개도국은 세부적인 무역원활화 개선사항에 있어 각각 고유의 특성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무역원활화 협정체결에서도 이를 고려해주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다자협상의 틀 속에서 각 국가들, 특히 중소국가들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 및 이에 근거한 특별한 고려사항을 일일이 협상내용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각 국가의 특별한 필요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협정체결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에서 기술한 개도국의 2가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성공적 무역원활화 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각 개도국이 자기에게 적합한 수준을 스스로 정하게 하는 방식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3가지 측면에서 준수 수준을 차별화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 (1) 다자간 협정내 복수간 협정방식: 분쟁해결절차의 사용과 적용 여부를 각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무역원활화 협정을 협상차원에서는 모든 WTO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협정으로 취급하지만, 분쟁해결절차 사용에 있어서는 서로 합의한 국가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복수간 협정으로 취급하는 전략이다.

- (2) 조항별 개별협정 방식: 무역원활화 협정을 하나의 협정으로 취급하지 않고 GATT 5조, 8조, 10조의 내용을 따로 분리하여 3개의 협정을 협상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각 국가들이 자국의 무역원활화 수준에 따라 각 개별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 (3) 조항별 유예기간의 차별적 적용: 무역원활화 협정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단일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보다는 5조, 8조, 10조의 조항별 내용에 따라 유예기간을 차별적으로 정한다.

아래에서는 각 협정방식의 내용에 대해 상술한다. 한국은 이와 같은 내용을 협상과정에서 공식적 제안서, 또는 비공식적 제안서를 통해서 제안한 후 각 방식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WTO 회원국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주도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나. 다자간 협정내 복수간 협정: 분쟁해결절차의 사용 분리

1) 분쟁해결절차 사용 분리의 의의 및 적절성

개도국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는 무역원활화 협정의 구속력이다. 개도국이 무역원활화 협정에서 분쟁해결절차의 사용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반면, 무역원활화 추진국가들은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할 수 있어야만 실질적인 무역원활화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Annex D의 6조에 따르면 충분한 선진국의 지원이 없는 경우 개도국이 무역원활화 협정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선진국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Annex D의 6조를 해석할 수 있다.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이 조항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효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것은 무역원활화 협정을 다자간협정과 복수간협정의 혼합체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다자간(multilateral) 협정이란

모든 WTO 회원국들이 협상에 참여하고 체결된 협정을 준수하는 협정을 의미하고, 복수간(plurilateral) 협정이란 WTO 회원국들 중 일부 회원국들만이 협상에 참여하고 협정을 준수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현재 WTO에서는 민간 항공기 공정무역협정과 정부조달협정(GPA) 등 2개의 복수간 협정이 유지하고 있는데, 이 두 협정 모두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GPA의 운영을 통하여 복수간 협정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극복할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복수간협정은 소수의 회원국만 참여하는 형태지만 최종적 목표는 회원국의 참여 증가를 유도하여 최종적으로는 다자간 협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도쿄 라운드에서 체결한 복수간 반덤핑 협정이 UR에서 다자간 반덤핑 협정으로 발전한 사례도 있으나, GPA의 경우 도쿄 라운드에서 처음 체결되었지만 아직 다자간 협정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GPA는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과 투명성에 대한 각종 조건을 규정한다. 무역원활화와 같이 국내법령이나 규제에 상당히 민감한 분야이며, 가입국만이 GPA의 규정에 따라 국내 정부조달 법령과 절차를 개정해야 한다. GPA의 문제는 참여하고 있는 소수 참가국만이 개정작업에 참여할 수 있고 미가입 국가는 개정작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제외된 ‘외부’ 국가들은 GPA 내용에 영향을 주기 어려워 외부국가가 협정 및 협상에 참여할 인센티브가 줄게 된다. ‘내부’ 국가의 의사만 반영하는 구조가 가지는 한계성이다. 이 때문에 GPA는 복수간 협정에서 다자간 협정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역원활화 협정을 단순한 복수간 협정으로 체결하는 전략을 채택한다면 GPA에서와 같이 더 이상의 발전 없이 복수간 협정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무역원활화가 세계교역 증진에 기여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영구적으로 약화시킬 위험성이 크다.³⁶⁾

36) Lucenti(2003)는 무역원활화 협정이 복수간협정으로 체결될 경우, 일부 개도국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허용함으로써 개도국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정리

이 보고서의 제안은 GPA의 한계를 극복하는 혼용협정으로 협정문 협상에 있어서는 다자간협정 방식으로 진행하고, 분쟁해결절차 사용여부에 있어서는 복수간협정의 성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즉 협상과정에서는 모든 WTO 회원국이 동등한 입장으로 참여하여 무역원활화 협정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한다. 반면 분쟁해결절차 사용에 있어서는 상호 호혜의 원칙을 적용하여, 분쟁해결절차 사용을 합의한 국가만이 참여하여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 따라서 분쟁해결절차 미 참여국은 협정문 협상에 참여할 수 있지만 분쟁해결절차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여타 국가들이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따라서 각국은 자신의 특성과 경제적 득실을 반영하여 분쟁해결절차 사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지만, 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분쟁해결절차 사용에 참가할 것이다.

Annex D의 내용을 반영하여 선진국의 지원을 분쟁해결절차 적용대상으로 무역원활화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특정한 지원을 약속하고 그 내용을 무역원활화 협정문의 부록으로 포함하며, 이 부록에 따라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하기로 약속한 개도국에게만 선진국 지원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면 개도국의 협정문 참여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지원이 분쟁해결절차의 발효요건이 되기 때문에 개도국이 선진국 지원에 대한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선진국은 개도국 지원으로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무역원활화의 효과에 부정적이거나 선진국 지원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한 개도국, 또는 현 경제상황에서 시설투자의 여력이 없는 개도국은 분쟁해결절차 적용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각 국가는 그들의 환경이나 상황에 맞추어 분쟁해결절차의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협정문 체결 합의를 도출하는 데 유효한 전략이 된다.

3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무역원활화에 따른 선진국의 무역증진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DDA 전체 협상에서 선진국-개도국간 균형이 강조되며, 개도국은 분쟁해결절차 및 물적·인적 자원의 부족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역원활화를 단순한 다자간 협정으로 추진하는 경우 상당히 약한 수준의 협정으로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수준이 크지 않을 경우 개도국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규정들을 약화시키고자 노력할 것이고,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정은 별 효력이 없는 협정으로 전략할 것이다.

반면 전술한 바와 같이 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 다자간 협정과 복수간 협정의 혼합체로 무역원활화 협정을 체결하면 다자간 협정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융통성을 부과하고 복수간 협정의 단점을 피할 수 있다. 무역원활화 취약국가들은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역원활화 협정을 반대하거나 약화시킬 인센티브가 약하고, 무역원활화의 수준이 비교적 강한 국가는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하여 협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무역원활화 협정 추진국은 차기 협상라운드에서 분쟁해결절차 미적용 국가로 협정의 대상범위를 넓혀갈 수 있다.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들도 협상에 참여할 수 있어 그들의 의견이나 제안이 무역원활화 협정에 반영될 것이고, 따라서 향후 라운드에서 이들을 분쟁해결절차 적용국가로 전환시키고자 할 때 이들의 저항력은 크게 약화된다. 따라서 이러한 혼용협정은 기존 복수간협정보다 다자화가 훨씬 용이하다.

개도국이 제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우려사항은 분쟁해결절차가 쉽게 사용될 가능성이다. 무역원활화의 특징상 대다수 규제사항이 성실하게 준수됨에도 일부 사소한 실수로 의무 불이행이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 경우에도 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된다면 개도국에게 큰 부담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인 의도 또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만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하도록 무역원활화 협정에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주어진 기간 내에 비슷한 문제들이 자주 발생할 경우 또는 상대국이 받은 손해가 일정한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에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을 무역원활화 협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 국내 행정검토절차와 상소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할 수 있다. 물론 피소국이 이 규정을 악용하여 국내 상소절차를 지연시키면서 분쟁해결절차를 회피할 수 없도록 국내 행정검토절차나 상소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한다.

2) 실증분석

여기서는 과연 다자간협정과 복수간협정의 혼합체로 무역원활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실현가능한 대안인지, 또한 그럴 경우 장기적으로 복수간 협정이 다자간 협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실증 분석해보고자 한다.

(1) 참여국만이 무역원활화 수준을 개선하는 방식의 무역원활화 협정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거나, (2) 분쟁해결 절차 참여국 및 미참여국이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얻게 되는 교역증진 효과가 상호간에 비차별적일 경우 혼합체 형태의 무역원활화 협정체결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 (1)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늘리면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형태의 무역원활화 협정을 추진해야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부담스러워할 경우 협정은 유명무실한 형태로 귀결될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 (2)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선진국, 개도국 모두 분쟁해결절차 사용을 강제하는 협정에 참여할 경제적 유인이 없다. 선진국의 경우 개도국 지원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무역원활화 개선의 교역증대 효과를 향유할 수 있으므로 무임승차(free rider)의 인센티브가 발생한다.

개도국의 경우 분쟁해결절차 복수간 협정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역시 무임승차의 교역증진 효과를 향유할 수 있으므로 복수간 협정에 참여할 경제적 유인이 없고, 결국 복수간 협정은 다자간 협정으로 발전할 수 없다.

여기서는 분쟁해결절차를 복수간 협정으로 체결하는 경우 과연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3장의 시나리오 4(20% 개선), 시나리오 5(50% 개선)를 수정하여 모의실험 해보고자 한다. 즉 여태까지 무역원활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를 실행하여온 EU 및 APEC 국가들만이 복수협정을 체결하고 무역원활화 수준을 현수준에서 20% 개선하는 경우(시나리오 4-2)와 50% 개선하는 경우(시나리오 5-2)의 결과를 3장에서와 같이 8개의 대표 개도국, G-7 선진국, 그리고 한국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참여국만의 무역원활화 개선의 교역증진효과가 상당히 커서 협정문 분리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참여국의 교역증진효과가 미참여국(인도, 이집트, 베네수엘라, 브라질)의 교역증진효과를 크게 상회하여 무임승차의 문제가 거의 없으며, 장기적으로 다자간 협정으로 발전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충분히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시나리오 4-2(참여국의 20% 개선)의 정책실험 결과를 보면 참여 개도국(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페루)의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6.9%와 6.6%이고, 참여 선진국(G-7)의 수출입 증가율도 이와 유사하게 6.6%, 6.5%를 보이고 있다.³⁷⁾ 이에 비해 비참여 개도국(인도, 이집트, 베네수엘라, 브라질)의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0.4%와 0.2%로 참여국의 교역증가율을 크게 하회한다.³⁸⁾

37) 전회원국이 참여하는 시나리오 4의 경우 개도국의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7.2%, 7.1%이고 선진국의 경우 수출입 증가율은 모두 7.1%이다.

38) 비참여국의 경우 자국의 무역원활화에 따른 직접적 교역증진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며 참여국 교역증진에 따라 간접적으로 유발된 수출입이 증가할 뿐이다. 따라서 비참여국의 경우 총교역 증가액은 유발된 교역 증가액과 같다.

시나리오 5-2(참여국의 50% 개선)의 정책실험 결과를 보면 참여 개도국(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페루)의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15.9%와 15.3%이고, 참여 선진국(G-7)의 수출입 증가율도 각각 15.4%, 15.0%로 참여 개도국에 비해 약간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³⁹⁾ 이에 반해 비참여 개도국(인도, 이집트, 베네수엘라, 브라질)의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0.9%와 0.4%로 참여국의 교역증가율을 크게 하회한다.

이와 같은 모의실험 결과는 EU 및 APEC 등 주요회원국이 복수협정 형태로 무역원활화를 추진할 경우(시나리오 4-2 및 시나리오 5-2),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회원국이 협정에 참여하는 경우(시나리오 4, 시나리오 5)에 비해 큰 차이가 없으며, 또 비참여국의 교역증진효과가 참여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협정문 분리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이면서 동시에 향후 다자간 협정으로 발전할 경제적 유인을 내재하고 있어 향후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시나리오 4-2, 5-2의 결과는 한국이 분리협정 추진으로 상대적으로 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9)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시나리오 5의 경우 개도국의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16.9%, 16.51%이고 선진국의 경우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16.6%, 16.4%임.

〈표 5-1〉 분쟁절차 분리의 효과: 시나리오 4-2(EU, APEC 국가의 20% 개선)

	수 출	수출 증가	유발 수출	총수출 증가	증가율	수 입	수입 증가	유발 수입	총수입 증가	증가율
한 국	126,301	8,318	398	8,716	6.9	107,532	6,984	295	7,279	6.8
참여개도국	73,240	4,700	329	5,029	6.9	53,596	3,418	129	3,546	6.6
미참여개도국	23,398	(0)	93	93	0.4	28,327	(0)	69	69	0.2
선진국	344,013	21,805	992	22,796	6.6	368,049	23,137	884	24,021	6.5
인 도	27,624	0	112	112	0.4	33,380	0	67	67	0.2
인도네시아	48,459	3,048	171	3,219	6.6	26,491	1,658	75	1,733	6.5
이집트	3,221	(0)	15	15	0.5	12,953	(0)	43	43	0.3
필리핀	29,706	1,891	125	2,017	6.8	27,525	1,752	97	1,849	6.7
중 국	208,851	13,545	998	14,543	7.0	152,864	9,870	330	10,200	6.7
페 루	5,944	315	20	335	5.6	7,504	390	13	403	5.4
베네수엘라	17,408	(0)	100	100	0.6	13,146	(0)	38	38	0.3
브라질	45,339	0	143	143	0.3	53,828	0	129	129	0.2
미 국	636,876	41,923	1,507	43,430	6.8	965,378	63,643	2,325	65,968	6.8
캐나다	237,712	16,089	1,357	17,446	7.3	222,065	14,945	764	15,709	7.1
영 국	235,289	15,268	549	15,817	6.7	276,929	17,619	634	18,253	6.6
독 일	465,211	27,592	1,001	28,592	6.1	390,445	22,279	707	22,986	5.9
프랑스	265,910	16,082	781	16,863	6.3	264,842	15,268	708	15,976	6.0
이탈리아	201,143	12,377	466	12,843	6.4	186,372	11,148	398	11,546	6.2
일 본	365,948	23,303	1,281	24,584	6.7	270,310	17,053	654	17,707	6.6

〈표 5-2〉 분쟁절차 분리의 효과: 시나리오 4-2(EU, APEC 국가의 50% 개선)

	수 출	수출 증가	유발 수출	총수출증 가	증가율	수 입	수입 증가	유발 수입	총수입 증가	증가율
한 국	126,301	19,275	922	20,196	16.0	107,532	16,183	684	16,867	15.7
참여개도국	73,240	10,890	761	11,652	15.9	53,596	7,919	298	8,217	15.3
미참여개도국	23,398	(0)	214	214	0.9	28,327	(0)	160	160	0.6
선진국	344,013	50,525	2298	52,823	15.4	368,049	53,611	2,049	55,660	15.0
인 도	27,624	0	259	259	0.9	33,380	0	156	156	0.5
인도네시아	48,459	7,064	396	7,460	15.4	26,491	3,843	173	4,015	15.2
이집트	3,221	(0)	34	34	1.0	12,953	(0)	99	99	0.8
필리핀	29,706	4,382	291	4,673	15.7	27,525	4,059	225	4,284	15.6
중 국	208,851	31,386	2,313	33,699	16.1	152,864	22,870	766	23,636	15.5
페 루	5,944	730	46	775	13.0	7,504	905	30	935	12.5
베네수엘라	17,408	(0)	233	233	1.3	13,146	(0)	89	89	0.7
브라질	45,339	0	332	332	0.7	53,828	0	299	299	0.6
미 국	636,876	97,143	3,491	100,634	15.8	965,378	147,471	5,387	152,858	15.8
캐나다	237,712	37,281	3,143	40,424	17.0	222,065	34,631	1,770	36,401	16.4
영 국	235,289	35,378	1,272	36,650	15.6	276,929	40,825	1,469	42,294	15.3
독 일	465,211	63,934	2,319	66,253	14.2	390,445	51,625	1,638	53,262	13.6
프랑스	265,910	37,265	1,809	39,074	14.7	264,842	35,379	1,640	37,018	14.0
이탈리아	201,143	28,678	1,080	29,758	14.8	186,372	25,832	921	26,753	14.4
일 본	365,948	53,997	2,968	56,966	15.6	270,310	39,515	1,516	41,031	15.2

다. 조항별 협정체결

1) 협정문 분리의 의의 및 적합성

개도국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또 하나의 전략으로 무역원활화 협정을 단일협정 방식이 아니라 GATT 5조, 8조와 10조 각각의 협정체결로 무역원활화 협정을 분리하는 것이다.

무역원활화의 대상이 되는 조항은 GATT 5조(화물의 통과), 8조(수출입 절차와 수수료) 및 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 투명성)의 3가지로 서로 상이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GATT 10조는 정부의 규제투명을 다루는

반면, GATT 5조와 8조는 통관절차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다루어지는 내용도 다르고, 각 내용에 대한 협상의 난이도도 다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투명성과 관련된 GATT 10조에 있어서는 이미 상당수준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 GATT 외 UR 협정에서도 투명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협정이 많으며, TBT 협정이나 SPS 협정에서도 정보제공의 단일창구(one-stop window) 개념이 사용된다. 현재 제출된 무역원활화 제안서들에서도 GATT 10조에 대한 내용이 가장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GATT 10조에 대한 내용은 비교적 수월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GATT 8조나 5조의 경우, 원칙마저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같은 제안서에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만 제시하는 반면, 인가된 무역업체 제도, 사전판정 제도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하고 기술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통관절차는 광범위하고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술적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협상을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GATT 5조, 8조와 10조의 내용을 따로 분리시켜 각 조마다 하나의 양해서(Understanding)나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기존 WTO/UR 협정문을 살펴 보아도 각 조항의 내용을 분리하여 다루는 것이 바람직 하다. WTO/UR 협정을 살펴보면 GATT 협정의 개별조항을 설명하는 양해서가 4개 있고, GATT 협정에 제시된 내용의 집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협정이 2개 있다.⁴⁰⁾

10조에 대한 협상의 진전이 5조나 8조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이 세 조항이 다루는 주제와 내용이 차별적임을

40)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GATT 1994 II:1(b)조 해석에 대한 양해서」, 「GATT 1994 14조 해석에 대한 양해서」, 「GATT 1994 14조의 해석에 대한 양해서」, 「GATT 1994 6조의 집행에 대한 협정(반덤핑협정)」 「GATT 1994 7조의 집행에 대한 협정(관세평가협정)」 등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GATT의 조항을 보조하는 협정의 대다수는 오직 1개 조항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GATT의 한 개 이상의 조항을 설명하는 양해서나 협정은 한 개의 주제만을 다루고 있다.

고려할 때 WTO에서 하나의 협정문으로 이 세 조항의 내용을 묶는 것보다는 각 조항마다 따로 협상을 진행하고, 그 협상의 결과에 따라 5조, 8조, 10조 개별적으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무역원활화 협정 협상을 원활하게 하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5조나 8조는 상당히 자세하고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각 조항의 내용을 따로 다룸으로써 각 조항에 적합한 수준이나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응할 수 있고, 개도국 지원에 있어서도 각 조항에 적합한 지원이나 도입 유예기간을 차별화할 수 있다. 즉 조항마다 독립적인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각 GATT 조항에 대한 유예사항이나 지원을 개도국들의 상황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진다.

협상 중 일부 조항에 대한 협정의 체결이 지연된다 하여도, 다른 조항들에 대한 협정은 이와 분리되어 조기 타결될 수 있다. 현재 5조나 8조보다는 10조에 대한 회원국간의 마찰이 비교적 적으므로 10조에 대한 독립적 협정을 먼저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2) 실증분석

이 절에서는 우선 각 조항별로 각국의 무역원활화 수준을 개선하였을 때의 교역증진효과를 살펴본다. 이후 10조(무역규정의 공포 및 시행: 투명성) 및 8조(수출입절차 및 수수료) 협정을 개별적으로 추진할 경우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다. 각 조항별 협정체결의 교역증진효과가 미미할 경우 협정문 분리추진이라는 이 보고서의 제안은 현실성이 떨어질 것이나 반대의 경우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한다. 또한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10조의 무역원활화 개선효과가 미미하고 8조의 개선효과가 훨씬 크다면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을 10조가 아니라 8조와 연계하는 전략도 검토할 수 있다.

8조(수출입절차 및 수수료)에 있어 각국의 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변

수로 3장에서 무역원활화 단일지표 작성에 사용한 바 있는 World Economic Forum이 발간하는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의 비정규적 지불(irregular payments) 항목을 사용하였다. <부표 1-2>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 항목은 연도별로 설문문항이 다소 변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수출입 허가, 사업 라이선스, 환율통제, 관세평가와 관련된, 즉 통관절차와 관련된 비정규적 형태의 지불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GATT 8조의 지표 변수로 적당하다. 다음 GATT 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 즉 투명성)의 지표변수로 역시 3장에서 사용한 바 있는 World Economic Forum의 숨겨진 교역장벽(hidden trade barriers)에 대한 설문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 항목은 2000년까지는 수입을 저해하는 숨겨진 형태의 장벽에 대한 평가 항목이었으나 이후 수출입 모두에 있어서의 숨겨진 장벽의 정도에 대한 평가로 발전하였다(부표 1-2 참고). 그러나 화물의 통과에 관한 5조와 관련된 지표변수를 찾기가 어려워 5조 관련 개선조치의 경제적 효과는 추정할 수 없었다.

3장에서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8조(수출입절차 및 수수료) 및 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 투명성)의 개선이 양국간 교역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수출함수는 아무런 제약 없이 추정하였으나, 수입함수의 경우 무역원활화 지수의 계수가 수출함수에서의 계수와 같다는 제약하에서 추정하였다.

<표 5-3>에 의하면 8조(수출입절차 및 수수료) 지표의 계수가 0.202(통계적 신뢰수준 99%)로 8조 지표의 10% 개선으로 수출입이 각각 2.02% 증대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10조(투명성) 지표의 추정계수는 0.088(통계적 신뢰수준 99%)로 각국의 투명성 정도가 10% 개선될 경우 양국간 교역량은 0.88% 정도 증가함을 보여준다. 3장에서 무역원활화 단일지표의 계수가 0.362이었음을 고려하면 8조 개선에 의한 교역증진효과가 무역원활화 전체의 개선효과에서 차지하는 기여도가 약 56%에 이르며, 10조(투명성)의 기여도는 24% 정도에 달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8

조(수출입절차 및 수수료)에 대한 협정체결이 10조(투명성) 협정체결보다 그 파급효과가 커서 2.3배 정도 강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표 5-3〉 협정문 분리의 경제적 효과: 8조(수출입절차 및 수수료),
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 투명성)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10조(투명성)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Constant	-29.639** (-25.014)	-29.985** (-32.743)	-29.938** (-25.380)	-29.883** (-32.702)
Log(GDPi)	0.624** (21.629)	0.879** (39.191)	0.627** (21.850)	0.876** (39.135)
Log(GDPj)	0.798** (25.825)	0.548** (22.629)	0.796** (25.873)	0.532** (22.016)
Log(Per Capita GDPi)	0.383** (10.077)	0.170** (5.909)	0.386** (10.253)	0.174** (6.065)
Log(Per Capita GDPj)	0.197** (4.931)	0.377** (12.826)	0.222** (5.610)	0.411** (13.967)
Log(Distance)	-0.874** (-12.044)	-0.792** (-14.496)	-0.873** (-12.146)	-0.787** (-14.397)
Log(무역원활화지수)	0.202** (3.696)	0.202** (0.000)	0.088* (1.224)	0.088** (0.000)
Border	0.396* (1.159)	0.363* (1.420)	0.391* (1.155)	0.366* (1.431)
Language	0.862** (6.193)	0.791** (7.583)	0.871** (6.307)	0.810** (7.747)
EU	-0.153+ (-0.659)	-0.231* (-1.319)	-0.168* (-0.729)	-0.238* (-1.355)
NAFTA	0.703* (0.682)	1.034* (1.333)	0.697* (0.682)	1.065* (1.371)
AFTA(ASEAN)	1.754** (3.155)	1.397** (3.254)	1.739** (3.154)	1.388** (3.227)
MERCOSUR	0.228+ (0.215)	0.281+ (0.353)	0.211+ (0.201)	0.255+ (0.319)
Adj R2	0.972281	0.703949	0.972212	0.701742
No. of Observation	11973	12272	11975	12274

앞에서의 추정결과를 고려할 때, 또 WTO/DDA에서의 논의과정을 고려할 때 항목별로 협정문을 체결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제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는 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동일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조항별로 정책실험을 할 때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즉 조항별로 무역원활화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교역증진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선진국과 개도국에 미치는 효과가 차별적인지 아닌지를 대표적인 16개국(한국, 8개 개도국, G-7 선진국)에 한하여 정리하여 그 결과를 요약한다.

- 시나리오 1: 무역원활화 지수가 평균이하인 국가가 평균수준으로 개선
- 시나리오 2: 무역원활화 지수가 평균이하인 국가가 현 수준의 50% 개선
- 시나리오 3: 평균이하 국가는 50% 개선하고, 평균이상 국가는 20% 개선

10조(투명성)의 시나리오별 결과는 <표 5-4>에서 <표 5-6>에 정리하였고,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협정에 따른 개선효과는 <표 5-7> ~ <표 5-9>에 정리하였다.

10조 개선의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를 보면, 우선 시나리오 1의 경우 개도국의 경우 수출 및 수입을 0.7% 정도 증대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각각 0.2%, 0.3%의 교역 증진효과가 발생한다. 시나리오 2의 경우 개도국의 경우 수출입을 각각 1.4%, 1.3% 증대시키나 선진국은 연평균 각각 0.5%, 0.6%의 수출입 증가가 발생한다. 시나리오 3의 경우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20% 개선에 참여함으로써 선진국의 수출입 증가율이 2.2%에 이르고 개도국에서의 교역증가율이 선진국을 상회하고 있다.

3장에서와 같이 10조 관련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더 많은 이익을 향유하고 있어 선진국이 개도국의 관련투자를 전액 부담할 필요는 없으며, 따라서 최빈개도국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

하다. 개도국의 경우 자발적인 무역원활화로 교역증진의 효과를 극대화하므로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제학적 인센티브가 분명히 존재한다.

〈표 5-4〉 10조(투명성) 개선의 효과: 시나리오 1

	수 출	수출 증가	유발 수출 증가	총수출 증가	증가율	수 입	수입 증가	유발 수입 증가	총수입 증가	증가율
개도국	48,319	413	32	444	0.7	40,961	288	20	308	0.7
선진국	344,013	767	122	889	0.2	368,049	861	128	990	0.3
한 국	126,301	1,930	63	1,994	1.6	107,532	1,312	66	1,378	1.3
인 도	27,624	152	15	167	0.6	33,380	183	12	195	0.6
인도네시아	48,459	411	32	443	0.9	26,491	184	17	201	0.8
이집트	3,221	13	2	14	0.4	12,953	46	6	52	0.4
필리핀	29,706	249	18	268	0.9	27,525	206	22	228	0.8
중 국	208,851	2,125	150	2,275	1.1	152,864	1,287	77	1,363	0.9
페 루	5,944	38	3	41	0.7	7,504	49	3	52	0.7
베네수엘라	17,408	91	13	104	0.6	13,146	71	6	77	0.6
브라질	45,339	223	19	243	0.5	53,828	275	19	294	0.5
미 국	636,876	1,403	213	1,615	0.3	965,378	2,287	373	2,660	0.3
캐나다	237,712	86	152	239	0.1	222,065	200	102	302	0.1
영 국	235,289	374	66	440	0.2	276,929	588	90	678	0.2
독 일	465,211	1,086	121	1,207	0.3	390,445	846	97	942	0.2
프랑스	265,910	432	86	518	0.2	264,842	488	82	570	0.2
이탈리아	201,143	558	57	615	0.3	186,372	435	50	485	0.3
일 본	365,948	1,429	157	1,586	0.4	270,310	1,185	106	1,290	0.5

〈표 5-5〉 10조(투명성) 개선의 효과: 시나리오 2

	수 출	수출 증가	유발 수출 증가	총수출 증가	증가율	수 입	수입 증가	유발 수입 증가	총수입 증가	증가율
개도국	48,319	753	47	800	1.4	40,961	553	27	580	1.3
선진국	344,013	1,639	251	1,890	0.5	368,049	1,813	227	2,040	0.6
한 국	126,301	2,865	105	2,970	2.4	107,532	2,018	71	2,089	1.9
인 도	27,624	261	29	290	1.0	33,380	319	21	340	1.0
인도네시아	48,459	823	37	860	1.8	26,491	385	19	404	1.5
이집트	3,221	24	4	29	0.9	12,953	94	13	107	0.8
필리핀	29,706	446	26	473	1.6	27,525	377	23	400	1.5
중 국	208,851	3,682	207	3,890	1.9	152,864	2,316	85	2,401	1.6
페 루	5,944	80	6	86	1.5	7,504	103	5	108	1.4
베네수엘라	17,408	191	28	218	1.3	13,146	179	12	192	1.5
브라질	45,339	518	37	555	1.2	53,828	647	37	684	1.3
미 국	636,876	3,166	321	3,487	0.5	965,378	4,697	460	5,157	0.5
캐나다	237,712	180	320	501	0.2	222,065	339	204	543	0.2
영 국	235,289	748	145	893	0.4	276,929	1,106	178	1,284	0.5
독 일	465,211	2,440	267	2,707	0.6	390,445	2,085	182	2,267	0.6
프랑스	265,910	982	197	1,179	0.4	264,842	1,161	185	1,345	0.5
이탈리아	201,143	1,134	130	1,264	0.6	186,372	1,031	118	1,150	0.6
일 본	365,948	2,823	375	3,198	0.9	270,310	2,275	258	2,533	0.9

〈표 5-6〉 10조(투명성) 개선의 효과: 시나리오 3

	수 출	수출증 가	유발 수출 증가	총수출 증가	증가율	수 입	수입 증가	유발 수입 증가	총수입 증가	증가율
개도국	48,319	1,204	215	1,419	2.8	40,961	980	97	1,077	2.6
선진국	344,013	6,507	1,178	7,685	2.2	368,049	7,061	991	8,052	2.2
한 국	126,301	3,644	427	4,071	3.2	107,532	2,860	252	3,112	2.9
인 도	27,624	594	129	723	2.6	33,380	731	77	808	2.4
인도네시아	48,459	1,245	151	1,396	2.9	26,491	644	64	708	2.7
이집트	3,221	66	19	85	2.6	12,953	264	52	315	2.4
필리핀	29,706	731	124	854	2.9	27,525	666	80	746	2.7
중 국	208,851	5,441	983	6,424	3.1	152,864	3,787	290	4,077	2.7
페 루	5,944	141	24	166	2.8	7,504	180	18	198	2.6
베네수엘라	17,408	389	125	514	3.0	13,146	328	48	376	2.9
브라질	45,339	1,025	167	1,192	2.6	53,828	1238	152	1390	2.6
미 국	636,876	12,119	1,621	13,740	2.2	965,378	18,602	2,286	20,889	2.2
캐나다	237,712	3,968	1,566	5,534	2.3	222,065	3,844	888	4,732	2.1
영 국	235,289	4,244	681	4,925	2.1	276,929	5,182	748	5,930	2.1
독 일	465,211	8,923	1,235	10,158	2.2	390,445	7,503	807	8,310	2.1
프랑스	265,910	4,872	959	5,830	2.2	264,842	4,970	857	5,827	2.2
이탈리아	201,143	3,902	593	4,495	2.2	186,372	3,574	500	4,074	2.2
일 본	365,948	7,521	1,592	9,112	2.5	270,310	5,752	850	6,602	2.4

다음으로 8조(수출입절차 및 수수료) 개선의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를 정리한다. 시나리오 1의 경우 개도국의 수출 및 수입이 각각 1.3%, 1.2%에 이르고 있어 10조(투명성) 개선의 효과를 크게 상회한다. 선진국의 교역은 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10조 개선의 효과를 상회하지만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교역증대 효과를 향유한다. 시나리오 2의 경우 개도국의 수출입 증가율이 각각 2.2%, 2.1%로 선진국의 0.9%보다 큰 교역증대효과가 발생한다. 역시 개도국의 경우 10조(투명성) 개선의 효과

1.4%, 1.3%를 크게 상회한다. 시나리오 3의 경우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개도국의 수출입 증대효과가 각각 5.4%, 5.2%로 선진국의 4.6%, 4.5%를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투명성 개선의 효과 2.8%, 2.6%를 거의 2% 포인트 상회하고 있다.

10조 개선의 효과와 같이 8조 관련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더 많은 이익을 향유하고 있어, 개도국의 경우 자체부담으로 무역원활화 개선을 부담하는 경제학적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따라서 선진국이 개도국 관련투자를 전액 부담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작아 개도국 지원에 있어 최빈개도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결과는 8조(수출입절차 및 수수료) 개선의 효과가 10조(투명성) 개선의 효과를 크게 상회하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WTO/DDA에서 10조와 관련한 개도국의 입장이 8조에 비해 탄력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겠다. 따라서 조항별로 협정문 분리를 추구함에 있어 10조 협정문 체결에서는 선진국이 최빈개도국 지원만을 담당하면서, 선진국의 지원을 8조 협정문 체결에 연계하는 전략이 경제학적으로는 바람직할 것이다. 선진국의 입장에서 보면 8조 관련 개선으로 얻는 교역증대효과가 10조의 경우보다 크기 때문이다.

〈표 5-7〉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개선의 효과: 시나리오 1

	수 출	수출 증가	유발 수출 증가	총수출 증가	증가율	수 입	수입 증가	유발 수입 증가	총수입 증가	증가율
개도국	48,319	521	32	553	1.3	40,961	445	20	465	1.2
선진국	344,013	1,625	122	1,746	0.5	368,049	1,647	128	1,775	0.5
한 국	126,301	939	63	1,002	0.8	107,532	764	66	829	0.8
인 도	27,624	219	15	233	0.8	33,380	270	12	282	0.8
인도네시아	48,459	655	32	687	1.4	26,491	320	17	337	1.3
이집트	3,221	29	2	31	1.0	12,953	114	6	120	0.9
필리핀	29,706	407	18	425	1.4	27,525	317	22	340	1.2
중 국	208,851	1,779	150	1,929	0.9	152,864	1,305	77	1,382	0.9
페 루	5,944	103	3	106	1.8	7,504	132	3	135	1.8
베네수엘라	17,408	216	13	229	1.3	13,146	139	6	146	1.1
브라질	45,339	761	19	780	1.7	53,828	961	19	981	1.8
미 국	636,876	3,215	213	3,428	0.5	965,378	4,394	373	4,767	0.5
캐나다	237,712	172	152	324	0.1	222,065	245	102	347	0.2
영 국	235,289	844	66	910	0.4	276,929	1,036	90	1,126	0.4
독 일	465,211	2,252	121	2,373	0.5	390,445	1,781	97	1,878	0.5
프랑스	265,910	975	86	1,061	0.4	264,842	967	82	1,050	0.4
이탈리아	201,143	909	57	966	0.5	186,372	907	50	957	0.5
일 본	365,948	3,005	157	3,162	0.9	270,310	2,199	106	2,304	0.9

〈표 5-8〉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개선의 효과: 시나리오 2

	수 출	수출 증가	유발 수출 증가	총수출 증가	증가율	수 입	수입 증가	유발 수입 증가	총수입 증가	증가율
개도국	48,319	857	47	904	2.2	40,961	740	27	767	2.1
선진국	344,013	2,954	251	3,205	0.9	368,049	2,982	227	3,208	0.9
한 국	126,301	1,691	105	1,796	1.4	107,532	1,304	71	1,375	1.3
인 도	27,624	375	29	403	1.5	33,380	453	21	474	1.4
인도네시아	48,459	1,218	37	1,255	2.6	26,491	593	19	612	2.3
이집트	3,221	55	4	59	1.8	12,953	215	13	228	1.8
필리핀	29,706	596	26	622	2.1	27,525	498	23	521	1.9
중 국	208,851	2,938	207	3,146	1.5	152,864	2,243	85	2,328	1.5
페 루	5,944	163	6	169	2.8	7,504	206	5	211	2.8
베네수엘라	17,408	386	28	414	2.4	13,146	300	12	313	2.4
브라질	45,339	1,126	37	1,163	2.6	53,828	1,409	37	1,446	2.7
미 국	636,876	5,641	321	5,962	0.9	965,378	7,763	460	8,222	0.9
캐나다	237,712	297	320	618	0.3	222,065	428	204	632	0.3
영 국	235,289	1,604	145	1,749	0.7	276,929	1,937	178	2,116	0.8
독 일	465,211	4,464	267	4,731	1.0	390,445	3,421	182	3,603	0.9
프랑스	265,910	2,162	197	2,359	0.9	264,842	2,047	185	2,232	0.8
이탈리아	201,143	1,429	130	1,559	0.8	186,372	1,424	118	1,542	0.8
일 본	365,948	5,080	375	5,455	1.5	270,310	3,852	258	4,111	1.5

〈표 5-9〉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개선의 효과: 시나리오 3

	수 출	수출 증가	유발 수출 증가	총수출 증가	증가율	수 입	수입증 가	유발 수입 증가	총수입 증가	증가율
개도국	48,319	2,295	215	2,510	5.4	40,961	1,953	97	2,050	5.2
선진국	344,013	14,576	1,178	15,754	4.6	368,049	15,496	991	16,487	4.5
한 국	126,301	5,691	427	6,118	4.8	107,532	4,769	252	5,021	4.7
인 도	27,624	1,248	129	1,376	5.0	33,380	1,507	77	1,584	4.7
인도네시아	48,459	2,503	151	2,653	5.5	26,491	1,327	64	1,391	5.2
이집트	3,221	152	19	171	5.3	12,953	607	52	659	5.1
필리핀	29,706	1,450	124	1573	5.3	27,525	1,313	80	1,393	5.1
중 국	208,851	9,491	983	10,474	5.0	152,864	6,998	290	7,288	4.8
페 루	5,944	315	24	339	5.7	7,504	397	18	416	5.5
베네수엘라	17,408	870	125	995	5.7	13,146	662	48	710	5.4
브라질	45,339	2,334	167	2501	5.5	53,828	2,811	152	2,964	5.5
미 국	636,876	27,082	1,621	28,702	4.5	965,378	40,623	2,286	42,910	4.4
캐나다	237,712	9,095	1,566	10,661	4.5	222,065	8,580	888	9,468	4.3
영 국	235,289	9,736	681	10,417	4.4	276,929	11,487	748	12,235	4.4
독 일	465,211	19,974	1,235	21,209	4.6	390,445	16,582	807	17,389	4.5
프랑스	265,910	11,199	959	12,158	4.6	264,842	11,094	857	11,951	4.5
이탈리아	201,143	8,355	593	8,949	4.4	186,372	7,798	500	8,298	4.5
일 본	365,948	16,592	1,592	18,183	5.0	270,310	12,311	850	13,161	4.9

라. 유예기간의 차별적 적용

WTO에서 개도국에게 부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특혜가 협정 유예기간의 연장이다. UR 협정에서는 다소 짧은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것이 현재 개도국의 가장 중요한 불만사항으로, 이를 반영하여 DDA에서는 전체적으로 UR 협정시보다 긴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무역원활화 협상의 기준이 될 Annex D에 따르면 각 국가는 인프라에 대한 무리한 투자를 의무화하지 않도록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인프라에 대한 충분한 투자 없이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이익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과 물질적 지원, 그리고 무역원활화가 자국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강조하여 자발적인 인프라 시설투자의 확대를 유인해야 하며, 그 방안으로 인프라 투자와

유예기간 그리고 선진국 지원을 서로 연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인프라 투자를 실행하는 국가에는 추가적 유예기간 연장 및 선진국의 지원을 보장하고, 인프라 투자를 기피하는 국가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유예기간을 설정하면서 최소한의 지원만을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개별적 상황과 조건을 반영할 수 있는 차별적인 유예기간 제도 및 선진국이 지원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모든 개도국을 일괄적으로 취급하는 제도로는 유예기간 차별화 전략을 실행할 수 없다.

개도국의 유예기간은 협상의 대상이 되므로 이 보고서에서 다루기는 어렵지만, UR에서의 5~10년의 유예기간 설정을 고려할 때 DDA에서의 유예기간은 최고 10~20년 정도가 될 것이다. 유예기간이 길수록 수출국의 경제적 이익은 지연될 것이지만, 유예기간이 단축될수록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요구가 상당히 어려워지므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5조, 8조와 10조에 대한 협정을 분리시키는 경우 10조에 대해서는 5~10년의 유예기간, 5조와 8조에 대해서는 10~20년의 유예기간이 적합하다.⁴¹⁾ 물론 제시된 유예기간은 각국의 무역원활화 수준, 선진국 지원의 수준 등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3. 한국의 직접지원의 내용 및 방향

무역원활화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로 효율적인 무역원활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이 필수 불가결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은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선진국보다 큰 교역증진효과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도국 지원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41) 유예기간의 의미를 경제적 효과분석과 연결하여 생각하면, 무역원활화 개선조치로 선진국에 발생하는 교역증대 효과의 발생시기를 유예기간만큼 지연시키는 것이다. 즉, 앞 절에서 분석된 선진국이 향유할 수 있는 교역증대효과의 크기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시점을 유예기간만큼 지연시키는 것이다.

다.⁴²⁾ 한국은 무역원활화를 포함한 싱가포르 이슈들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한 국가들 중 하나이며, 선진국 수준의 무역원활화 조치들을 이미 도입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물적 및 인적 지원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스스로 개도국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개도국에 대한 물적 및 인적 지원이 소홀한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 해외지원(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규모와 1인당 GDP, IT와 전자기술 수준, 그리고 무역의 규모로 볼 때, 한국을 개도국이라고 보는 국가들은 없다(농업부문 예외). 따라서 한국이 개도국에게 아무 지원도 없이 무역원활화 협상을 시작하고자 하면 개도국에 대한 설득이 어려울 뿐 아니라 협상에 있어서의 신뢰도 또한 약해진다.

다음에서는 한국의 직접적 지원전략을 고려해보기로 한다. 우선 WTO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각종 인적 및 물적 지원의 종류를 설명한다.⁴³⁾ 그 다음에 한국이 제공할 지원의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서 한국의 ODA 현황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무역원활화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교육을 하나의 패키지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양자적 종합 프로젝트 지원을 강조한다.

가. 직접적 지원의 형태

WTO 협상차원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개도국 지원방법은 세미나 또

42) 3장의 정책 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분야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은 선진국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무역원활화 지수가 평균이하인 국가가 평균수준으로 개선되는 시나리오 1의 결과를 보면 수출입이 각각 1.5%, 1.2% 증대되고 있어 선진국의 0.8%의 수출입 증대효과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표 3-3 참고).

43) 이러한 지원은 ODA 범위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

는 단기과정 교육이다. 교육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에게 기술협력이나 역량제고 지원으로 교육을 많이 약속한다. 한국도 역시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을 통하여 외국인 공무원들을 한국으로 초대하고, 그들에게 각종 단기적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무역원활화 협정추진에 있어 교육만을 가지고 개도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대다수의 교육과정이 세미나 같은 단기적 또는 일회성 교육이기 때문에 개도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적자원과 관련한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성이 있다.

무역원활화 협정추진에 있어 개도국에 대한 물적지원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통관서류 및 절차의 전자화에 있어 컴퓨터, 서버 등 전자장비의 구축이 필수불가결하며, 통관절차 개선을 위해 새로운 통관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개도국도 많다.

물적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무역원활화 추진국이 함께 무역원활화 기술지원 및 역량제고 지원을 위한 국제적 기금을 설립하고, 한국은 여기에 일부자금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자금의 형태로 개도국 지원이 이루어지고, 수혜 개도국은 이 자금을 활용하여 무역원활화 관련 프로젝트를 나름대로 계획하고 비교적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개도국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지원형태이다. 그러나 기금의 총규모와 지원국 각자가 납부할 몫을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다. 각 국가가 자국의 지원을 최소화하고 여타 국가들의 지원을 최대화하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또한 어떤 개도국에 어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할 것인가 등의 배분문제에 대하여 기금제공 국가간의 마찰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이 방식의 경우 한국은 기금구성에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여율을 가지게 될 것이고 기금 사용 결정에 영향력이 약할 것이다.

둘째는 특정 개도국과의 양자적 차원에서 무역원활화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또한 무상원조 방식(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개도국에 자금을 이전하는 기부금 형태)과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유상원조 방식 또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⁴⁴⁾

셋째, 프로젝트 위주로 다른 국가와 함께 특정 개도국에게 직접적인 물적 및 인적 지원을 제공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한국이 다른 지원국과 공동으로 특정 개도국에 컴퓨터 센터 설립을 약속하고 이에 필요한 컴퓨터 하드웨어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한국의 산업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동시에 한국 기업에도 구체적인 도움이 된다. 즉 한국은 컴퓨터 등 전자제품이나 IT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전자기술 및 IT 강국이라는 점을 부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가 국산 컴퓨터를 구입하여 개도국에 지원해주는 과정에서 파생적인 경제적 이득을 한국기업에 제공할 수도 있다.⁴⁵⁾ 그러나 다른 국가와 함께 프로젝트 원조를 실시하는 경우 국제적 기금의 경우와 같이 참여국가간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다.

넷째는 한국과 수원국 양자차원에서 프로젝트 위주로 직접적인 물적 및 인적자원을 공여하는 형태의 방식이다. 한국이 단독으로 특정 개도국

44) 과거에 일부 선진국은 자금을 제공하면서 자금사용에 있어서 각종 조건을 제시하고 자금의 용도를 제한한 적이 있었다(예를 들어 A국이 B국에 자금을 공여하면서 자금을 A국 생산물품 수입결제대금으로 사용하도록 제한). 이러한 형태로 조건을 붙이는 것을 **tying**이라 하고, 이러한 조건이 붙은 원조를 조건부(**tied**) 원조라고 하는데, 지원국 차원에서는 자국수출을 간접적으로 돕는다는 이점이 있었지만, 개도국 입장에서는 자금사용상의 제한으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개도국에서 조건부 원조에 대한 선호가 낮아 2001년부터 OECD DAC 국가들은 이러한 조건부 원조를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내용은 www.koreaexim.go.kr/web/edcf/M05/S01/s01-3.html 에서, 또는 OECD(2001b)에서 찾을 수 있다. 아직 한국이 DAC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OECD 회원국으로서 타이드 원조에 대한 조건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45) 여기서 정부는 컴퓨터를 구매조달해야 하는데, 이 때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외국기업들도 구매절차, 즉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국기업이 낙찰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이다.

에 대하여 무역원활화 관련시설을 종합적으로 구축하여주는 것이 이 경우이다. 예를 들면 특정 개도국에 컴퓨터 센터를 구축해주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문가 및 교육의 지원 등 모두를 제공해주는 것이다.⁴⁶⁾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이 프로젝트를 무상 또는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갖는 유상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개도국에게는 최소금리 융자 등 유상원조 형태의 지원이 적합할 것이다.

다양한 시설에 대하여 양자차원 프로젝트의 지원이 가능하다. 항만 효율성이 뒤쳐진 낙후국가에 대해서 기존 항만개조를 지원할 수도 있고, 새로운 항만을 건설해줄 수 있다. 통관절차 전산화를 추진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교육을 종합적으로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조건부 원조를 적합하게 활용하면 한국기업이 프로젝트의 대부분에 참여할 수 있다. 프로젝트를 총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 형태의 지원방식은 70년대, 80년대에 수행하였던 플랜트 수출과 유사하다. 한국이 건설업자나 공급업체의 선정 등 지원에 대한 모든 측면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면에서 오히려 한국에게 유리하다.

위에서 제시한 4가지 형태의 지원방식 모두가 ODA의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ODA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한국의 ODA 실적을 일단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ODA 수준이 비교적 낮은 편이므로 ODA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개도국 지원 중 일부를 전략적으로 무역원활화의 물적지원에 사용함으로써 개도국 지원을 강화하고 WTO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동시에 국내 공급업자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 향후 한국 수출업체 등 무역원활화와 관련되는 국내업체 모두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역원활화 개도국지원을 ODA 확

46) 여기서도 역시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외국기업들도 프로젝트 수주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역시 한국기업이 낙찰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대로 추진하는 것이 논리적 타당성을 가질 것이다.

나. ODA 및 무역원활화 지원

<부록 2-1>에서와 같이 한국은 ODA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할 때 지원규모가 상당히 낮은 형편이다. <부표 2-1>에 의하면 한국의 ODA 수준이 1999년 GNI의 0.08%를 넘은 적이 없다. 통계적으로 볼 때 세계 15대 경제강국으로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었고, 대부분의 복지후생지표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명실공히 수출 및 IT의 강국인 한국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많은 국제지원을 받은 수혜국가이지만 너무 낮은 수준의 ODA를 공여하고 있어 대외 이미지를 낮추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ODA를 증가시킴으로써 대외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제통상 협상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OD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WTO나 OECD와 같은 국제무대에서 ODA를 통하여 개도국을 지원한다면 여타 이슈에서 개도국의 한국입장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국제통상 분야에서 한국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다. 특히 무역원활화 분야에서 한국은 IT 강국으로 이미 선진국 수준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므로 무역원활화 관련 개도국 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인다면 한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면서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한국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다.

한국의 개도국 지원은 교육, 자문뿐만이 아니라 금융지원 및 물적지원 형태를 포함해야 한다. 통관시설의 건설, 통관절차 관련 IT 인프라 구축(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하는 물적지원은 EDCF 우선 추진사업의 원칙에서 전략적 지원분야로 분류되며 혼합신용 공여사업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따라서 EDCF 기금을 사용하여 개도국 무역원활화를 지원할 수 있다. EDCF뿐만이 아니라 무상원조를 사용할 수도 있다. 무역원활화가 무상원조 지원 전략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인프

라 구축을 통해 개도국의 경제를 지원한다는 한국의 ODA의 기본원칙에도 합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ODA의 전략적 분야로 무역원활화 관련 개도국 지원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개도국 무역원활화 지원을 위해서는 ODA 지원규모의 대폭적 확대가 요구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ODA 수준을 현재 GNI의 0.06%에서 OECD DAC의 절반수준인 0.11%로 증가시킬 것을 제안하고, 이 증가분 중 25%를 무역원활화에 할당할 것을 제안한다. 이 경우 한국의 2003년 GDP 규모가 6,061억 달러이기 때문에 ODA 규모가 현재의 약 3.6억 달러에서 3억 달러 증가된 6.7억 달러 수준에 이르게 되며, 이 중 무역원활화에 할당되는 금액은 약 7,500만 달러가 된다.

3억 달러의 증가가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한국이 ODA 지원규모를 GNI의 0.11%로 증가시키더라도 우리와 유사한 1인당 GDP 수준을 보이는 그리스, 포르투갈, 뉴질랜드보다 ODA/GNI의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ODA 증가에 따른 수익이 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한다. OD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무역원활화 등 WTO 협상에서, 그리고 대외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건부 원조 형태를 최대한 이용할 경우 수출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원조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무역원활화에 대한 양자적 프로젝트 지원에 대하여 제안한다.

다. 프로젝트 지원

전술한 바와 같이 개도국 무역원활화 지원에 있어 다자적 형태의 기금 구성, 양자적 자금지원 방식, 다자형태의 프로젝트 참여, 그리고 양자형태의 프로젝트 지원방식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특히 양자형태의 프로젝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국은 통관절차 자동화와 IT의 강국으로,⁴⁷⁾ 특히 통관절차에 있어서

한국의 자동화 및 전자화 수준은 대다수 선진국의 수준을 능가한다. 무역원활화 지원에서 이와 같은 이미지를 살리면서 한국과 지원수혜 개도국이 함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을 고려할 수 있겠다.

과거의 경험과 IT 산업의 강점을 기반으로 개도국에 대하여(통관절차의 전자화와 자동화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물, 컴퓨터, 모니터와 서버 등의 하드웨어, 통관절차관련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의 교육을 종합적,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관절차 자동화 패키지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최빈국의 경우에는 이를 파격적인 수준의 유상지원, 또는 무상지원까지의 형태로 지원해줄 수 있고, 소득이 비교적 높은 개도국에 대해서는 EDCF를 통한 유상원조로 패키지 형태의 지원이 가능하다.⁴⁸⁾ 이 과정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건설 서비스나 장비를 한국업체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 한국 건설업체의 경우 국제수주에 비교적 유리한 입장에 있을 뿐 아니라 컴퓨터 등 하드웨어에 있어서도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역시 한국의 KTNET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KTNET는 한국 무역협회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한국 무역과 통관절차에 대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완성한 업체이다. KTNET는 국내 통관절차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UN/EDIFACT EDI(전자자료 교환) 국제표준을 도입, 실무에 적용한 경험이 있고, 국내 EDI 기술분야와 서류 없는 무역행정 및 통관절차를 설립하는 데에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따라서 KTNET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각종 국제기준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체제를 개발할 것이고 개도국 지원에 이 소프트웨어 체제를 사용할 것이다. 무역원활화 협정에서 규정한 조건들이 구체적일수록 국제기준이 더욱 확고해져서 국제적 공통기준이 마

47) 손찬현·윤진나(2001)

48) 단 정부조달협정이나 OECD DAC 지침을 어긋나지 않는 형태로 지원을 제공해야한다.

런되고,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더욱 쉬워질 수 있다. 향후 KTNET 소프트웨어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도 가능하다.

공무원 교육은 KTNET가 KOICA와 같이 담당할 수 있다. KOICA는 이미 개도국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무역원활화 교육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은 건설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여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물론 통합적 지원비용이 상당하므로 모든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수혜 개도국을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선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지경학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을 선정하여 지원을 공여할 경우 인접국가도 간접적인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면 지역무역의 중심국가에 이러한 시설지원을 공여하게 되면 그 허브 국가뿐만이 아니라 허브를 이용하는 인접국가들도 간접적인 이익을 보게 될 것이고, 무역원활화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입지와 경제외교적 대외 이미지가 개선된다.

사실 개도국에 대한 무역원활화 지원은 투자의 한 방식이다. 무역원활화 협상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소수의 개도국에게 무상·유상 형태로 시설구축을 지원하고 품질을 인정받을 경우 인접국 및 관심국가의 무역원활화 시설이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패키지 구입을 촉발할 수 있다. 또한 개도국이 한국의 지원을 받아 한국방식의 무역원활화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는 향후 한국업체의 해외진출에 큰 도움이 되고, 지원을 받은 개도국들이 추가적인 장비나 투자가 필요할 때 한국의 장비와 노하우를 찾게 되어 향후 장비나 서비스 수출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논의를 고려할 때 무역원활화 지원을 위한 전문가 전담반 구성이 요구된다. 국내 통관 전문가, 건설업체, 하드웨어 생산업체와 KTNET가 참여해야 하며, 전략적인 차원을 고려하기 위해 지역연구 전문가와 WTO 협상 전문가도 팀 구성에 참여해야 한다. 이 전담반이 KOICA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수행 중인 프로젝트에 전문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전담반이 무상지원과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KOICA와 유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역할과 책임의 분담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무역원활화 규범화의 방향

무역원활화에 대한 WTO의 그간의 논의과정과 기본골격 합의안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정리하면 선진국의 경우 무역원활화의 전세계적 이익을 강조하면서 규범화를 주장한다. 이에 반해 개도국은 무역원활화의 무역증진효과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개도국이 받는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하면서, 무역원활화 의제를 규범화할 경우 통관절차 개선 등 무역원활화 증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선진국이 담당해주기를 기대한다.

3장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무역원활화의 전세계적 무역증진효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뿐 아니라 중력방정식 추정결과 10%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전세계 교역장이 3.6% 증가한다. 선진국보다 개도국에게 더 큰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다. 무역원활화 지수가 평균이하인 국가가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는 처리실험결과 선진국의 교역이 0.8% 증가한 반면 개도국의 수출입은 각각 1.9% 및 1.8% 증가하였다. 따라서 무역원활화의 혜택이 선진국에 집중된다는 개도국의 주장과 이에 근거한 선진국 부담론의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다. 따라서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사업을 일부 지원하고 개도국도 비용을 자체 부담하면서 무역원활화를 규범화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이 경우 선진국 지원의 초점을 최빈개도국에 맞출 필요성이 있으며 무역원활화 협정도 높은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

2. 개도국 반대사유

근본적으로 개도국들이 지적하는 무역원활화 규범화의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원활화 협상 및 국내 통관절차 제도 개선은 전문인력이 필요하나 그러한 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새로운 전문인력을 교육시킬 자원도 부족하다. (2) 물적자원, 특히 정보통신 인프라 자원이 부족하다. 또한 통관절차, 화물통과절차와 관련한 창고 등 적합한 물리적 시설물이 필요하다. (3) 무역원활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간 협력이 필수적이나 부처간 협력을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 무역원활화 개선에 소요되는 물적 및 인적 자원에 대한 선진국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3. 개도국 지원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개도국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실현가능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이 주장하는 4가지 사항 중 물적자원 및 인적 자원 부족의 2가지 우려사항을 협상에서 충분히 고려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개도국이 협정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지원(직접지원)하고, 개도국이 비교적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협정조항을 조정(제도지원)하는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가. 제도적 지원

이 보고서는 제도적 지원 전략으로 다음 3가지를 제안한다.

- (1) 다자간 협정내 복수간 협정방식: 분쟁해결절차의 사용과 적용 여부를 각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즉 협

정문 협상에는 다자간협정 방식으로 진행하고, 분쟁해결절차 사용여부에 있어서는 복수간협정의 성격을 갖도록 한다.

- (2) 조항별 개별협정 방식: 무역원활화 협정을 하나의 협정으로 취급하지 않고 GATT 5조, 8조, 10조의 내용을 따로 분리하여 3개의 협정을 협상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각 국가들이 자국의 무역원활화 수준에 따라 각 개별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 (3) 조항별 유예기간의 차별적 적용: 무역원활화 협정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단일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보다는 5조, 8조, 10조의 조항별 내용에 따라 유예기간을 차별적으로 정한다.

- (1)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참여국만의 무역원활화 개선의 교역증진 효과가 상당히 커서 참여국만의 협정 체결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회원국이 참여하는 형태에 비해 작지 않다. 또한 참여국의 교역증진효과가 미참여국(인도, 이집트, 베네수엘라, 브라질)의 교역증진효과를 크게 상회하여 무임승차의 문제가 거의 없다. 따라서 (1)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이면서 동시에 향후 다자간협정으로 발전할 경제적 유인을 내재하고, 향후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8조(수출입절차 및 수수료)의 10% 개선으로 수출입이 각각 2.02% 증대될 수 있으며, 10조(투명성)의 10% 개선으로는 교역량이 0.88% 증가될 수 있다. 무역원활화 단일지표를 사용한 추정결과를 고려할 때 8조 개선에 의한 교역증진효과가 무역원활화 전체의 개선효과에서 차지하는 기여도가 약 56%에 달한다. 또한 개도국의 반대의사가 강한 8조(수출입절차 및 수수료) 개선의 효과가 개도국이 수급하고 있는 10조(투명성) 개선의 효과를 크게 상회한다. 따라서 조항별로 협정문을 분리하는 제안이 현실적 타당성 및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다. 또한 조항별 협정문 분리를 추

진하면서 10조 협정문 체결에 있어서는 선진국이 최빈개도국 지원만을 담당하면서, 선진국의 지원을 8조 협정문 체결에 연계하는 전략이 경제학적으로는 바람직하다. 선진국의 입장에서 보면 8조 관련 개선으로 얻는 교역증대효과가 10조의 경우보다 크기 때문이다.

- (3) UR에서의 5~10년의 유예기간 설정을 고려할 때 DDA에서의 유예기간은 최고 10~20년 정도가 될 것이다. 5조, 8조와 10조에 대한 협정을 분리시키는 경우 10조에 대해서는 5~10년의 유예기간, 5조와 8조에 대해서는 10~20년의 유예기간이 적합하다.

나. 직접지원과 한국의 역할

협정체결을 위한 직접지원으로 무역원활화를 위한 각종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자금이나 장비의 지원, 그리고 무역원활화의 충실한 이행에 필수불가결한 개도국 공무원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행해졌던 단순한 단기교육의 형태를 넘어서는 효과적인 무역원활화 지원을 위해서는 이 외에도 물질적 지원, 자금지원 그리고 중장기적 교육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한국은 개도국 직접지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1) 3장 및 5장의 정책 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한국은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선진국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무역원활화 협상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이익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2) 한국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교량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여러 번 반복하였다. 한국이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취하고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을 좁히는 데에 기여할 경우 다자간 통상협상에서 한국의 입지가 제고될 수 있다. (3) 한국의 IT 산업이나

무역원활화 관련산업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된다.

한국의 개도국 지원은 교육, 자문뿐만이 아니라 금융지원 및 물적지원 형태를 포함해야 한다. 통관절차 자동화와 IT의 강국으로, 이 같은 이미지를 살리면서 한국과 지원수혜 개도국이 함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 (1) 과거의 경험과 IT 산업의 강점을 기반으로 개도국에 대하여(통관절차의 전자화와 자동화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물, 컴퓨터, 모니터와 서버 등의 하드웨어, 통관절차관련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의 교육을 종합적,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관절차 자동화 패키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최빈국의 경우에는 파격적인 수준의 유상지원 또는 무상지원의 형태로,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개도국에 대해서는 EDCF를 통한 유상원조로 패키지 형태의 지원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건설 서비스나 장비를 한국업체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
- (2) 한국의 KTNET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다. 향후 KTNET 소프트웨어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도 가능하다.
- (3) KTNET가 KOICA와 함께 공무원 교육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개도국 무역원활화 지원을 위해서는 ODA 지원규모의 대폭적 확대가 요구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ODA 수준을 현재 GNI의 0.06%에서 OECD DAC의 절반수준인 0.11%로 증가할 것을 제안하고, 이 증가분 중 25%를 무역원활화에 할당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다자적 형태의 기금 구성, 양자적 자금지원 방식, 다자형태의 프로젝트 참여, 그리고 양자형태의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원방식 중에서 한국기업에 가장 유리한 양자형

태의 프로젝트 지원을 강조할 것을 제안한다.

4. 연구의 한계성

제5장에서 다자간 협정내 복수국간 협정, 조항별 협정체결 등 제도적 지원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항들은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개도국의 반대를 고려하여 무역원활화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제안내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이 내용을 앞장서서 추진할 필요가 없으며 선진국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정부정책 추진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GATA 5조, 8조, 10조 각각에 대해 작지만 유용한 제안들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성이 있음을 밝혀둔다.⁴⁹⁾

또한 중력방정식을 활용한 무역원활화의 효과분석에서도

- (1) 단순화에 따른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성이 있다. 무역원활화 지수를 작성함에 있어 **World Competitiveness Report**의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했는데 이 결과가 각국의 무역원활화 수준을 오차 없이 계측하고 있다는 보장이 없다. 설문조사의 특성상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 (2) 또한 사용한 무역원활화 지표의 수치를 볼 때 선진국은 평균이상, 개도국은 평균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역원활화의 교역증진효과가 자발적 무역원활화 개선의 추진에 크게 의존하는 실증분석 구조상 개도국이 향유하는 효과가 선진국보다 큰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중력방정식 추정 및 모의실험 결과를 토대로 협상방향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며 5장에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러한 분석체계 및 논리전개에 일부 한계성 및

49) 이 연구의 한계성에 대해 심의위원이 지적한 중요한 내용이다.

문제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시나리오 분석에서 선진국만 참여할 경우 개도국이 함께 참여할 경우 등으로 구분해서 그 효과를 본다면 보다 정확한 정책제안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나 이 연구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다. 향후 선진국과 개도국이 구분되는 방정식 추정 및 시나리오 분석으로 이 연구를 보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원활화의 효과를 교역증대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수출 증가율과(또는 무역 증가율)과 GDP 증가율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하고, GDP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계산해보면 보다 의미 있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또한 향후과제에서 발전시키고자 한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 손찬현. 2001. 『무역원활화』. 최낙균 外 著, 『WTO 뉴라운드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손찬현·윤진나. 2001.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전자무역: e-Trade를 중심으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손찬현·임효성. 1998. 『WTO 무역원활화 논의현황과 정책과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양준석. 2002. 『무역원활화』. 최낙균 外 著, 『DDA협상 총점검 2002』.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03. 『무역원활화와 WTO: GATT 10조 관련 규제개혁 작업동향 및 SITPRO 등 각종 PRO 위원회의 역할』. 『OECD Focus』, Vol. 2, No.1.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03. 『OECD의 무역원활화 논의와 향후과제』. 『OECD Focus』, Vol. 2, No. 3.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03. 『WTO 무역원활화 협정 구체화 연구』. 가톨릭대학교 법경학부 내부자료.
- 이창수. 2003. 『무역원활화』. 최낙균 外 著, 『DDA 중간점검 - 2003』.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외교통상부. 2004. 『WTO 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문 채택』. 보도자료.
- 임혜준·박지현. 2004. 『WTO 무역원활화 협상 개시와 향후 대응방향』. KIEP 세계경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재정경제부. 2003. 『WTO DDA 무역원활화 협상 대응방안』. 회의자료.
- 최낙균. 2000. 『무역원활화』. 최낙균 外 著, 『WTO 뉴라운드 규범분야의 논의 동향과 한국의 협상전략』.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국문자료

- APEC. 2002. *APEC 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 APEC. 2004. "Ideas on WTO Negotiation on Trade Facilitation." 2004/SOMIII/CTI/TF/017. Submitted by Hong Kong, China.
- APEC. 2004.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Liberalization: From Shanghai to Bogor*.
- APEC. 1999. "Assessing APEC Trade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1999 Update." APEC. 1999.
- APEC. 1997. "The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APEC Economic Committee.
- _____. 2000. "Survey on Customs, Standards, and Business Mobility in the APEC Region." A Report by the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APFC) for the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ABAC). APFC.
- _____. 2001. *Benefits of TILF in APEC*.
- Arevalo, Alexander M. 2002. "A Developing Country's View on Trade Facilitation." Paper presented during International Forum on Trade Facilitation UN/ECE(May 29 ~ 30, 2002). 2002.
- Australi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02. "APEC Economies: Realizing the Benefits of Trade Facilitation." downloadable from www.apecsec.org.sg
- Canada. 2002a. "Trade Facilitation: Article VIII of GATT 1994 on Fees and Formalities Connected with Importation and Exportation: Communication from Canada" G/C/W/397. WTO. 17 July 2002.
- Canada. 2002b. "Trade Facilitation: Article V of GATT 1994 on Freedom of Transit: Communication from Canada." G/C/W/424. WTO. 1 October 2002.
- Colombia. 2002b. "Trade Facilitation: Article VIII of the GATT 1994 on Fees and Formalities Connected with Importation and Exportation: Communication from Colombia." G/C/W/425. WTO. 1 October 2002.
- European Communities. 2002a. "WTO Trade Facilitation - Improvements to GATT Article VIII on Fees and Formalities Connected with Importation and Exportation: Submission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G/C/W/394. WTO. 12 July 2002.
- _____. 2002b. "WTO Trade Facilitation - Strengthening WTO Rules on GATT Article V on Freedom of Transit: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G/C/W/422. WTO. 30 September 2002.
- Hong Kong, China. 2002. "Trade Facilitation: GATT Article VIII on Fees and Formalities Connected with Importation and Exportation: Communication from Hong Kong, China." G/C/W/398. WTO. 18 July. 2002.

- Inside U. S. Trade. 2004. "WTO Members Call for Revisions in First Draft Framework." July.
- Japan. 2002. "Improvements of GATT Article VIII: Communication from Japan." G/C/W/401. WTO. 22 July 2002.
- Korea, Republic of. 2000. "Korea's Recent Efforts to Streamline the Customs Clearance System." G/C/W/212, 6 June 2000.
- Korea, Republic of. 2002a. "Trade Facilitation: GATT Article VIII: Communication from the Republic of Korea." G/C/W/403. WTO. 25 July. 2002.
- _____. 1998. "National Experience Paper: Reforming the Customs Clearance System in Korea." WTO Document G/C/W/123. 25 Sept. 1998.
- _____. 1999. "Trade Facilitation - National Experience Paper: Revision of the Customs Act of Korea for Trade Facilitation." WTO document G/C/W/146. 6 April 1999.
- _____. 2002b. "Trade Facilitation: GATT Article V: Communication from the Republic of Korea." G/C/W/423. WTO. 1 October 2002.
- Krueger, Anne O. 1999.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Next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World Bank Policy Research Paper 2118.
- Lucenti, Krista. 2003. "Is There a Case for More Multilateral Rules on Trade Facilitation?" in Simon J. Eventett ed. 2003. Singapore Issues and the World Trading System: The Road to Cancun and Beyond World Trade Institute. Berne.
- OECD. 2001a. "Business Benefit of Trade Facilitation." TD/TC/WP(2001)21. OECD. 6 June 2001.
- OECD. 2001b.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OECD.
- _____. 2002a. "Trade Facilitation." TD/TC/WP(2002)7 OECD. Paris.
- _____. 2002b. "Transparency and Simplification Approaches to Border Procedures: Reflec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GATT Article X Related Proposals in Selected Countries." TD/TC/WP(2002)36/FINAL OECD. Paris.
- _____. 2002c. "Transparency and Simplification Approaches to Border Procedures: Reflec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GATT Article VIII Related Proposals in Selected Countries." TD/TC/WP(2002)50/FINAL OECD. Paris.
- _____. 2002d. "Transparency and Simplification Approaches to Border Procedures:

- Reflec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GATT Article V Related Proposals in Selected Countries.” TD/TC/WP(2002)51/REV1 OECD. Paris.
- _____. 2003. “Trade Facilitation Principles in GATT Articles V, VII and X: Reflections on Possible Implementation Approaches.” TD/TC/WP(2003)12.
- Panagriya, Arvind. 1999. “The Millenium Round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Negotiating Strategies and Areas of Benefits.” UNCTAD and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G-24 Discussion Papers Series. No. 1. March 2000. Forthcoming in Heiduk, Guenter and Kar-yiu Wong(eds.): WTO and World Trade: Challenges in A New Era. Springer. Heidelberg, New York 2004.
- Rodrik, Dani. 2002. “Feasible Globalizations.” NBER Working Paper 9129.
- Rose, Andrew. 2003. “Do We Really Know that WTO Increases Trade?” NBER Working Paper 9273.
- Shin Yukyun ‘Harry’. 2001. “New Round and Trade Facilitation Proposing a Tentative Draft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Measures.” *Journal of World Trade*, April 2001. vol. 35, iss. 2. pp. 229-252(24) Aspen Publishers. Inc.
- Sohn, Chan-Hyun and Junsok Yang. 2003. “Trade Facilitation in the WTO: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a Roadmap to Cancun.” Discussion Paper 03-04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Seoul.
- Srinivasan T. N. 2004. “The Future of the Global Trading System Doha Round. Cancun Ministerial and Beyond.”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The Future of Globalization: Exploration in Light of Recent Turbulence.” Held at Yale University on Oct. 10-11. 2003. Downloadable from author’s website: <http://www.econ.yale.edu/~srinivas/>
- Srinivasan, T.N. 1999. “Developing Countries in the World Trading System: From GATT. 1947. to the Third Ministerial Meeting of WTO.” *The World Economy* 22(8). 1047-1064.
- Staples, Brian Rankin. 2002. “Trade Facilitation: Improving the Invisible Infrastructure.” in Bernard Hoekman, Aaditya Mattoo, and Philip English eds. 2002. *Development, Trade and the WTO: A Handbook*. The World Bank.
- Subramanian, Arvind, and Shang-Jin Wei. 2003. “WTO Promotes Trade. Strongly but Unevenly.” NBER Working Paper 10024.
- UNCTAD. 2003. *Back to the Basics: Market Access Issues in the Doha Agenda* UNCTAD.

- United States of America. 2002. "Trade Facilitation: Article VIII of GATT 1994 on Fees and Formalities Connected with Importation and Exportation: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C/W/400. WTO. 19 July 2002.
- WCO. 2004. "WCO Work on Trade Facilitation." WTO Negotiating Group meeting, 22 November 2004, Geneva, Switzerland.
- WCO. 2004. *Revised Kyoto Convention*. available at www.wcoomd.org.
- WTO. 1999. "Trade Facilitation - Customs Administration and Trade Facilitation." WTO document G/C/W/150. 16 April 1999.
- _____. 2002a. "Article X of the GATT 1994 Scope and Application." G/C/W/374. 14 May 2002. WTO, Geneva.
- _____. 2002b. "Article VIII of the GATT 1994 Scope and Application." G/C/W/391. 9 July 2002, WTO, Geneva.
- _____. 2002c. "Article V of the GATT 1994 Scope and Application." G/C/W/408. 10 September 2002. WTO. Geneva.
- _____. 2004. 'WTO Doha Work Programme; Draft General Council Decision of 31 July 2004'. WT/GC/W/535. July.
- _____. 2004. Understanding the WTO.
- _____.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radfa_e/tradfa_overview_e.htm.
- _____. Trade Facilitation Negotiations: Perspectives on Scope, Implications and Development Aspects. JOB(04)/53. May.
- Wilson, John S. Catherine Mann, Yuen Pau Woo, Nizar Assanie and Inbom Choi. 2002. "Trade Facilitation: A Development Perspective in the Asian Pacific Region" APEC downloadable from www.apecsec.org.sg.
- Wilson, John S. Catherine Mann, and Tsunehiro Otsuki. 2003. "Trade Facilitation and Capacity Building: A Global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rade Facilitation and Capacity Building: A Global Perspective. Panel Session on Trade Facilitation. APEC Capacity-Building Workshop, Bangkok. October 8, 2003.
- Wilson, John S., Catherine Mann, Yuen Pau, Woo, Nizar Assanie, and Inbom Choi. 2002. "Trade Facilitation: A Development Perspective in the Asia Pacific Region." APEC.
- World Trade Institute. 2003. The Singapore Issues and the World Trading System: The Road to Cancun and Beyond(May).

웹사이트

한국수출입은행 웹사이트(<http://www.koreacxim.go.kr>). 2004년 11월 11일.

한국국제협력단 웹사이트(<http://www.koica.go.kr>). 2004년 11월 9일.

http://203.127.220.67/apec/apec_groups/committees/econom. 2001. 2004년 3월 15일.

http://www.koreaexim.go.kr/web/edcf/M05/S01/s01_3.thml. 2004년 8월 24일.

WTO Trade Facilitation website: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eol/e/wto02/wto2_69.htm. 2004년 3월 15일.

<부록 1>

〈부표 1-1〉 무역원활화관련 분쟁사례(2000 ~ 03년)

사 례	연 도	진행상황	관련 조항 및 협정	분쟁 제목
브라질-최소수입가격	2000	협의	관세평가협정, 수입허가절차협정	관세평가
루마니아-최소수입가격에 대한 조치	2001	상호 해결	관세평가협정	관세평가
EC-GSP 인도	2002	협의 요구		GSP 범위
EC-GSP 태국	2002	협의		GSP 범위
EC-바나나 판매, 수입, 유통	2002	EC에 의해 채택	수입허가절차협정	GSP 특혜, 수입조치
호주-연어	2000	제21조 5항	SPS	보건
미국-열연강판	2001	상소기구	GATT 제10조	이행
니카라과-온두라스, 콜롬비아로부터의 수입조치	2000	패널보고서 및 협의		수입조치
미국-Section 301-310	2000	패널보고서	제8조	수입조치
미국-EC 상품에 대한 수입조치	2001	상소기구	GATT 제7조	수입조치
호주-신선과일 및 채소	2002	협의	수입허가절차협정, SPS	수입조치
호주-신선과인애플	2002	협의	SPS	수입조치
인도-수입 및 수출제한	2003	협의	GATT 제10조, SPS, TBT, 수입허가절차협정	수입제한
EC-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에 대한 조치	2001	상소기구	TBT	기술규정

자료: World Trade Institute(2003)

〈부표 1-2〉 무역원활화 지수설명

Irregular payments

1997	Irregular payments	Irregular additional payments are not common in business and official transactions(1=strongly disagree, 7=strongly agree)
1998	Irregular payments	Irregular, additional payments connected with import and export permits, business licenses, exchange controls, tax assessments, police protection, or loan applications are not common(1=strongly disagree, 7=strongly agree)
1999	Irregular payments	Irregular, additional payments connected with import and export permits, business licenses, exchange controls, tax assessments, police protection, or loan applications are not common(1=strongly disagree, 7=strongly agree)
2000	Irregular payments	Irregular, additional payments connected with import and export permits, business licenses, exchange controls, tax assessments, police protection, or loan applications are very rare(1=strongly disagree; 7=strongly agree)
2001	Irregular Payments in Exports and Imports	How commonly do firms in your industry give irregular extra payments or bribes connected with import and export permits(1=common, 7=never)
2002	Irregular payments in exports and imports	In your industry, how commonly would you estimate that firms make undocumented extra payments or bribes connected with export and import permits?(1=common, 7=never occurs)

Port efficiency

1997	Ports	Port facilities and inland waters are extensive and efficient(1=strongly disagree, 7=strongly agree)
1998	Ports	Port facilities and inland waterways are extensive and efficient(1=strongly disagree, 7=strongly agree)
1999	Ports	Port facilities and inland waterways are extensive and efficient(1=strongly disagree, 7=strongly agree)
2000	Ports	Port facilities and inland waterways are extensive and efficient(1=strongly disagree; 7=strongly agree)
2001	Port Infrastructure Quality	Port facilities and inland waterways in your country are(1=underdeveloped, 7=as developed as the world's best)
2002	Port infrastructure Quality	Port facilities and inland waterways in your country are(1=underdeveloped, 7=as developed as the world's best)

E-commerce

1997	Internet users	Per million inhabitants, 1995
1998	Internet users	Per million inhabitants, 1996
1999	E-commerce	Does your company use the Internet for electronic commerce?(% yes)
2000	E-commerce	Percentage of companies that use the Internet for electronic commerce:
2001	Internet Effects on Business	To what extent has the Internet improved your firm's ability to coordinate with customers and suppliers to reduce inventory costs(1=no change, 7=huge improvement)
2002	Internet users,2002	Internet users per 10,000 inhabitants, 2002

Import fees(on Bureaucracy)

1997	Bureaucracy	Senior management of your company spends less than 30% of its time dealing with government bureaucracy(1=strongly disagree, 7=strongly agree)
1998	Bureaucracy	Senior management of your company spends less than 30% of their time dealing with government bureaucracy(1=strongly disagree, 7=strongly agree)
1999	Government bureaucracy	Senior management spends very little of its time dealing with government bureaucracy(1=strongly disagree, 7=strongly agree)
2000	Import fees	The combined effect of import tariffs, license fees, bank fees, and the time required for administrative red-tape raises costs of importing foreign equipment by(1=10% or less; 7= more than 50%)
2001	Extent of bureaucratic red tape	How much time does your company's senior management spend working with government agencies/regulations?(1=less than 10% of its time, 2=10-20%, 3=21-30%,....., 8=71-80%)
2002	Extent of bureaucratic red tape	How much time does your firm's senior management spend dealing/negotiating with government officials(as a percentage of work time)? (1=0%, 2=1-10%, 3=11-20%, 8=81-100%)

Hidden tariff barriers

1997	Hidden import barriers	Hidden import barriers(other than published tariffs and quotas) are not an important problem(1=strongly disagree, 7=strongly agree)
1998	Hidden import barriers	Hidden import barriers(other than published tariffs and quotas) are not an important problem(1=strongly disagree, 7=strongly agree)
1999	Hidden import barriers	Hidden import barriers are not an important problem(1=strongly disagree, 7=strongly agree)
2000	Hidden import barriers	Hidden import barriers(other than published tariffs and quotas) are not a problem(1=strongly disagree, 7=strongly agree)
2001	Hidden Trade Barriers	In your country, hidden import barriers other than published tariffs and quotas are(1=an important problem, 7=not an important problem)
2002	Hidden trade barriers	In your country, hidden import barriers(that is, barriers other than published tariffs and quotas) are (1=an important problem, 7=not an important problem)

〈부표 1-3〉 주요변수간 상관계수 행렬

	LEXP	LIMP	LFACI2	LDISTANCE	LGDPVI	LGDPVJ	LCGDPI
LEXP	1.00000	0.81756	0.22819	-0.40172	0.63695	0.42215	0.47018
LIMP	0.81756	1.00000	0.27306	-0.39539	0.57809	0.50058	0.38215
LFACI2	0.22819	0.27306	1.00000	-0.13513	-0.03351	0.29336	-0.03466
LDISTANCE	-0.40172	-0.39539	-0.13513	1.00000	-0.08563	-0.08224	-0.14809
LGDPVI	0.63695	0.57809	-0.03351	-0.08563	1.00000	-0.04866	0.55927
LGDPVJ	0.42215	0.50058	0.29336	-0.08224	-0.04866	1.00000	-0.03626
LCGDPI	0.47018	0.38215	-0.03466	-0.14809	0.55927	-0.03626	1.00000
LCGDPI	0.25476	0.31451	0.86192	-0.15904	-0.04054	0.42890	-0.03984
BORDER	0.23050	0.23154	0.02434	-0.40014	0.07762	0.05388	0.05891
LANGUAGE	0.11539	0.11786	0.03727	-0.10262	-0.05326	-0.03392	-0.01575
EU	0.29319	0.28798	0.20113	-0.50884	0.17376	0.06725	0.26884
ASEAN	0.03318	0.01641	-0.05893	-0.05023	-0.02493	-0.04205	-0.05411
NAFTA	0.10714	0.11990	0.02127	-0.07192	0.07759	0.07566	0.02640
MERCOSUR	0.03860	0.04065	-0.03881	-0.09278	-0.01254	-0.00002	-0.00329
	LCGDPI	BORDER	LANGUAGE	EU	ASEAN	NAFTA	MERCOSUR
LEXP	0.25476	0.23050	0.11539	0.29319	0.03318	0.10714	0.03860
LIMP	0.31451	0.23154	0.11786	0.28798	0.01641	0.11990	0.04065
LFACI2	0.86192	0.02434	0.03727	0.20113	-0.05893	0.02127	-0.03881
LDISTANCE	-0.15904	-0.40014	-0.10262	-0.50884	-0.05023	-0.07192	-0.09278
LGDPVI	-0.04054	0.07762	-0.05326	0.17376	-0.02493	0.07759	-0.01254
LGDPVJ	0.42890	0.05388	-0.03392	0.06725	-0.04205	0.07566	-0.00002
LCGDPI	-0.03984	0.05891	-0.01575	0.26884	-0.05411	0.02640	-0.00329
LCGDPI	1.00000	0.04161	-0.01214	0.22168	-0.07662	0.01927	-0.01228
BORDER	0.04161	1.00000	0.19990	0.17696	0.03968	0.19425	0.26141
LANGUAGE	-0.01214	0.19990	1.00000	-0.04107	0.01324	0.02552	0.08210
EU	0.22168	0.17696	-0.04107	1.00000	-0.02964	-0.01668	-0.01470
ASEAN	-0.07662	0.03968	0.01324	-0.02964	1.00000	-0.00540	-0.00476
NAFTA	0.01927	0.19425	0.02552	-0.01668	-0.00540	1.00000	-0.00268
MERCOSUR	-0.01228	0.26141	0.08210	-0.01470	-0.00476	-0.00268	1.00000

<부록 2> 한국의 ODA 지원현황⁵⁰⁾

OECD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공여국의 공공부문(중앙 또는 지방정부, 정부기관 및 단체 등)이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한 재원의 흐름 중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 (1) 공여목적 조건, 즉 재원흐름의 주목적이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지증진인 경우
- (2) 수원국 조건, 즉 원조를 받는 국가가 OECD의 DAC 수원국 명단에 속해 있는 개도국 또는 이러한 개도국을 주요 수혜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인 경우
- (3) 증여율 조건, 즉 증여율(Grant Element: GE)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증여율은 공여재원의 무상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아래 식(A-1)에 따라 계산되며, 공여조건(금리 및 상환조건)이 개도국에게 우호적일수록 커진다.

$$G.E. = \frac{\text{차관액면가액} - \text{원리금상환액의 현재가(할인율 = 10\%)}}{\text{차관액면가액}} \times 100 \quad (\text{A-1})$$

한국은 1950~60년대에 상당한 ODA 혜택을 받았으며, 1980년대 이후로는 ODA 공여국이 되었다. 한국의 ODA는 양자간 협력⁵¹⁾ 중 수원국에 변제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무상원조, 즉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이 있으며, 개발차관, 즉 상환의무가 있는 융자성 지원이 있는데, 무상원조는 외

50) 이 부분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웹사이트(<http://www.koica.go.kr>)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웹사이트(<http://www.koreaexim.go.kr>) 내의 여러 웹 페이지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51) 한국과 지원을 받는 국가(수원국)가 양자적으로 협의하는 원조.

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전담 실시하고 있으며, 개발차관은 재정경제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이 그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무상원조는 증여율이 100%이며, 유상원조는 증여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개도국에 대한 직접적 지원 외에도, 각종 다자적 국제기관에 기부하거나 출연하는 분담금도 ODA로 분류되는데, 다자간 협력에서 국제개발금융기관 등에 대한 출자는 재정경제부가, UN 등 국제기구예의 분담금 출연은 주로 외교통상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기타공적자금 지원(OOF)에 해당하는 해외투자 및 공적수출신용 지원 등은 재정경제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가. 현황 총괄

<부표 2-1>은 ODA의 각종 종류를 표로 보여주고, <부표 2-2>는 ODA의 각종 종류와 담당기관 및 소관부처를 정리하고 있다. <부표 2-3>은 1987~2003년간 한국의 ODA 총금액의 추세를 나열하고, <부표 2-4>는 1997~2002년 한국의 ODA 실적을 종류별로 정리하고 있다.

〈부표 2-1〉 ODA의 종류

구 분	거래별	자금의 상환여부	원조형태
공적개발원조(ODA)	양자간	증여(Grants) 상환의무 없음.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원조(Project and program aid)
			기술협력(Technical co operation)
			개발식량원조(Developmental food aid)
			긴급재난구호(Emergency and distress relief)
			채무탕감(Debt forgiveness)
			NGO에 대한 지원(General support to NGOs)
			공공 민간 파트너십에 대한 기부금 (Contributions to public private partnerships)
			개발에 대한 인식 확산 (Promotion of development awareness)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s)
		비증여(Non grant) 상환의무 있음.	차관(Loans by government or official agencies)
			주식취득(Acquisition of equity)
	다자간		국제기구 출연(분담금) 및 출자 (Grants and capital subscriptions)
			국제기구에 대한 양허성 차관 (Concessional lending to multilateral agencies)

주: 한국수출입은행 웹사이트.

〈부표 2-2〉 ODA의 각종 종류와 담당기관 및 소관부처

형 태	담당기관	소관부처	비 고
양자간 유상원조 (EDCF)	한국수출입은행	재무부	재경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여, 14개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EDCF 기금운용위원회”를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하며, 재경부 장관의 사업승인 및 감독하에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사업시행 실무담당
양자간 무상원조	국제협력단 (KOICA)	외교부	외교부 재외공관 및 KOICA 해외사무소를 통해 무상원조 사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외교부 장관의 사업승인을 거쳐 KOICA에서 사업 실시
	기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무상원조 사업 실시
다자간원조	한국은행	재경부 등	국제기구(지역개발은행) 담당
	외교부	외교부 등	국제기구(UN 기구) 담당
	기타 중앙부처	기타 중앙부처	국제기구(UN 기구) 담당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웹사이트.

〈부표 2-3〉 한국 ODA 총금액 추세(1987 ~ 2003)

	1987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ODA 총금액(백만 달러)	23.5	61.2	116.0	185.6	182.7	317.5	212.07	264.54	278.8	365.9
ODA/GNI(%)	0.020	0.020	0.026	0.042	0.058	0.079	0.047	0.063	0.06	0.0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웹사이트.

〈부표 2-4〉 한국의 종류별 ODA 국제협력 실적추이(1997 ~ 2003년)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ODA총계	185.6	182.7	317.5	212.1	264.7	278.8	365.9
증가율(%)	13.8	-1.6	73.8	-33.2	24.8	5.30	31.3
○ 양자간	111.34	124.69	131.4	131.2	171.6	206.8	245.2
- 무상원조	54.77	37.21	39.0	47.8	53.0	66.7	145.5
- 유상원조(EDCF)	56.57	87.48	92.4	83.4	118.6	140.06	99.7
○ 다자간	74.27	58.01	186.1	80.9	93.1	72.0	120.7
- 분담금	29.06	33.6	67.7	25.3	35.4	31.5	na
- 출자금	35.53	28.31	129.5	61.5	59.7	53.7	na
- 기 타	9.68	-3.90	-11.0	-5.9	-2.03	13.1	na
ODA/GNI 비율(%)	0.042	0.058	0.079	0.047	0.063	0.060	0.060

출처: KOICA 웹사이트, 한국수출입은행 웹사이트.

- 주: 1. 양자간 무상협력 : KOICA, 과기부, 정보통신부, KDI, 건교부 등
2. 다자간 협력: 외교통상부(UN 등), 한국은행(IFC, ADB, ESAF), 과기부(UNDP, IAEA 등), 환경부 (GEF 차관), 농림부(CGIAR, UNDP 등)
3. ODA에는 구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유·무상 ODA 제외
4. na = 자료 구할 수 없음.

우리나라 국제협력의 규모는 2003년 3.6억불 수준으로 큰 규모는 아니지만 1991년 KOICA가 설립되어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유무상원조 실시체제가 구축되었던 해의 5,700만달러 보다는 약 6배가 신장하였다. 그래도 한국과 유사한 수준의 1인당 GNI를 가진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는 ODA/GNI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부표 2-5> 에는 OECD DAC에 속한 국가들의 2002년 ODA 수준을 정리하였는데, 당시 한국의 1인당 GNI는 1만 2,020달러 이었으면서 ODA/GNI 비율은 0.06%이었던 반면, 1인당

GNI가 1만 1,660달러였던 그리스의 ODA/GNI 비율은 0.22%, 1인당 GNI가 1만 720달러인 포르투갈은 0.24%, 1인당 GNI가 1만 3,250달러인 뉴질랜드는 0.23%를 기록함으로써 한국과 1인당 GNI가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하여도 한국의 ODA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⁵²⁾

〈부표 2-5〉 OECD/DAC 회원국의 ODA 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ODA	ODA/GNI	ODA	ODA/GNI	ODA	ODA/GNI	ODA	ODA/GNI	ODA	ODA/GNI
DAC총액	51,891	0.24	56,428	0.24	53,737	0.22	52,236	0.22	56,958	0.23
덴마크	1,704	0.99	1,733	1.01	1,664	1.06	1,634	1.03	1,632	0.96
노르웨이	1,321	0.91	1,370	0.90	1,264	0.80	1,346	0.83	1,714	0.89
네덜란드	3,042	0.80	3,314	0.79	3,135	0.84	3,172	0.82	3,377	0.82
룩셈부르크	112	0.65	119	0.66	127	0.71	141	0.82	143	0.78
스웨덴	1,573	0.72	1,630	0.70	1,799	0.80	1,666	0.81	1,754	0.74
벨기에	883	0.35	760	0.30	820	0.36	867	0.37	1,061	0.42
프랑스	5,742	0.40	5,639	0.39	4,105	0.32	4,198	0.32	5,182	0.36
스위스	898	0.32	984	0.35	890	0.34	908	0.34	933	0.32
핀란드	396	0.32	416	0.33	371	0.31	389	0.32	466	0.35
아일랜드	199	0.30	245	0.31	235	0.30	287	0.33	397	0.41
영 국	3,864	0.27	3,426	0.24	4,501	0.32	4,579	0.32	4,749	0.30
스페인	1,376	0.24	1,363	0.23	1,195	0.22	1,737	0.30	1,608	0.25
독 일	5,581	0.26	5,515	0.26	5,030	0.27	4,990	0.27	5,359	0.27
호 주	960	0.27	982	0.26	987	0.27	873	0.25	962	0.25
오스트리아	456	0.22	527	0.26	423	0.23	533	0.29	475	0.23
뉴질랜드	130	0.27	134	0.27	113	0.25	112	0.25	124	0.23
포르투갈	259	0.24	276	0.26	271	0.26	268	0.25	282	0.24
캐나다	1,691	0.29	1,706	0.28	1,744	0.25	1,533	0.22	2,013	0.28
일 본	10,640	0.28	15,323	0.34	13,508	0.28	9,847	0.23	9,220	0.23
그리스			194	0.15	226	0.20	202	0.17	295	0.22
이탈리아	2,278	0.20	1,806	0.15	1,376	0.13	1,627	0.15	2,313	0.20
미 국	8,786	0.10	9,145	0.10	9,955	0.10	11,429	0.11	12,900	0.12
한 국	183	0.058	318	0.079	212	0.047	265	0.063	286	0.06

출처: KOICA 웹사이트

주: OECD/DAC 회원국은 22개국이며, 한국은 현재 DAC 비회원국이다.

52) UN에서는 선진국들이 GNI 대비 0.7% 수준에 달하는 ODA를 개도국들에게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KOICA와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국 ODA의 기본정책은 개도국과의 경제협력기반 확충 및 무역·투자 진출의 확대이며, 다음 5가지 방향을 따라 ODA를 지급하고 있다.

- 시장개척, 무역확대, 민간투자 촉진, 자원개발, 국내 산업구조조정 등 상호 보완적인 경제협력 기반 구축
- 개도국의 사회·경제 인프라 개발지원과 전지구적 인도주의 과제 수행에 동참
- 유상원조를 중심으로 개도국의 자조노력과 주체적 개발을 유도
- 사회 인프라 정비 및 산업육성을 통해 수원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
- 전지구적 인도주의 과제 수행에 적극 동참

2003년 우리나라 국제협력의 내용을 보면 한국국제협력단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양자간 원조가 2.4억 달러로 전체원조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UN,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및 국제개발금융기관을 통한 다자간 원조가 33%를 차지하고 있다. 양자간 원조 중에서 무상원조금액은 1.5억 달러 규모이며, 양자간 원조 중 유상과 무상의 원조 금액 비중이 약 4 대 6으로 원조액의 상당부분이 무상으로 제공되지만, 2002년까지만 하여도 유상과 무상의 비중이 7 대 3으로, 선진국의 원조와 비교해 볼 때 유상원조 제공비중이 크게 높았다. 해외 지원 차원에서 무상원조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은 무역 및 투자의 증진, 기초적 삶의 조건(Basic Human Needs: BHN) 충족 및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을 위한 분야에 집중되어왔으며, 최근에는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과 개도국과의 파트너십(Partnership) 강화, 그리고 개발에 있어서 개도국의 주인의식(Local Ownership)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그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또한 범지구적 과제인 환경, 빈곤퇴치, 여성 개발, 인구문제 등이 최근 개발협력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다.

지역별로는 <부표 2-6>에서 보다시피 이라크,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와 중국이 한국 ODA의 가장 큰 수요국이며, 총배분 가능 양자 ODA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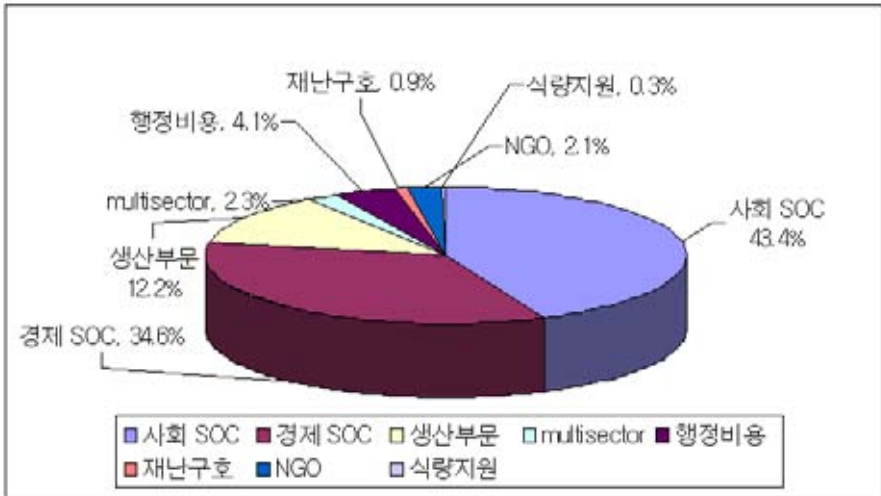
〈부표 2-6〉 한국의 ODA 주요 수요국(2003년)

	국 가	금 액(US\$백만)	비 중(%)
1	이라크	40.6	18
2	인도네시아	30.2	13
3	아프가니스탄	21.1	9
4	스리랑카	17.2	7
5	중 국	16.4	7
상위 5대 수원국 소 계		125.4	54
6	베트남	12.7	6
7	가 나	12.4	6
8	캄보디아	10.8	5
9	방글라데시	10.1	4
10	미얀마	06.6	3
상위 10대 수원국 합 계		177.9	78
총 배분가능 ODA(121개 수원국)		230.5	100

자료: 수출입은행 웹사이트 보도참고자료.

지원분야별로는 승인규모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03년 양자간 ODA 총 승인액 2억 4520만 달러 중 교육분야에는 5,890만 달러, 공공행정분야에는 4,590만달러, 보건분야에는 1,450만 달러가 승인되어 사회분야 SOC 분야에 총 1억 3,670만 달러가 승인되었으며, 이는 총승인 ODA의 43.4%이다. 또한 교통분야에는 4,630만 달러, 통신분야에는 3,650만 달러, 에너지분야에는 2,590만 달러가 승인되어 경제분야 SOC 분야에는 총 1억 890만 달러가 승인되었는데, 이는 총 승인 ODA의 34.6%이다. <부록 그림 3-1>에는 양자간 ODA의 분야별 배분을 정리하였다.

〈부록 그림 2-1〉 양자간 ODA의 분야별 배분



출처: 수출입은행 웹사이트 보도참고자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KOICA와 수출입은행이 한국의 양자간 ODA 관련 의무의 대부분을 분담하고 있다. KOICA는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무상원조를 담당하고, 수출입은행은 상환의무가 있는 유상원조를 담당하는데, 각 기관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부는 1991년 각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실시되어오던 무상원조와 기술협력사업을 통합하고 한국정부의 개발도상국 무상원조작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⁵³⁾을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하였으며, KOICA는 연수생초청, 봉사단, 프로젝트, 개발조사, 물자공여 등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실시하며, 1995년부터는 우리나라의 민간원조단체(NGO)에

53) 자료의 대부분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웹사이트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대한 지원도 실시한다.

KOICA는 원조환경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하였던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를 중점 지원하여 협력사업 효과 극대화를 꾀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국국제협력단은 아래와 같은 분야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고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 개도국 경제개발 및 빈곤완화 중점 지원
- 최빈개도국(LLDCs) 및 인도적 지원 강화
- 개도국의 정보격차차(Digital Divide) 해소지원 강화
- 긴급 재난구호 및 범지구적 문제해결 노력에 적극 동참
- 세계평화와 민주주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실현에 기여

KOICA는 각 협력대상국의 발전단계, 경제·사회적 특성 및 개발수요, 우리나라와의 경제·외교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국의 여건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현재 협력단이 수행하고 있는 개발협력 프로그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리나라 주변국가에 지역적인 초점을 두며, 협력단 사업 총예산의 약 50%가 이들 지역에 배분된다.

KOICA의 주요사업은 다음 4개의 분야로 분류된다. 첫째는 인력협력사업으로 개도국 연수생을 초청하여 한국의 개발경험과 기술을 전수해 주는 연수생 초청사업, 의료단원이나 태권도 사범 등 국내 전문가들을 해외에 파견하는 전문인력 파견사업, 그리고 한국해외봉사단 파견사업 등이며, 이는 개도국의 인적자원 양성과 의료,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두 번째 분야는 개발협력사업으로 도로개량, 발전소 건설 등 개도국 기반사업 구성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는 개발조사사업, 농업기자재나 사무기기, 약품 등의 원조물자를 지원하는 물자지원사업, 그리고 개

도국내 병원, 학교, 직원훈련원, 연구소 등의 건립과 운영을 지원해주는 종합적 협력사업형태인 프로젝트 사업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 분야는 민간단체(NGO) 지원사업으로 개도국의 빈곤완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각종 민간단체들의 해외 원조사업을 지원한다.

네 번째 분야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지원산업으로 오랜 전쟁과 가뭄으로 황폐해진 이 두 국가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수출입은행⁵⁴⁾은 양자간 ODA 중 유상원조를 전담하고 있으며, 1987년에 설립된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의 운영을 통하여 각종 개도국들에게 유상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EDCF는 2003년 말까지 세계 37개 개도국들의 116개 개발사업에 대하여 약 20억 달러의 원조자금을 제공하였다.

EDCF의 운영주체는 재정경제부로서 지원사업의 정부방침 결정을 포함한 주요업무를 총괄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은 정부의 위탁을 받아 EDCF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EDCF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재특차임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으로 구성되며, 1987년 정부가 300억 원을 출연한 이후 2003년 말까지 총 1조 5,654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EDCF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들은 15개 정부부처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외교통상부는 경제협력사업의 대외창구로서 정부간 협정체결 및 지원요청 사업의 접수와 지원방침 통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부표 2-7>는 EDCF의 운영체제를 설명하고 있다.

54) 자료의 대부분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웹사이트에서 발췌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부표 2-7〉 EDCF의 운영체제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사항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방침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정경제부	●기금운용관리의 주체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관리와 관련된 기본정책 수립 ●차관자금 지원요청 사업 중 지원검토 대상사업 선정·추진 업무 주관 ●기금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방침 결정 ●기금운용위원회 안건 작성 부의 ●외교통상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및 주무부처와의 사전협의
외교통상부	●대개도국 협력사업 추진의 대외창구 ●지원요청 사업의 접수 ●개도국에 대한 지원방침 통보 및 정부간 협정 체결 ●기타 기금업무관련 대외연락 업무
한국수출입은행	●기금지원업무의 실무 담당 ●기금의 관리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심사 ●차관계약의 교섭 및 체결 ●융자실행 및 사후관리 ●지원업무의 관리 등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웹사이트.

한국수출입은행 웹사이트의 EDCF 소개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현재 우리경제의 대외경제 의존도, 통일에 대비한 대규모 재원조성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고, 한국의 1인당 GDP 수준이 아직 DAC 국가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며 한국수출의 대선진국 의존성, 그리고 대외원조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인식 등 한국의 특이한 원조환경 및 여건을 고려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원조모형을 개발·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한국의 입장에서는 EDCF가 단순히 인도주의에 입각한 시혜 차원의 일방적인 흐름이 아니고, 선발개도국이 후발개도국에 대한 상호 호혜주의에 의한 경제협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EDCF 원조의 기본이념은 국익 등 경제적 목적의 추구를 근간으로 개도국과의 상호의존관계 인식에 기초한 호혜주의 구현이며, 보완적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한 인도주의적 이념을 추구한다고 수출입은행의 자료는 설명한다.

EDCF를 운영하고, 국가들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 4개의 주요원조정책을 기초로 한다. 첫째 원칙은 타이드(구속성) 원조로, EDCF를 통한 원조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물품 및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면 EDCF가 개도국의 의료부문 현대화 및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병원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병원 현대화를 위해 소요되는 의료기자재를 한국산으로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자재의 수출을 통한 개도국 시장진출을 도모하고 한다. OECD는 타이드 원조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이드 원조의 사용을 규제한다.

두 번째 원칙은 선택과 집중이다. 즉 원조공여를 위한 재원이 빈약한 점을 고려하여 소액으로 많은 국가를 지원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와 경제교류가 많거나 경험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선별하여 재원을 중점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지역에 70% 이상의 지원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지원대상부문도 다양한 원조분야를 골고루 지원하기보다는 우리나라가 보다 경쟁력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지원하고 있다.

세 번째 원칙은 지원대상 국가와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원칙이다. 지원대상 국가는 1인당 국민소득이 연간 약 5,000불 이하인 국가 중에서 GDP, 인구규모가 적어 경험잠재력이 미미한 국가 및 원리금 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한 국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이다. 또한 이들 국가들을 경험잠재력을 기준으로 중점국가와 일반국가로 분류하여 중점국가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분야는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기여도가 높은 경제·사회 인프라 부문과 인간의 기초적 삶의 조건(BHN)과 관련 있는 보건, 교육, 환경 등의 분야를 주요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이들 분야 중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효과가 크고 시장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점지

원하고 있다. 다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는 최우선으로 현지 필요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마지막 원칙은 우선 추진사업에 대한 것으로, 한국의 EDCF 원조는 다음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 전략적 지원분야 사업: IT 등 국가산업정책과 연계되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장개척 효과 및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사업
- 중점국가 추진사업: 중점지원 국가에서 추진되는 경제개발 계획상 우선 순위의 사업
- 협조용자사업: 기금의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협조용자하는 사업
- 혼합신용 공여사업: 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과 혼합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기금의 가용성을 증대하는 사업
- 중소기업 추진사업: 중소기업이 전문분야에서 원조관련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등

한국수출입은행의 EDCF 지원업무는 4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차관, 둘째는 혼합신용, 셋째는 협조용자 그리고 넷째는 사업진행 지원이다.

차관에 있어서 EDCF가 제공하는 자금의 종류는 차주(borrower)에 따라 크게 다음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개도국 정부 또는 법인에 대한 차관인데, 이는 개도국의 경제협력사업을 직접 지원하는 ODA로써 차관의 형태에는 다음 5가지가 있다.

- ① 개발사업 차관(Development Project Loan) : 댐, 상하수도설비, 도로, 병원, 환경설비, 공장설비 등 개도국의 경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통상 해당사업의 총사업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차관을 지원한다.

- ② 기자재 차관(Equipment Loan) : 개도국의 특정산업부문, 특정개발계획 또는 특정사업에 필요한 기자재 및 관련 서비스의 조달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차관이다.
- ③ 기금전대 차관(Two-Step Loan) : 개도국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특정분야, 특정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차관으로서 중소기업육성 또는 자작농 지원과 같이 다수의 최종수익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관임. 예를 들면 개도국 국영은행에 신용한도를 설정해주고 각각의 최종수익자가 필요한 기자재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국영은행에 설정된 신용한도를 사용하는 제도이다.
- ④ 물자 차관(Commodity Loan) : 개도국의 긴급한 국제수지 지원 및 국내경제 안정을 위하여 물자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차관이다.
- ⑤ 사업준비 차관(Project Preparation): 경제개발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경제개발사업의 시험적 실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차관이다.

차관의 두 번째 종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출로, 대한민국 국민이 대외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개도국에 해외출자 또는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이다.

EDCF의 두 번째 지원업무는 혼합신용이다. 지원을 받는 수원국은 EDCF의 차관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신용자금(export credit)을 혼합하여 금융조건을 양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EDCF와 수출신용자금을 혼용하는 지원방법을 혼합신용이라고 한다. 수원국의 입장에서는 혼합신용을 통하여 수출신용에 비하여 유리한 금융조건을 얻을 수 있으며, EDCF 자금만으로는 추진이 곤란하였던 대규모 개발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한편, 지원국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제입찰 등 수주경쟁이 치열한 유망사업에 대하여 수출신용에 비해 유리한 금융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한국기업의 수

주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EDCF 기금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혼합신용을 활용함으로써 원조재원의 가용성을 증가할 수 있다.

혼합신용은 자금 지원목적, 관리주체, 지원절차 등이 서로 상이한 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금융방식으로 자금의 혼합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 종류가 있다.

- ① **평행융자(parallel financing)** : 동일한 사업에 지원하나 사업범위를 지원자금의 성격에 따라 나누어 각 자금은 지정된 범위 내에서만 자금을 제공하고 통상 지원절차도 별도로 진행한다. (예: 동일사업 중 토목부문은 EDCF 지원, 기타 기자재 제공부문은 수출신용 지원).
- ② **결합융자(joint financing)** : 여러 자금을 혼합하여 자금 풀(pool)을 구성하고, 동일사업의 진전에 따라 각 자금에서 일정비율(통상 전체 혼합비율)로 지출
- ③ **사전혼합신용(pre-mixed credit)** : 결합융자와 같이 동일사업 전체에 각 자금에서 일정비율로 지출이 발생하나, 자금 공여기관들이 여러 자금을 사전에 통합, 하나의 금융 패키지로 재구성하여 하나의 차입 조건에 의한 차관계약을 체결한다. 지원적격 대상국가는 ㉠ 수출입은행의 수출신용 여신지원적격국가(수출입은행 국별신용도 등급 D 이상인 국가), ㉡ 소득수준에 따른 세계은행 국가 분류상 I, II, III 그룹 소속 국가(2002년 기준 1인당 GNI(Gross National Income) 기준 2,935달러 이하 국가) 등 두 가지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혼합신용의 지원대상 사업은 EDCF 차관 지원상의 적격사업과 동일하며 OECD 가이드 라인상 상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이나, 상업성 규제의 예외가 되는 2백만 SDR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가능하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협조융자의 형태로도 재원을 지원하는데, 협조융자(co-financing)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특정 프로젝트 실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참여기관의 자금부담과 자금참여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하는 금융기법이다. 협조융자의 형태는 크게 평행융자, 결합(합동)융자의 2종류로 나누어지며, 이 외에 보조융자(Umbrella or Stand by Financing), 매개융자(Channel Financing), 참여융자(Participation Financing) 등도 있다. 협조융자에서 평행융자나 결합융자의 정의는 위의 혼합신용에서 설명한 정의와 유사하다.

협조융자는 차주국 입장에서 ① 국제금융기구의 재원만으로 부족한 자금조달 가능, ② 국제기구 및 공여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① 자체 재원만으로 지원이 부족한 대형사업의 지원이 가능하고, ② 국제금융기구의 사업타당성 보고서 및 개도국 정부와의 협력 채널 확보, ③ 유망 프로젝트 정보 입수로 인한 사업 발굴 및 사업관리가 용이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EDCF는 ADB 및 IBRD와 협조융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IDB와는 비회원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실무차원의 Aide Memoire만 체결된 상황이다. 결합융자를 사용하는 경우 IBRD나 ADB가 프로젝트를 주관하므로 이 기관들의 구매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의 EDCF 원조에서 4번째의 지원업무는 사업진행지원이다. EDCF의 지원은 상환을 전제로 하는 유상원조이며, 사업진행 지원제도는 차관에 관련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부대적인 지원제도인데, EDCF 자체 예산으로 무상원조 방식으로 지원한다. 사업진행제도의 세부지원 범위는 아래와 같다.

- ① 사업개발지원제도: F/S의 작성 또는 보완 등을 통해 사업준비(Project Preparation)를 지원
 - 기본시설계획의 수립, 대안의 비교, 검토
 - 주요 시설, 설비의 예비설계
 - 사업비용의 산정

- 사업실시계획의 수립(사업범위, 구매계획, 컨설턴트 고용의 필요성, 공정계획, 자본조달계획 등)
- 재무적·경제적·기술적 타당성 검토
- 지원사업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 환경영향 평가

② 사업실시지원제도: EDCF 지원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지원(사업공정 또는 물품검수 등 구매관련 문제점의 해결지원 등)

- 컨설턴트 초청서류(후보자명부, 과업명세서 등 포함), 고용계약 신청서의 작성 또는 준비
- 공급자에 대한 사전적격심사, 입찰평가 및 구매계약서의 작성 또는 검토
- 구매의 공정성, 투명성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한 구매관련 시장조사 등
- 계약이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물품검수 등
- 사업계획변경, 설계변경 등 사업실시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기술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
- 사업진행보고서, 자금지출요건 서류 및 사업완공 보고서 등 각종 서류의 작성 및 보완
- 기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③ 사후관리 지원제도: 원조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EDCF 지원사업의 완공 후 유지·보수·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 지원

- 사업완공 후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문제점 파악 및 해결을 위한 컨설턴트 파견
- 필요시 설비운전, 작동 등 관련 교육실시를 위한 전문가 파견

－ 정상 작동에 필수적인 소모성 부품지원

EDCF의 지원조건은 지원대상국가를 소득수준별로 5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 상환기간과 금리를 차등적용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은 금리와 긴 상환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매년 초 세계은행 소득그룹별 국가분류 변동에 따라 국별 소속그룹을 재조정하고 있다. <부표 3-8>과 <부표 3-9>에는 2004년 현재 소속그룹 분류기준(2002년 GNI 기준) 및 각 그룹에 대한 지원조건을 정리하고 있다.

〈부표 2-8〉 EDCF 지원대상국가 그룹별 지원조건

그룹 분류	분류기준	지원조건	
		금 리	상환(거치)기간
I	UN 분류 최빈국	1.0%	20(5) ~ 30(10)년
II	세계은행 분류 I그룹 및 이에 준하는 국가 중 최빈국 제외(1인당 GNI 735불 이하)	2.0%	20(5) ~ 30(10)년
III	세계은행 분류 II그룹 및 이에 준하는 국가 (1인당 GNI 736 ~ 1,415불)	2.5%	20(5) ~ 30(10)년
IV	세계은행 분류 III그룹 및 이에 준하는 국가 (1인당 GNI 1,416 ~ 2,935불)	3.0%	10(5) ~ 25 (7)년
V	세계은행 분류 IV그룹 및 이에 준하는 국가 (1인당 GNI 2,936 ~ 5,115불)	5.0%	10(5) ~ 25 (7)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웹사이트.

주: V그룹 국가에 대하여는 타이드 원조자금의 제공을 금하고 있다.

〈부표 2-9〉 EDCF 지원조건

융자한도	총사업비용의 80% 범위내
원금상환금	연 2회 정기균등분할
이자징수법	원금잔액에 대하여 매 6개월 후취
담 보	- 차주가 중앙정부 또는 중앙은행인 경우 : 담보 면제 - 차주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 : 중앙정부 지급보증
표시통화	대한민국 원화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웹사이트.

EDCF의 최근 실적은 <부표 2-10>과 <부표 2-11>에 정리하였다. <부표 2-10>은 EDCF의 산업별 지원실적을 살펴보고 있으며, <부표 2-11>은 1987~2003년간 국가별 지원실적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같이 EDCF 지원은 교통, 통신, 에너지, 교육, 상하수도에 크게 배정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이 총지원의 12.5%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과 우즈베키스탄 등 7개 국가가 총 지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부표 2-10〉 EDCF의 산업별 실적(1987~2003년)

연 도	승인 액계	개도국 차관											해외투 융자
		통 신	교 통	에너 지	상하 수도	교 육	보 건	환 경	농수 업	제조 업	기 타	소 계	
1996	3,027	771	1,060	667			180	97	169		82	3,027	
1997	947		180	179	44		275				269	947	
1998	1,387	161	442	144			227		413			1,387	
1999	1,794	421	171	9		393	347	453				1,794	
2000	2,476		658	781	433		539	66				2,476	
2001	1,531	621	294			25	357	234				1,531	
2002	2,355		844		421	696	394					2,355	
2003	2,091	483	545	314	77	326			316		30	2,091	
누계	19,713	3,710	5,166	2,694	1,450	1,811	2,361	923	899	264	419	19,697	1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웹사이트.

주: 누계는 1987~2003년의 지원을 합한 것이다.

〈부표 2-11〉 EDCF의 국가별 실적 (1987 ~ 2003년)

순위	국 가	승인액계 (백만 원)	개도국차관				해외투융자		
			건수	백만 원	백만 달러	비율	건수	백만 원	백만 달러
1	중 국	246,851	22	246,851	237.90	12.5			
2	인도네시아	157,665	7	156,687	158.50	8.0	1	978	1.3
3	베트남	154,363	7	154,363	161.46	7.8			
4	스리랑카	151,113	11	151,113	162.29	7.7			
5	방글라데시	133,480	5	133,480	125.10	6.8			
6	필리핀	96,276	6	95,658	99.80	4.9	1	618	0.90
7	우즈베키스탄	84,292	3	84,292	77.00	4.3			
8	캄보디아	84,059	3	84,059	64.72	4.3			
9	루마니아	80,888	3	80,888	81.00	4.1			
10	미얀마	64,049	5	64,049	72.20	3.3			
	(중 략)								
합 계	(1~37위)	1,971,329	114	1,969,733	1,936.54	100.0	2	1,596	2.2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웹사이트.

Executive Summary

Capacity Building of Developing Countries for Making the Rules of Trade Facilitation

Chang-Soo Lee

This study examines the main issues in trade facilitation of the DDA/WTO discussions and the perspective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for these issues. Further, it empirically assesses the economic impacts of trade facilitation both o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Finally, we provide how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Korea can help with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of developing countries, which has been the center of the discussion in trade facilitation.

Developing countries have had reservations toward trade facilitation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rade facilitation provides more benefits to developed countries and they do not have enough human and physical resources to implement it. However, this study finds that not only trade facilitation substantially increases world trade overall, but also that it increases the trade of developing countries more than those of developed ones. Hence, contrary to their belief, developing countries rather than developed countries are the ones that would enjoy more benefits from trade facilitation.

In order to address the capacity building of developing countries, this study proposes two approaches. The first approach deals with a system in which the negotiation on trade facilitation could proceed more easily. The second one is about physical and human resource assistance. In regard to the way the

negotiation proceeds, there exist three possible options to consider: (i) only countries who are ready to abide by the rules of trade facilitation are constrained by a dispute-settlement body, while all countries can still participate in the negotiating process; (ii) rather than negotiating the three GATT articles all together that govern trade facilitation at the WTO, the member countries negotiate each article separately; and (iii) the WTO allows a different phase-out period for each article rather than a single uniform phase-out for all three articles.

The simulation in the study shows that under the first option the increase in trade among the participating countries is not much less than when all countries participate. Since not all members are currently enthusiastic about trade facilitation, the first option might be a practical solution. Furthermore, it leaves a door open for non-participating members to always join later. Regarding the second option, the simulation suggests that the potential effects on trades are more favorable for Article 8 than Article 10: a 10 percent improvement with respect to Article 8 increases trade by 2.02 percent, while the same improvement with respect to Article 10 increases trade by 0.88 percent. Given that the potential effects of each article differ, it is desirable to separately negotiate the three articles. Since many member countries have complained the phase-out period under the Uruguay Round, which ranges from 5 to 10 years, is rather short, a longer phase-out would be necessary for implementing trade facilitation.

The main concern of developing countries with trade facilitation is resource constraint. Facilitating trade needs the build up of infrastructure, which requires financial support. Korea has several options for addressing this issue: (i) since Korea has a strong competitiveness in the IT industry, it can assist the automation of customs in developing countries using an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ii) Korea may provide the software for customs procedures developed by KTNET(Korea Trade Network); and (iii) KTNET and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can cooperate to educate customs officials of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to finance this assistance, Korea needs to expand the ODA (Official Development Aid). The ODA in Korea currently amounts to 0.06 percent of its GNI, which is small compared with other OECD countries. Hence, we propose that it be doubled to 0.11% and among this increase a 25% be allotted to the assistance for trade facilit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Finally, bilateral assistance based on projects would be a suitable format in assisting capacity building in developing countries, since Korean firms could also benefit by engaging in the projects.

KIEP 발간자료 목록(2001~04. 12)

■ 정책연구

- | | |
|---|--|
| <p>01-01 무역개방화와 제조업부문의 변화 / 南相烈</p> <p>01-02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 鄭仁教</p> <p>01-03 은행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 및 외국은행 진입에 따른 효과분석 / 黃祥仁·金寅培·辛仁錫</p> <p>01-04 韓·日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 鄭仁教</p> <p>01-05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 金尙謙·朴仁元</p> <p>01-06 동아시아의 통화협력 구상: 역내 환율안정을 중심으로 / 曹琮和·金于珍</p> <p>01-07 다자무역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WTO를 중심으로 / 梁俊哲·金鴻律</p> <p>01-08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과 적정 투자방향의 모색 / 尹德龍·朴淳讚</p> <p>01-09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CGE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 李鍾華·朴淳讚</p> <p>01-10 주요국 농업정책 변화와 WTO 협상에서의 시사점 / 宋有哲 外</p> <p>01-11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통신·환경·에너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 金準東 外</p> <p>01-12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WTO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에의 시사점 / 崔洛均 外</p> <p>01-13 신통상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라운드협상에서의 시사점 / 尹昌仁 外</p> <p>01-14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시사점 / 蔡旭·徐暢培</p> | <p>02-01 DDA 총점검 - 2002 / 崔洛均 外</p> <p>02-02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 / 宋有哲·朴芝賢·李載玉·林頊洙</p> <p>02-03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응 방향: 법무·시청각·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 金準東·高俊誠·具文謨·朴淳讚</p> <p>02-04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논의동향과 국제관세율 구조분석 / 崔洛均·鄭在皓</p> <p>02-05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 姜文盛·魯在峯·李鍾華</p> <p>02-06 DDA TRIPS 분야의 유전자원 관련 논의와 한국의 대응 / 尹美京·崔允傳</p> <p>02-07 DDA 무역과 개발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 南相烈·權栗</p> <p>02-08 DDA 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 / 崔洛均·朴淳讚</p> <p>02-09 동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전가에 관한 분석 / 姜三模·王允鍾</p> <p>02-10 미국 경상수지적자 확대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姜文盛·羅秀燁</p> <p>02-11 EMS의 운영성과와 동아시아에의 시사점 / 尹德龍·鄭在植·曹琮和</p> <p>02-12 FDI와 무역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 - 한국의 對中 투자와 일본의 對韓 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李彰洙</p> <p>02-13 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 金良姬·趙炳澤</p> <p>02-14 한국기업의 대중국 권역별 진출과 전략 / 池晚洙</p> <p>02-15 ASEAN 주요국의 산업·교역구조 분석 / 權栗·金坵慶</p> <p>02-16 중국 유통산업의 개방과 활용전략 / 趙顯煥</p> <p>02-17 1990년대 이후 韓·美간 무역구조의 변화</p> |
|---|--|

1990년~현재까지의 모든 KIEP 발간자료 목록은 연구원
Homepage(<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음.

/ 梁俊哲·金鴻律

02-18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본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 / 尹德龍·鄭衡坤·南英淑

02-19 중동 주요국의 교역구조 분석 및 한국의
對中東 通商 확대 전략 / 金興鍾

02-20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의 기본방향
- 주요 비즈니스 거점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李昌在

02-21 韓·中·日 IT 산업의 戰略的 提携 현황과
향후 전략: 知識連繫를 중심으로 / 洪裕洙

02-22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과 한국에의
시사점 / 金鴻律

02-23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현치화에 관한 연구
/ 白權鎬 外

02-24 베트남 자본시장 현황 및 발전방향
/ 朴大權·楊斗鏞·吳奎澤·金恩京

02-25 한중일 3국의 산업간 상호의존관계 분석
- 국제산업연관 모델에 의한 실증연구 / 李鴻培

02-26 북한경제백서 / 趙明哲 外

03-01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비용·편익분석과
정치경제학적 함의 / 申寬浩·王允鍾·李鍾和

03-02 동아시아 주요국의 적정환율과 시사점
/ 姜三模·朱尙榮

03-03 동아시아 혁신경제의 이행과 한국의 혁신전략
/ 洪裕洙·李彰洙·姜丁實

03-04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여건과 과제: 사례
연구와 시사점 / 安炯徒 外

03-05 중국 부실채권 문제의 원인과 해결전망
/ 池晚洙·李榮

03-06 중국 첨단산업의 발전과 한국의 대응
/ 洪裕洙·池晚洙·韓正和

03-07 중·아세안 FTA의 추진과 파급영향
/ 鄭仁敎·吳東胤

03-08 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 權栗·鄭仁敎·朴仁元

03-09 일본의 통상정책변화와 한국의 대응 방안:
FTA 정책을 중심으로 / 李鴻培·金良姬
·金恩志·程勳

03-10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曹琮和·李炯根

03-11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협상동향과 경제적

효과분석 / 姜文盛·金元鎬·朴淳讚
·金鍾奎·權奇洙·金眞梧·羅秀燁

03-12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 安炯徒·尹德龍

03-13 7·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 趙明哲 外

03-14 북한경제 개혁의 추진현황과 남북한 및 국제
사회의 역할 / 趙明哲 外

03-15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협력 현황과 남북
경협에 주는 시사점 / 趙明哲

03-16 DDA 중간점검 - 2003 / 崔洛均 外

03-17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 宋有哲 外

03-18 DDA 서비스협상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쟁점
및 정책과제 / 金準東·鄭永虎·崔秉浩·安德宣

03-19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이 한국의
관세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崔洛均·鄭在皓

03-20 DDA 규범분야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과
시사점 / 姜文盛·朴淳讚·李彰洙

03-21 WTO경쟁규범 협상: 문제점의 분석과
제정방향의 모색 / 尹美京

03-22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적응 지원정책 / 金準東·金鍾一·姜俊求

03-23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 鄭仁敎 外

03-24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 姜文盛·朴淳讚·宋有哲
·尹美京·李根

03-25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 楊斗鏞 外

03-26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 申寬浩·楊斗鏞·王允鍾·李鍾和

03-27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 2003년 연구의 주요 결과 / 鄭仁敎 外

04-01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
평가와 우리나라 FTA 정책에의 시사점 / 金元鎬

04-02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 李洪植 外

04-03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 / 南英淑 外
- 04-04 한·중·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방향 / 方浩慶 外
- 04-05 WTO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협상방안 / 崔洛均
- 04-06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지속가능발전:
OECD 논의를 중심으로 / 尹昌仁
- 04-07 무역원활화 규범화를 위한 개도국 지원방안의
모색 / 李彰洙
- 04-08 영화시장 개방에 대한 경쟁정책적 고찰
/ 尹美京·尹昌仁·李相承
- 04-09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국제화 진전과
향후 과제 / 楊斗鏞 外
- 04-10 EMU 협상의 정치경제학과 동아시아 통화
통합에 대한 시사점 / 金興鍾 外
- 04-11 거대경제권과의 FTA 평가 및 추진전략
/ 鄭仁教 外
- 04-12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 朴淳識·姜文盛
- 04-13 한·일 FTA 체결이 국내 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시사점: 전기전자·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 李鴻培 外
- 04-14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시사점
/ 池晚洙 外
- 04-15 최근 북한의 가격·유통체제 변화 및 향후
개혁과제: 중국과의 비교연구 / 洪翼杓 外
- 04-16 동북아금융허브: 주요국의 자산운용업 현황과
시사점 / 安炯徒·吳龍協
- 04-17 동북아물류허브: 동북아 항공운송자유화
정책 추진방안 / 田一秀·洪錫晉
- 04-18 외국인투자 유치: 서비스산업에서의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 李相學
- 04-19 동북아 경제협력: NEADB의 논의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李炯根

■ 지역연구

- 03-01 아프리카 섬유산업의 현황과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모로코를 중심으로 / 金興鍾·金良姬·朴英鎬
- 03-02 2004년 EU 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 / 金興鍾·李哲元·朴映坤·朴慶錫
- 03-03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 李章揆·趙顯垓·吳東胤
- 03-04 메콩강유역개발: GMS 프로그램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 鄭在完·權耿德
- 04-01 1990년대 이후 중국의 경제개혁 / 朴馥永
- 04-02 중·동구 주요 EU 신규회원국의 적정 환율
분석과 EMU 가입에 대한 시사점
/ 金興鍾·李哲元·金炳椽

■ Policy Analyses

- 01-01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 02-01 Currency Union in East Asia / Han Gwang
Choo and Yunjong Wang
- 02-02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Recent
Development of FTAs and Policy Implications
/ Inkyo Cheong
- 02-03 Understanding the Determinants of Capital
Flows in Korea: An Empirical Investigation
/ Sammo Kang,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 02-04 Korea's Corporate Restructuring since the
Financial Crisis / Chan-Hyun Sohn
- 03-01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Exchange
Rate, Monetary Policy, and Financial Market
Issues / Sung Yeung Kwack, Choong Yong
Ahn, and Young-Sun Lee
- 03-02 Analysis of the Trade Negotiation Options in
the East Asian Context / Nakgyoon Choi, Soon
Chan Park, and Changsoo Lee
- 04-01 Saving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in East Asia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 정책자료/Policy References

- 01-01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 / 孫謙鉉 編

- 01-02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주요산업별
효과분석 / 孫讚鉉·尹眞那
- 01-03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와
비람직한 정책방향 / 孫讚鉉 編
- 01-04 미국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과 2001년
경제동향 / 姜文盛·羅秀燁
- 01-05 전자무역의 최근 동향과 활성화 방안
/ 李晟鳳·沈相烈·王重植
- 01-06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방향 탐구 / 李鍾華
- 03-01 WTO 투자협정 논의의 평가 및 향후과제
/ 李晟鳳·金寬濤·金仁夙
- 04-01 FTA의 득과 실: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朴淳濤 外
- 04-02 對중남미 경제협력 중장기 전략
-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를 중심으로 -
/ 金元鎬·權奇洙·金眞梧
- 04-03 ASEAN + 3(한·중·일) 경제동향 및
한국과의 경험 현황
- 04-04 폴란드의 정치·경제 현황과 韓·폴란드 경제
협력 증진방안 / 李哲元
- 04-05 프랑스 정치·경제 현황과 韓·프랑스
경제협력 / 金興鍾·金均泰
- 04-06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對칠레 교역동향
분석 / 姜俊求·朴芝賢
- 04-07 수입선 다변화제도 철폐 5년의 평가: 가전산업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 金廷棍·朴혜리
- 04-08 쇠고기 수입개방 이후 쇠고기시장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朴芝賢
- 04-09 유통서비스 시장 개방의 이익과 과제 / 姜俊求
- 04-10 멕시코의 NAFTA 가입 이후 산업경쟁력 변화
분석 / 嚴富暎·姜丁實
- 04-11 FTA 원산지 규정을 주요 특징과 원산지 규정
협상에 대한 시사점 / 方浩慶

■ 행사결과보고/Conference Proceedings

- 01-01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in East Asia:
Issues and Prospects / Yoon Hyung Kim and
Yunjong Wang eds.
- 01-02 Korea's Five Years in the OECD: Finding a
New Path / Hyungdo Ahn ed.

- 02-01 Korea's Road to a Sound and Advanced
Economy / Hyong-Kun Lee ed.
- 02-02 중국 서비스산업의 시장개방과 외국기업의
진출방안 / 朴月羅·崔義炫 編
- 02-03 남북한 및 중국간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 및 전망 / 趙明哲 編
- 03-01 Financial Market Opening in China and Korea
/ Young-Rok Cheong, Doo Yong Yang, and
Wang Tongsan eds.
- 03-02 Financial Development and Integration in East
Asia / Choong Yong Ahn, Takatoshi Ito,
Masahito Kawai, and Yung Chul Park eds.
- 03-03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Asia-Pacific
Region / Heungchong Kim ed.
- 03-04 Structural Reforms and Economic Development
-Experiences of the Northeast Asia
/ Chan-Hyun Sohn ed.
- 03-05 North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Prospects for a Northeast Asian FTA
/ Yangseon Kim and Chang-Jae Lee ed.
- 03-06 China's Role in Asia and the World Economy:
Fostering Stability and Growth
/ Yunjong Wang ed.
- 04-01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Yoon Hyung Kim and
Chang Jae Lee
- 04-02 Enhancing Investment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Joon-Kyung Kim and Chang Jae Lee
- 04-03 Monetary and Exchange Rate Arrangement in
East Asia / Yonghyup Oh, Deok Ryong Yoon,
and Thomas D. Willett

■ APEC Study Series

- 02-01 Culture and Trade in the APEC - Case of film
industry in Canada, Mexico and Korea
/ Byung-il Choi
- 02-02 Diffusion Factors of Electronic Trade for Trade
Facilitation in the APEC Region: A Case of
Korean Small Business / Yongkyun Chung and
Yongwhan Park

- 02-03 Narrowing the Digital Gap in the APEC Region
/ Yoo Soo Hong
- 02-04 Implementing the Bogor Goals of APEC
/ Hongyul Han
- 03-01 Trade Structure and Complementarity among
APEC Member Economies / Sang-yiul Nam
- 04-01 Revisiting the Open Regionalism of APEC
- Assessment and New Challenges
/ Seok-young Choi

■ Discussion Papers

- 01-01 Korea's FTA (Free Trade Agreement) Policy: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 Chan-Hyun Sohn and Jinna Yoon
- 01-02 An Appraisal of ASEM Economic Dialogues and
Future Prospects / Chong Wha Lee
- 02-01 Searching for a Better Regional Surveillance
Mechanism in East Asia / Yunjong Wang and
Deok Ryong Yoon
- 02-02 Korea's FTA Policy: Focusing on Bilateral FTAs
with Chile and Japan / Inkyo Cheong
- 02-03 Update on Korean Economic Reforms and
Issues in Korea's Future Economic
Competitiveness / Junsok Yang
- 02-04 Prospects for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 Yunjong Wang
- 02-05 An Overview of Currency Union: Theory and
Practice / Sammo Kang and Yunjong Wang
- 02-06 Korea's Trade Policy Regime in the
Development Process / Nakgyoon Choi
- 02-07 Reform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
China: Issues and Policies / Eui-Hyun Choi
- 02-08 Reverse Sequencing: Monetary Integration
ahead of Trade Integration in East Asia
/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 02-09 Can East Asia Emulate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 Yung Chul Park and Yunjong
Wang
- 02-10 Debt Resolution, Cross-Border M&As,
Governance and Control in Korea's Post-Crisis
Corporate Restructuring / Chan-Hyun Sohn
- 02-11 Liberalization Measures in the Process of
Korea's Corporate Restructuring Trade,
Investment and Capital Account Market
Openings / Chan-Hyun Sohn, Junsok Yang
and Seung Beom Kim
- 03-01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Korea:
Recent Performance and Future Agenda
/ June-Dong Kim
- 03-02 The Need for Intra-regional Exchange Rate
Stability in Emerging East Asian Economies
/ Jonghwa Cho
- 03-03 Evolving Patterns of Corporate Financing in
Korea / Haesik Park and Yunjong Wang
- 03-04 Trade Facilitation in the WTO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a Roadmap to
Cancun / Chan-Hyun Sohn and Junsok Yang
- 03-05 Moving Forward on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Surveillance System and an Improved
Financial Architecture for East Asia / Yunjong
Wang and Wing Thyee Woo
- 04-01 Monetary Union and Real Convergence
Compared: Europe and East Asia /
Heungdong Kim, Woosik Moon, and Deok
Ryong Yoon
- 04-02 A Critical Assessment of India's Banking
Sector Reform / Tae Hwan Yoo
- 04-03 The Structure of North Korea's Political
Economy: Changes and Effects / Young-Sun
Lee and Deok Ryong Yoon

■ Working Papers

- 01-01 Does the Gravity Model Fit Korea's Trade
Patterns? Implications for Korea's FTA Policy
and North-South Korean Trade / Chan-Hyun
Sohn and Jinna Yoon
- 01-02 Impact of China's Accession to the WTO and
Policy Implications for Asia-Pacific Developing
Economies / Wook Chae and Hongyul Han
- 01-03 Is APEC Moving Towards the Bogor Goal?

- / Kyung Tae Lee and Inkyo Cheong
- 01-04 Impact of FDI on Competition: The Korean Experience / Miyoung Yun and Sungmi Lee
- 01-05 Aggregate Shock, Capital Market Opening and Optimal Bailout / Se-Jik Kim and Ivailo Izvorski
- 02-01 Macroeconomic Effects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 02-02 A Framework for Exchange Rate Policy in Korea / Michael Dooley, Rudi Dornbusch, Yung Chul Park
- 02-03 New Evidence on High Interest Rate Policy During the Korean Crisis / Chae-Shick Chung and Se-Jik Kim
- 02-04 Who Gains Benefits from Tax Incentiv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 Seong-Bong Lee
- 02-05 Interdependent Specialization and International Growth Effect of Geographical Agglomeration / Soon-chan Park
- 02-06 Hanging Together: Exchange Rate Dynamics between Japan and Korea / Sammo Kang, Yunjong Wang, and Deok Ryong Yoon
- 02-07 Korea's FDI Outflows: Choice of Locations and Effect on Trade / Chang Soo Lee
- 02-08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Co-movements: the Case of Korea with Other Asian Countries /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 02-09 A Dynamic Analysis of a Korea-Japan Free Trade Area: Simulations with the G-Cubed Asia-Pacific Model / Warwick J. McKibbin, Jong-Wha Lee, and Inkyo Cheong
- 02-10 Bailout and Conglomeration / Se-Jik Kim
- 02-11 Exchange Rate Regimes and Monetary Independence in East Asia / Chang-Jin Kim and Jong-Wha Lee
- 02-12 Has Trade Intensity in ASEAN+3 Really Increased? - Evidence from a Gravity Analysis / Heungchong Kim
- 02-13 An Examination of the Formation of Natural Trading Blocs in East Asia / Chang-Soo Lee and Soon-Chan Park
- 02-14 How FTAs Affect Income Levels of Member Countries: Converge or Diverge? / Chan-Hyun Sohn
- 02-15 Measuring Tariff Equivalents in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 Soon-Chan Park
- 02-16 Korea's FDI into China: Determinants of the Provincial Distribution / Chang-Soo Lee and Chang-Kyu Lee
- 02-17 How far has Regional Integration Deepened? - Evidence from Trade in Services / Soon-Chan Park
- 02-18 Changes in Industrial Interdependency between Japan and Korea since 1985 -An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Input-Output Analysis / HongBae Lee
- 03-01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in East Asia /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 03-02 How to Mobilize the Asian Savings within the Region: Securitization and Credit Enhancement for the Development of East Asia's Bond Market / Gyutae Oh, Daekeun Park, Jaeha Park, and Doo Yong Yang
- 03-03 International Capital Flows and Business Cycl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 03-04 Dynamics of Open Economy Business Cycle Models: The Case of Korea / Hyungdo Ahn and Sunghyun H. Kim
- 03-05 The Effects of Capital Outflows from Neighboring Countries on a Home Country's Terms of Trade and Real Exchange Rate: The Case of East Asia / Sammo Kang
- 03-06 Fear of Inflation: Exchange Rate Pass-Through in East Asia / Sammo Kang and Yunjong Wang
- 03-07 Macroeconomic Adjustments and the Real Economy In Korea and Malaysia Since 1997 / Zainal-Abidin Mahani,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 03-08 Potential Impact of Changes in Consumer Preferences on Trade in the Korean and World Motor Vehicle Industry / Sang-yiil Nam and Junsok Yang
- 03-09 The Effect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on FDI Inflows / Chang-Soo Lee
- 03-10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 Yung Chul Park, Wonho Song, and Yunjong Wang
- 03-11 Exchange Rate Uncertainty and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Japan and Korea /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 03-12 The Decision to Invest Abroad: The Case of Korean Multinationals / Hongshik Lee
- 03-13 Financial Integration and Consumption Risk Sharing in East Asia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 03-14 Intra-industry Trade and Productivity Structure: Application of a Cournot-Ricardian Model / E. Young Song and Chan-Hyun Sohn
- 03-15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 Empirical Evaluation of Corporate Restructuring Programs / Choong Yong Ahn and Doo Yong Yang
- 03-16 Specialization and Geographical Concentration in East Asia: Trends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 Soon-Chan Park
- 03-17 Trade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 A New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Growth / Chan-Hyun Sohn and Hongshik Lee
- 04-01 The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Terrorism / S. Brock Blomberg, Gregory D. Hess, and Athanasios Ophanides
- 04-02 Regional vs. Global Risk Sharing in East Asia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 04-03 Complementarity of Horizontal and Vertical Multinational Activities / Sungil Bae and Tae Hwan Yoo
- 04-04 E-Finance Development in Korea / Choong Yong Ahn and Doo Yong Yang
- 04-05 Expansion Strategies of South Korean

Multinationals / Hongshik Lee

- 04-06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 Yung Chul Park, Wonho Song, and Yunjong Wang
- 04-07 Impacts of Exchange Rates on Employment in Three Asian Countries: Korea, Malaysia, and the Philippines / Wanjoong Kim and Terrence Kinal
- 04-08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Imperfections: Evidence from Geographical Features of International Consumption Risk Sharing / Yonghyup Oh
- 04-09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Under An International Framework / Jong-Woon Lee
- 04-10 Exchange Rate Volatilities and Time-varying Risk Premium in East Asia / Chae-Shick Chung and Doo Yong Yang
- 04-11 Marginal Intra-industry Trade, Trade-induced Adjustment Costs and the Choice of FTA Partners / Chan-Hyun Sohn and Hyun-Hoon Lee
- 04-12 Geographic Concentration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East Asia / Soon-Chan Park, Hongshik Lee, and MiKyung Yun
- 04-13 Location Choice of Multinational Companies in China: Korean and Japanese Companies / Sung Jin Kang and Hongshik Lee
- 04-14 Income Distribution, Intra-industry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East Asia / Chan-Hyun Sohn and Zhaoyong Zhang

■ OECD 연구시리즈

- 01-01 OECD 규제개혁 연구: 규제순응과 효율성 / 梁俊哲 · 金鴻律
- 01-02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OECD 국가들의 비교법적 고찰 / 張勝和
- 01-03 한국과 독일의 최근 세제개편에 대한 평가 / 金裕燦
- 01-04 프루스프츠와 競爭法: OECD국의 사례평가 및 시사점 / 金元俊

■ 동북아연구시리즈/CNAEC Research Series

- 03-01 Korea's FDI in China: Status and Perspectives
/ Yao Shumei
- 03-02 금융개발과 금융발전: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朱尙榮
- 03-03 국제금융센터의 발전, 결정요인 및 그 시사점
/ 李鍾郁
- 03-04 동북아 금융허브: 한국의 여건과 경쟁력 비교
/ 安炯徒
- 04-01 Country-Specific Factors and the Pattern of
Intra-Industry Trade in China's Manufacturing
/ Zhaoyong ZHANG
- 04-02 The Spoke Trap: Hub-and-Spoke Bilateralism
in East Asia / Richard E. Baklwin
- 04-03 Real Interest Rate Linkages in the Asian-
Pacific Region: A Time-Varying Parameter
Approach / Kiyotaka Sato
- 04-04 Regional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Approaches to Integration Among China, Korea
and Japan
- 04-05 Economic and Political Interaction across the
Taiwan Strait Facing the Trend of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 Lee-in Chen Chiu
- 04-06 An Output Perspective on a Northeast Asia
Currency Union / Yin-Wing Cheung
- 04-07 A New Approach to the Asian Finance
Cooperation: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 CHEN Hong

■ 지역리포트

- 01-01 일본 구조개혁의 현황과 전망: 재정개혁을
중심으로 / 金恩志
- 01-02 핀란드의 정보사회화 전략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요인 분석 / 朴映坤
- 01-03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발전 과정과
확대전망 / 鄭厚榮
- 01-04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부의 지원
정책 / 朴映坤

- 01-05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EC)의 출범과 CS 경제
통합의 전망 / 河由貞
- 02-01 중국 장강삼각주 권역의 투자환경 / 吳東胤·
林泓修
- 02-02 일본 수입촉진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 金恩志
- 02-03 EMU 회원국들의 거시경제정책 운영현황과
평가 / 朴映坤
- 02-04 러시아 토지소유권 제도개혁의 성과와 과제
/ 河由貞
- 02-05 인도의 정보기술 산업 발전현황과 한· 인도간
협력 방안 / 崔允濤
- 02-06 UAE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 裴嬉娟
- 02-07 최근 뉴질랜드 경제호황 배경과 시사점
/ 權耿德
- 02-08 동아시아의 산업내무역 증가 추이와 시사점
/ 朴在旭
- 03-01 헝가리 경제개혁의 추진 현황과 평가 -금융
개혁을 중심으로 / 李哲元
- 03-02 중국 보험산업의 경쟁력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 崔義炫·趙錫軍·禹辰動
- 03-03 태국의 FTA정책과 시사점 / 權耿德
- 03-04 이라크의 전후복구 동향과 향후 전망
/ 朴馥永·裴嬉娟
- 04-01 南阿共 흑인정권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 朴英鎬
- 04-02 EU 확대 이후 중· 동구 지역의 교역· 투자
전망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李哲元
- 04-03 리비아 경제제재 해제와 건설시장 확대방안
/ 朴英鎬
- 04-04 EU의 시장통합과 유럽 자동차산업의 재편
/ 朴映坤
- 04-05 영국경제의 이해와 한· 영 경제협력의 과제
/ 金典鍾·金均泰
- 04-06 일-ASEAN FTA 추진현황과 전망 / 權耿德
· 金恩志

■ 지역연구회시리즈

- 01-01 남북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정책 협력방안
/ 金泳世

01-02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화인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朴繁洵
01-03	1990년대 미국의 정보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 李忠烈
01-04	일본경제의 붕괴와 잃어버린 10년 / 姜應善
01-05	미국 에너지 위기의 원인과 전망 / 鄭基虎 · 李滿基
01-06	두만강 개발 10년의 평가와 전망 / 沈義燮 · 李光勛
01-07	1980-90년대 브라질 산업에서의 구조적 변화와 한국의 산업협력방안 / 尹澤東
01-08	EU 국가의 민영화 경험과 시사점: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 朴明浩
01-09	NAFTA 이후 멕시코 산업정책 변화와 진출전략 / 鮮于鍵
01-10	21세기 러시아의 시베리아 · 극동지역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 韓鍾萬 · 成源鏞
01-11	유럽연합(EU)의 중동유럽 확대 : 라벤 유럽이 사회까지 현황과 전망 / 李奎榮
01-12	中國의 地域經濟協力 認識과 東北亞 經濟統合 可能性 / 安錫教 · 許興鎬
02-01	우리나라와 미국 주식시장 동조화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전망 / 李忠彥
02-02	1990년대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패턴 변화와 한국의 대응 / 程 勳
02-03	쿠바의 경제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 金鍊鐵
02-04	Municipal Finance in Selected European Transition Economies: Institutional Framework and Recent Development / Chang Woon Nam
03-01	말레이시아의 외환위기와 이슬람 정책 / 吳明錫
03-02	대만기업의 對중국 투자현황과 전략 -검론: 대만경제에 대한 영향 / 趙顯垓 外
04-01	EU의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평가 / 金恩慶 · 金興鍾
04-01	거시경제적 성과로 본 유럽경제체제의 효율성 분석 / 金興鍾 · 朱尙榮

■ 단행본

- 유로화 출범 이후 유럽경제의 환경변화와 향후 전망 / 李哲元 · 鄭厚榮
- 시장개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 / 崔洛均
-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발전모형 / 李景台
- WTO 뉴라운드 출범은 왜 필요한가 - 논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 / 崔洛均
- WTO 서비스협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金準東 · 姜俊求
-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 鄭仁教
- 농산물 시장개방: 그 득과 실 / 宋有哲
- 도하 아젠다 어떻게 할 것인가 / 외교통상부 · KIEP
-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鄭仁教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 / 李晟鳳 · 金寬濫 · 元信喜
- 투자협정 바로알기 / 金寬濫 · 李晟鳳
- China's Integration with the World Economy / 李景台 編
-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 趙明哲 編
- WTO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 崔洛均 · 尹昌仁 · 宋有哲 · 李晟鳳 · 金準東 · 梁俊哲 · 李鍾華 · 孫謙鉉 · 姜文盛 · 朴淳讚 · 尹美京
-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 지침서 / KIEP
- Korean Crisis and Recovery / 金世植 · David T. Coe eds.
- 한국의 태평양경제협력외교: 방향과 전략 / KOPEC · KIEP
-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 2002/03 / 安忠榮 編
- Toward a Transparent and Globalized Economy / 安忠榮 編
- 한 · 멕시코 경제협력 정책과제 金元鎬 編
-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 2002/03

李 彰 洙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호주국립대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現, E-mail: cslee@kiep.go.kr)

著書 및 論文

『FDI와 무역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 대중투자와 일본의 대한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2002)

“Korea’s FDI into China: Determinants of the Provincial Distribution”(2002) 외

林 慧 俊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現, E-mail: him@kiep.go.kr)

著書 및 論文

“Trade Blocs and FDI: Endogenous Coalition Formation”(2004)

「주요국의 FTA 피해산업 대책: 지원사례를 중심으로」(2005) 외

朴 芝 賢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위원(現, E-mail: jhpark@kiep.go.kr)

著書 및 論文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공저, 2003)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공저, 2002) 외

梁 俊 哲

미국 코넬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예일대학교 경제학 박사

카톨릭대학교 법경제학부 경제학과 교수(現, E-mail: yanjuna@catholic.ac.kr)

著書 및 論文

“Update on Korean Economic Reforms and Issues in Korea’s Future Economic Competitiveness”(2002)

“Potential Impact of Changes in Consumer Preferences on Trade in the Korean and World Motor Vehicle Industry”(2003) 외

政策研究 04-07

무역원활화 규범화를 위한 개도국 지원방안의 모색

2004년 12월 20일 인쇄

2004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安 忠 榮

對外經濟定策研究員

발행인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1179 FAX: 3460-1144

인쇄 현대에드컴 전화: 02-2275-8125 대표 박 홍 구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 複製를 금함】

ISBN 89-322-1192-2 94320

정가 7,000원

89-322-1072-1(세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1만 2천원		1만원
B	(월간) KIEP세계경제	5만원		2만 5천원

*연구자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역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자료실 편집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 02)3460-1179 FAX : 02)3460-1144

E-mail :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IE) 발간자료, 週報(인쇄물)전문가풀 토의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 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 명 (성명)	(한 글)	(한 문)
	(영 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 주소	우 편 번 호	
담당자 연락처	전 화	FAX
회원 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 번호	종 목	

회원분류(해당난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	S 발간물 일체	A 반년간지	B 월간지
개 인 회 원 ☐			
연 구 자 회 원 ☐			

*회원번호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WTO 협상에서 무역원활화 규범화에 대한 선진국 및 개도국의 입장이 수렴될 수 있는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무역원활화의 전 세계적 이익을 강조하면서 규범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도국은 무역원활화의 무역증진효과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역원활화 의제를 규범화할 경우 통관절차 개선 등 무역원활화 증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선진국이 담당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1) 무역원활화의 효과 및 이익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무역원활화 협상에 반대하고 있는 개도국 주장의 타당성을 실증하여 설득 논리를 개발하며, 2) 칸쿤회의 결렬의 요인이었던 무역원활화 이슈의 쟁점을 개도국 입장에서 파악한 후 어떤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개도국 능력배양을 지원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3)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개도국 능력배양 정책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 3460-1178/1179 FAX : 3460-1144



정가 7,000원